

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0253-10

법제 실무편람

2009. 3



농림수산업진흥자료실



0017228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Forestry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0253-10

<http://www.mifaff.go.kr>

법 제 실 무 편 램

2009. 3

목 차

제1편 법령의 체계와 소관사항 1

- 1. 법령의 의의 3
- 2. 법령의 체계 4
- 3. 법령의 소관사항 8

제2편 법령의 입법 절차 11

제1장 입법과정에서의 유의사항 13

제2장 법률안 입법 절차 15

- 1. 정부제출 법률안 입법 절차 15
 - 가. 정부입법계획 수립 15
 - 나. 입안 16
 - 다. 관계 부처 협의 17
 - 라. 부패영향평가 19
 - 마. 입법예고 19
 - 바. 당정협의 22
 - 사.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23
 - 아. 법제처 심사 28
 - 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31
 - 차. 대통령 재가 및 부서 32
 - 카. 법률안의 국회제출 32
 - 타. 법률안의 국회소관위원회 심의 33
 - 파. 본회의 상정·의결 및 정부이송 38
 - 하. 법률안의 공포 또는 재의 요구 39

2. 의원발의 법률안 입법 절차	42
가. 입법준비	43
나. 법률안의 기초	43
다. 국회제출(발의)	43
제3장 대통령령·부령의 입법 절차	44
1. 대통령령(시행령)	44
2. 부령(시행규칙)	45
3. 법률의 하위법령 마련시 유의사항	47
제4장 법률 및 대통령령·부령의 입법 절차(요약)	49
제5장 훈령·예규·고시·공고	55
1. 훈령	55
2. 예규	58
3. 고시	59
4. 공고	62
제3편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업무처리 요령	65
제1장 개요	67
1. 의원입법 검토 필요성	67
2. 국무총리훈령의 제정	67
제2장 의원입법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	68
1. 의원발의 법률안 등 입수	69
2. 법률안 발의사실 통보	69
3. 법제처 검토의견 통보	69
4. 법률안에 대한 소관부처의 조치	70

5. 법률안에 대한 관련부처의 조치	71
6. 국무회의 보고 등	73
제4편 법령안 작성요령	75
1. 법령안의 구성	77
2. 법령안의 세부작성방법	79
제5편 국무회의·차관회의	91
제6편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 절차	95
제1장 법령해석의 개요	97
1. 법령해석의 의의 및 성격	97
2. 법령해석의 기속력	98
제2장 법령해석 업무절차	99
1. 법령해석의 요청기관 및 요청방법	99
2. 법령해석의 처리방법	101
제7편 기타 참고사항	103
1. 법제처 법제조정제도	105
2. 대통령령 등의 국회제출	107
부록 1 참고법령	109
부록 2 참고서식	185
부록 3 입안시스템 및 입안편집기 사용자 설명서	339

제 1 편 법령의 체계와 소관사항

제1편 법령의 체계와 소관사항

1. 법령의 의의

우리나라는 성문법(成文法)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성문법이 모든 법률관계를 빠짐없이 규율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성문법 외에 관습법·판례와 조리(條理) 등 불문법(不文法)이 보충적 기능을 한다.

법령들은 그 존재형식 즉 법원(法源)이 다양하고 생성시기가 다르며, 각각 그 제정이유도 다를 뿐만 아니라 각 법령의 입안 및 집행을 담당하는 소관부처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 상호간에 상충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정돈하여 이론적으로 일관성 있게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법률생활을 원활하고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법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으로서 통일된 국가의사를 표현하고 보편타당한 것이 되기 위해서, 다수의 법령은 하나의 국법체계 안에서 그 상호간에 통일된 체계로서의 질서가 있어야 하며 서로 상충이 생겨서는 아니 된다.

현실적으로 법령 상호간에 상충이 의문시되는 경우에는 이를 규범 조화적으로 해석하여 어떤 법령이 우선 적용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입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법제도 간에 조화와 일관성이 유지되게 하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최고의 규범인 「헌법」에서 법률을 비롯한 각종 법규형식을 규정하며 이를 근거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입법을 담당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원규칙 등 법률에서 규정한 법규형식도 존재하며,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훈령·예규 등에 대하여도 예외적으로 위임입법으로서의 법규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규의 존재형식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2. 법령의 체계

우리나라 법령의 체계는 최고규범인 「헌법」을 정점(頂點)으로 그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의결하는 법률을 중심으로 하면서 헌법이념과 법률의 입법취지에 따라 법률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그 위임사항과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과 총리령·부령 등의 행정상의 입법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또한 「헌법」상의 자치입법권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도 전체적인 국법체계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법령의 종류는 많지만, 법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으로서 통일된 국가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타당한 것이어야 하는 이상 많은 종류의 법령은 통일된 법체계로서의 질서가 있어야 하며, 상호간에 상충이 생겨서는 아니 된다.

가. 헌법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가의 권력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최고법이다. 법제실무적 관점에서 본다면, 국가 최고의 근본규범으로서 「헌법」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그 개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헌법」의 경우 그 자체에 대한 입안이나 심사의 문제보다는 그 하위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의 준거틀로서의 「헌법」을 해석·적용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나. 법률

「헌법」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여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문의 법규범은 원칙적으로 법률의 형식으로 정립되며, 「헌법」 다음으로 중요한 법원(法源)이 된다.

국회의 입법권은 형식적으로 ‘법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헌법」에서 ‘법률’의 형식으로 입법하도록 한 것은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우리 「헌법」은 국적 취득요건(§2①), 죄형법정주의(§12), 재산권의 수용 및 보상(§23③), 조세법률주의(§59), 행정각부의 설치(§96)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117②) 등을 반드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37②).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이 「헌법」 제37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기 위하여는 먼저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여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합하여야 하고(수단의 적합성),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하며(피해의 최소성), 제한되는 기본권과 실현되는 권익 사이에 상당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할 것(법익의 균형성)을 요구하며, 만약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이 가운데 어느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입법은 위헌적인 입법이 된다(1996. 12. 26, 93헌바17 등).

다. 조약 및 국제법규

조약은 그 명칭이 어떠한가를 불문하고, 국가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를 말하며, 국제법규란 우리나라가 체결국(締約國)이 아니라도 국제사회에서 대다수의 나라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그 규범력이 인정된 것과 국제관습법(예 : 외교관의 특권과 면책에 관한 관습법 등)을 말한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헌법」 §6①), 국내법의 체계에 수용된다. 여기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란 반드시 법률과 동일한 효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법률에 해당하는 내용은 법률과, 하위법령에 해당하는 내용은 하위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헌법」 제60조제1항에 열거된 조약(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은 국회가 체결·비준에 동의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밖의 조약들은 대체적으로 대통령령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부령에 해당하는 조약도 있다.

한편 현행 법률 가운데 조약과의 적용관계를 명문으로 규정한 예도 있는데, 예컨대, 「우편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우편에 관하여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명시하여 국제조약이 우선적 법원(法源)이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라. 대통령령·국회규칙 등 = 시행령

우리 「헌법」 하에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물론 그 밖에 많은 사항이 법률의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오늘날 행정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에 따라 입법에 있어서도 사무의 능률적 배분이 요청되어 법률은 대강만을 정하고 세부적 규정은 명령에 위임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법원(法源)으로서 명령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규정하는 명령은 위임명령으로 불린다.

또한 법률에 의한 입법권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립되는 것이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상위의 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거나, 명령권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집행명령이라고 불린다.

이러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에 관하여, 「헌법」 제75조에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은 위임명령을 말하는 것이고, 법률의 집행을 위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은 집행명령을 말하는 것이다.

마. 총리령·부령 = 시행규칙

「헌법」 제95조에서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에게도 위임명령권과 집행명령권을 인정하고 있다.

바. 자치법규

「헌법」 제11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자치입법권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정립되는 법규범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행정입법과는 구분되며,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일반적인 행정입법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는 달리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지 않고, 개괄적으로 위임하더라도 위임입법의 한계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특수성이 인정되고 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모든 사무(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규율 대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가 아닌 한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다.

또한,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할 수 있다(「헌법」 §117① 및 「지방자치법」 §15 본문). 이는 조례가 법령의 명문규정이나 전체적 입법 취지와 모순·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 §15 단서).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지방자치법」 §16).

사.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기관이 법률상 근거가 없이도 그 고유의 권한으로 일반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비 법규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조직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규칙이다.

그러나 법률에서 대통령령 등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지 아니하고 ‘○○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은 법규명령의 일종으로 볼 수밖에 없는 ‘법규 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관보에 이를 고시하는 등 통제수단의 확보가 필요하다.

3. 법령의 소관사항

법령에는 법령의 종류마다 규율할 수 있는 사항이 정하여져 있다. 「헌법」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면서 일정한 경우 법률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고(§12 · §23 · §33② · §35 · §37 등),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38 · §39 등),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률의 소관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부령 등 하위법령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이는 소관사항을 어긴 것으로 위헌이 되어 그 효력이 부정되게 된다.

물론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위임된 범위를 벗어나면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된다.

또한 총리령과 부령의 경우에도 「헌법」 제95조에서 국무총리와 각부장관이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각각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예컨대 법무부장관이 법무부령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의 소관사무인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면 이 역시 소관사항의 원칙을 어긴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대통령령과 총리령·부령의 선택문제는 대통령령의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러 부처와 관련되는 사항은 대통령령의 소관사항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각 법령의 소관사항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법령별 소관사항>

□ 법률의 소관사항

-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
-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대통령령의 소관사항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국정의 통일적 추진·집행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각 부처에 공통되는 사항
- 행정기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
-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 총리령·부령의 소관사항

- 법률·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 법률·대통령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각 부처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항
- 복제·서식 등에 관한 사항
- 절차적·기술적 사항

제2편

법령의 입법 절차

제2편 법령의 입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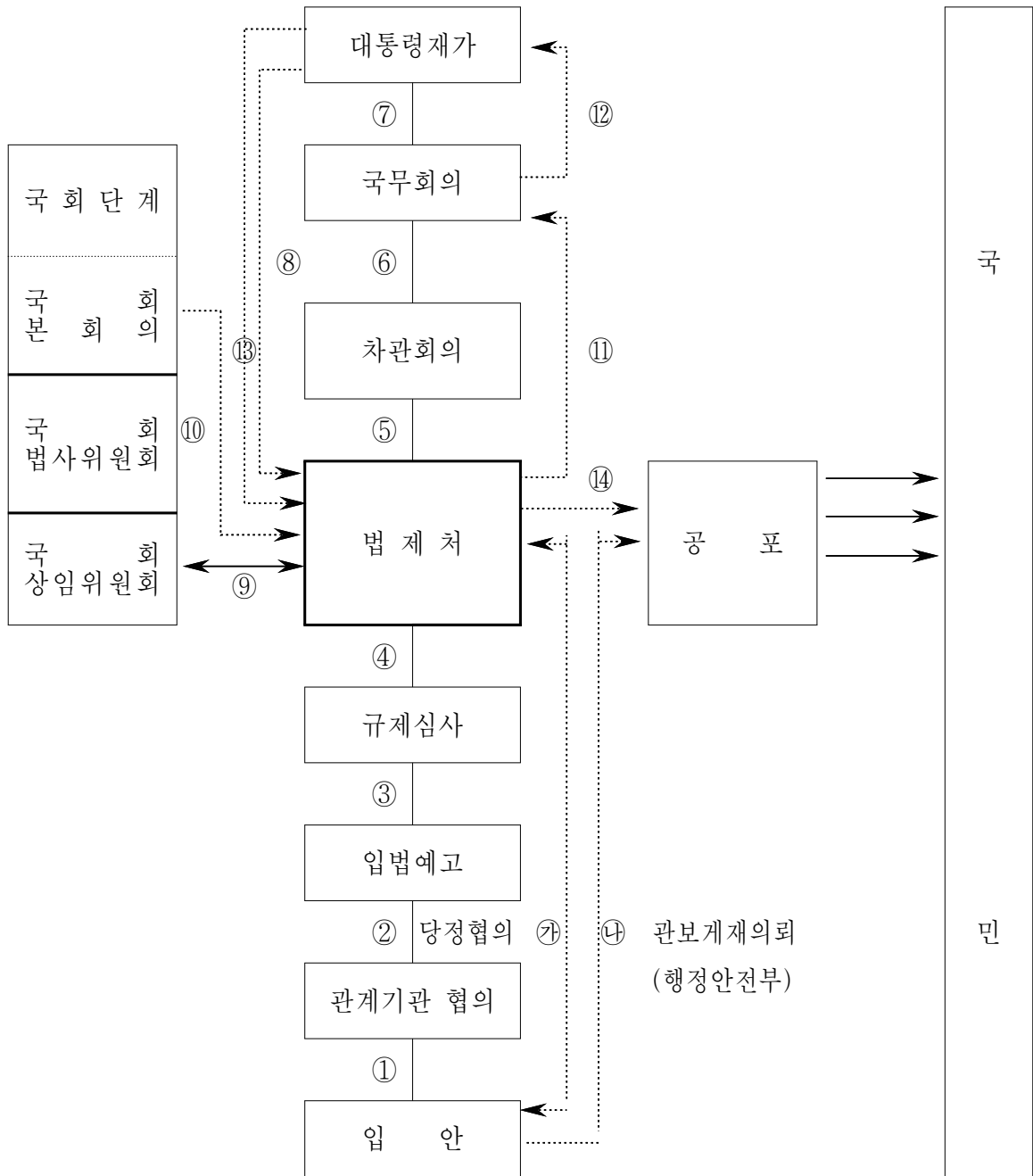
제1장 입법과정에서의 유의사항

정부의 법령안은 정책의 주무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관사항에 대하여 입안한다. 그 내용이 2 이상의 부처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동으로 입안하여 법률안과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에 공동으로 제안하고, 부령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발령한다.

법령의 입안은 국민과 행정기관의 규범적인 지속적 정책의지를 객관적인 언어로 구체화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입안부서나 입안자는 당해 행정기관 또는 입안을 의뢰한 의원 등 제안자의 기본적 정책목표를 명확히 규명하고 보완하여 규범화함으로써 그 정책목표를 무리 없이 시행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그 정책내용과 시행효과 및 재정소요와 부수적 문제점, 선택 가능한 대안 및 관련분야에 관한 현행 법제도에의 영향 등에 대한 분석과 전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입안된 최종 법령안은 당초의 일반적 정책목표 속에 함유된 문제점과 공백, 불명확성 등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그 의미가 쉽게 이해되도록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적절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 정부입법과정 >



※ 법령별 입법절차

법률 : (① ~ ⑭)

대통령령 : (① ~ ⑧) → ⑭

총리령 : (① ~ ④) → ⑭ (총리령의 경우 국무총리의 결재를 거친 후 관보게재의뢰 함)

부령 : (① ~ ④) → 가 → 나

※ 부패영향평가 : 관계기관 협의단계에서 실시하되, 국민권익위원회(법령분석관리팀)에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제정법령안의 경우에는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와 세부자료)를 작성하여 법령안과 함께 송부

제2장 법률안 입법 절차

1. 정부제출 법률안 입법 절차

가. 정부입법계획 수립

입법계획수립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11.30까지, 법제처) → 입법계획수립지침을 각 소관부서에 통보(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입법계획안 작성 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제출(각 소관부서) → 입법계획안 취합·조정(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우리부 입법계획안 확정후 법제처 제출(1.15까지) → 각 부처 입법계획안 조정(법제처) → 정부 입법계획안을 국무회의에 보고 → 정부 입법계획안을 국회에 통보 및 관보에 고시

법제처장은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당해연도 입법계획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내용에 따라 당해연도 주요업무계획등의 추진에 필요한 법률안의 연간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한다.

특히, 이러한 입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특정기간에 입법이 집중되지 않고 연중 고루 안배**되도록 하여야 하며, 정기국회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안만 상정이 가능하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법률안은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만 상정할 수 있으므로(국회법 제93조의2) **연내에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면 반드시 정기국회 이전에 제출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일정을 계획**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입법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법제처장은 이를 종합하여 당해연도에 정부에서 추진할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입법계획에 따라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입법계획을 추가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수정요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나. 입안

입안 → 법령정비협의회 심의 → 우리부안 확정

(1) 입안

법률의 입안은 정책을 객관적인 언어로 구체화·규범화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따라서 입안을 담당하는 부서는 당해 기관의 기본적 정책목표를 명확히 규명하고 보완하여 규범화함으로써 그 정책목표를 시행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그 정책내용은 물론 시행효과 및 재정소요, 부수적 문제점, 선택 가능한 대안과 관련 분야에 관한 현행 법제도에의 영향 등에 대한 분석과 전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법률안의 제정·개정·폐지는 주로 정부고위 당국자나 정당 특히 여당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감사원이나 타부처의 요청 또는 관련단체, 이해관계인의 건의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법원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상 규정된 청원권 행사에 의하여 입안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여러 경로를 통하여 발생한 입안의 동기는 당해 사항에 관한 입법 정보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소관부처의 주무부서가 실무자회의를 통하여 입법여부를 결정한다. 이 단계에서 법률안이 고도의 전문성·기술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주거나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하여 입안하기도 한다. 특히 여기에는 외국입법례의 조사, 관계인·전문가의 의견수렴, 실무자의 작업과 관련 국·과장의 검토가 이루어지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입법기술적·체계적 사항을 점검한다.

(2) 법령정비협의회 심의

이렇게 작성된 법률안의 초안은 우리부 법령정비협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한다. 초안을 마련한 소관부서는 법안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송부하여 법령정비협의회 상정을 의뢰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동 법안을 4-5일 전에 미리 위원들께 송부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법령정비협의회 개최 전에 소관부서의 법안담당서기관·사무관과 협의하여 법안의 법리적 문제를 미리 검토하여 수정한 후 법안을 상정하도록 한다. 법령정비협의회는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장이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간사이며, 그 밖에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회의 종료 후 그 결과를 정리하여 위원장께 보고하고, 소관부서에 통보한다.

(3) 우리부안 확정

법령정비협의회 심의를 거친 법안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협조를 받아 장관의 결재를 받으면 우리부안으로 확정된다.

다. 관계 부처 협의

우리부안이 확정되면 해당 법안의 소관부서는 그 내용과 관련이 있는 다른 부처와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법률안에 대하여 부처협의를 함에 있어서 의견회신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한 추진사유의 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기획재정담당관실 02-2100-2554)과 협의하여 의견회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관계 부처와의 협의는 우선 법률에 의하여 의무화되어 있는 부처와 반드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법적 의무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가급적 관련이 있는 모든 부처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는 국무회의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지만(국무회의규정 제6조), 관행상 만장일치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어느 한 부처에서 반대하여도 당해 법률안·대통령령안이 의결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률안·대통령령안을 입안한 때에는 당해법령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재정소요비용에 관한 추계서를 작성하여 부처협의를 첩부하여야 한다.(국회법 제79조의2,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

※ 관계 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의 예시

1. 공공요금, 수수료 기타 예산이 수반되거나 물가와 관련있는 사항 : 기획재정부
2. 정부의 인사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
3. 정부의 조직(위원회의 설치), 서식 등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
 - *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서식을 제정·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관계부처 협의시 운영지원과(사무관리계)와 서식승인 절차 협의 필요(사무관리규정 제74조)
4. 감사원법 제49조의 회계 관계 법령안 : 감사원
5. 벌칙에 관한 사항 : 법무부
6. 예산에 관한 법률 : 기획재정부
7. 회계에 관한 법률 : 기획재정부
8. 정부조직법상 다른 부처의 고유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 : 해당 부처

※ 위생 및 동식물검역 관련 법령 제·개정시 WTO 통보 관련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사항에의 부합여부에 관계없이 도입규정이 국제무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반드시 WTO에 통보하여야 하고, WTO 통보시 회원국에 의견제출기간을 최소한 60일이상 부여하여야 하므로 관련 법령 제·개정시 우리부 통상협력과와 사전 협의 필요

라. 부패영향평가

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안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부처협의를 실시하는 즉시 국민권익위원회(법령분석기획과 02-360-6588)에 ‘법률안’과 부패영향평가에 필요한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제정법령안의 경우에는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와 세부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부패방지법 제20조의2).

이는 법령 등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소를 제거·정비함으로써 정책수립·집행 등 모든 행정과정에서의 부패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법률안 소관부서에서는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기 전에 당해 자료에 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확인·검토를 받아야 한다.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제출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입법예고 종료일 까지(약 30일)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권고 등 평가결과를 소관부서에 통보한다.

마. 입법예고

부처협의 완료 → 규제개혁위원회 사전심의 → 입법예고 → 필요시 공청회 실시 → 제출의견의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

(1) 사전규제심사

관계부처와 협의가 완료된 입법안에 대하여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심의(국무총리실 02-2100-2307)를 받은 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만약 규제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실과 협의 후 국무총리실에 확인요청 공문을 시행하여야 하므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규제계)에 신·구조문대비표가 부착된 제·개정(안)안건과 규제심사검토(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국무총리실 사전 검토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함께 공표(홈페이지 등 게시)하여야 하며, 입법예고(안)과 규제영향 분석서 전문을 규제개혁위원회(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와 공정거래위원회(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및 중소기업청(기업영향평가과)에 입법예고안과 규제영향분석서를 송부하여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나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의견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2) 입법예고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43조). 이 경우에 부처에서는 입법을 빨리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종료되기 전에 입법예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입법예고 의뢰시 ‘관계 부처 협의 요청 공문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제처(기획재정담당관실 02-2100-2554)의 확인을 받아 이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부처안을 정부안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후 관계 부처와의 협의 결과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정부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오해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3) 입법예고의 생략 및 단축

입법예고의 실시와 관련하여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 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기획재정담당관실 02-2100-2554)과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법률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도 법제처장(기획재정담당관실 02-2100-2554)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2항).

(4) 입법예고의 재실시

입법예고 후에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3항).

(5) 공청회

법률안 주관기관의 장은 예고한 법률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공청회의 제목, 일시 및 장소, 주요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및 신청기한 등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행정절차법 제38조).

공청회의 주재자는 당해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상 직위에 있는 공무원 또는 당해 사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고 동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행정청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행정절차법 제39조,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2조).

(6) 정책통계기반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입법예고와 동시(입법예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 후 즉시)에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요청서(실질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곧바로 실질평가 요청 가능)를 작성하여 통계청장에게 「정책통계기반평가」를 요청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때 통계청장의 평가 의견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통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5항)

- ※ 평가대상 : 통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법령*을 제외한 모든 제·개정 법률 및 시행령(개정 법령은 개정 법조문만 해당)
- * 국가안보, 행정절차, 행정조직, 민사·상사·형사, 소송절차, 재판, 행형 등 통계청장이 통계기반 정책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법령
- 통계청장은 매년 운영지침으로 제외대상 법령을 선정, 통보

※ 평가요청서 작성 및 평가사례는 통계기반 정책관리 홈페이지 (<http://psd.nso.go.kr>) 참조 또는 우리부 정책통계담당관실에 문의

(7) 제출의견의 처리

예고된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법률안 주관기관의 장은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법률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제업무운영규정 제18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44조).

바. 당정협의

당정협의 의제확정요청서 작성 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제출(소관부서) → 당정협의 의제확정요청서를 여당 수석전문위원 등에게 송부 후 일정협의(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당정협의회의의 실시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국무총리훈령)에 근거하여 실시하며 정부와 정당 간의 긴밀한 정책협조를 위한 것으로서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 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은 법률안, 대통령령안,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안에 대하여 여당과 협의하여야 하며, 여당이 없는 경우에는 각 정당과 협의하여야 한다.

당정협의에는 국무총리가 운영·개최하는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와 “정당정책협의회의”가 있고, 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이 운영하는 “부처별 당정협의회의”와 “정당에 대한 정책설명회” 등이 있다.

부처별 당정협의회의는 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이 여당의 정책위원회 의장과 법률안, 대통령령안 등의 협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회의는 매 2월마다 1회 개최하되, 여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여당의 정책위원회 의장과 해당 기관의 장의 협의를 거쳐 회의를 개최한다. 또한 여당이 없는 경우에

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의 요구가 있거나 각 정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과 정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이 협의하여 회의를 개최한다(당정협의업무운영규정 제8조).

법률안에 대하여 당정협의를 실시하고자 하는 법안의 소관부서에서는 당정협의를 제 확정요청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이를 여당의 수석전문위원 등에게 송부하여 당정협의회의 일정을 잡도록 한다. 여당 의원이 참석하는 부처별 당정협의 회의에는 장관, 해당 법안의 소관 국장, 담당서기관·사무관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이 참석하며, 여당의 보좌관 등이 참석하는 실무당정협의에는 해당 법안의 과장, 담당서기관·사무관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이 참석한다.

사.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우리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규제심사 →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1) 우리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규제심사

법령안 소관부서에서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시 제시된 각종 의견을 반영한 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자체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은 생산자단체·학계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로서 농축수산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위촉한 자로 구성되어 있다.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자체규제심사위원들에게 심사법안을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동 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은 신설·강화규제의 필요성 등 적합성을 심사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정은 철회·개선·권고를 결정하며, 법령안

소관부서에서는 동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무적으로 수용하여야 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수정법안을 만들어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제처에 법률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법제처에 신설·강화되는 규제를 포함하는 법률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와 법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때에 당해 규제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행정규제기본법 제16조).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법제처 심사 도중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 변경되거나 변경이 예상될 경우 반드시 중앙규제위원회와 사전 협의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변경내용을 심사완료전에 중앙규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신설·변경·폐지된 규제는 법령이 공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제등록서(부록참고)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와 관련된 법령은 공포된 사실과 주요내용을 공문으로 작성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규제 위 심사시 철회권고, 개선권고 등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하여 입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부 등록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www.rrc.go.kr)에서 규제등록현황 중 부처별통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기타 사항은 국무총리실 경제규제관리관실(2100-2307)이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문의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구체적인 심사추진(안건준비 및 심사절차)체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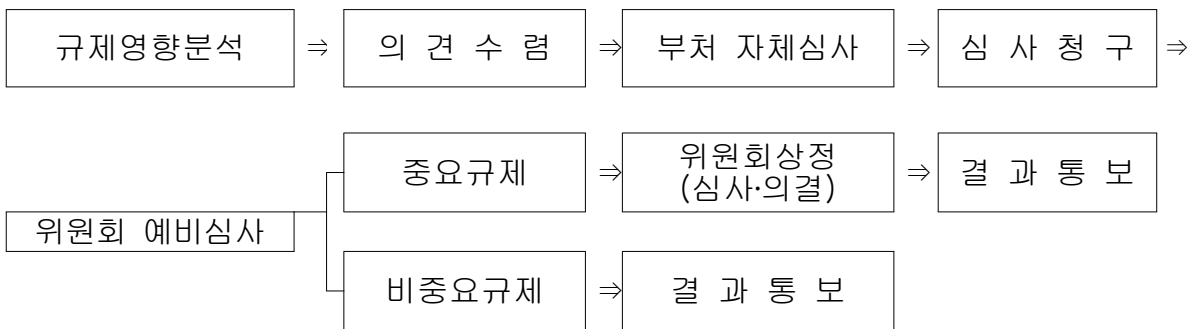
(가) 규제심사 대상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등(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고시 등)

(나) 규제심사제도 개요

-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 심사를 요청
 - 사전에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입법예고기간동안 이를 공표
 - 규제영향분석서 및 입법예고(안)을 규제개혁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에 송부
 - 관계기관, 이해관계인 등 의견 수렴 및 자체 심사
- 규제개혁위원회는 심사요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대상 규제(중요규제)인지 여부를 결정
 - 중요규제가 아닌 비중요규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그 결과를 관계부처에 즉시 통보
- 「중요규제」는 심사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
 - 심사결과 필요시 당해 규제를 ‘철회 또는 개선’하도록 권고
 - 부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 요청가능

<신설·강화규제 심사절차(행정규제기본법)>



(다) 신설·강화규제 심사 현황

- 관련 부처에서 자체심사 후 심사안건을 작성하여 규제심사 요청
- 사무국(규개위)에서는 부처 심사안건을 분과위원회에 보고
 - 사무국에서는 규제사무별로 “중요 또는 비중요규제 등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분과위원회에 보고
- 분과위원회에서는 심사안건 및 사무국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부처 소관 과장을 참석시킨 후 심의의결

- 심사안건의 본회의 상정여부 결정
- 본 위원회 상정안건은 부처 안건을 토대로 사무국에서 작성
 -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 심사경위 보고하고, 사무국(담당국장)에서 안건 주요내용을 보고
- 본 회의는 직접 부처 참석자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심의의결
 - ※ 분과위원회 부처 관계자 참석시 사전준비 철저
 - 규제심사시 위원들은 신설·강화규제사무뿐만 아니라 당해 법령과 관련한 다양한 질의 및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 등을 준비하지 않고, 위원회에서의 답변이 부족한 사례가 있음
 - 외국의 사례, 실제 현장상황 등에 대한 자료 사전에 파악하여 대처

(라) 기타 주의가 요구되는 사항

- '06.6.30부터 규제를 신설·강화규제는 반드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표하여야 함
 - 규제영향분석은 최대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
- 규제심사요청은 자체규제심사 후 자체심사의견을 작성하여 원칙적으로 규제총괄부서에서 요청하여야 함(불가피한 경우 법령 운영부서에서 직접 요청)
- 규제심사안건의 작성은 정해진 서식대로 작성하여야 함
- 규제심사 완료후 법제처 심사과정 등에서 규제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발생
 - 신설·강화규제의 위원회 심사내용에 배치되는지 등이 확인이 필요하므로 법제처 심사과정 등에서 신설·강화규제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무국과 사전협의 필요
- 안건에 대한 사무국의 검토가 끝나고, 분과위원회 상정일자가 정해질 경우(사무국에서 회의일자 및 안건번호 등을 문서로 통보함)
 - 안건은 회의개최 전주 금요일 18:00까지 e-mail로 제출하고, 최종 안건 15부를 유인하여 회의개최 전일 12:00까지 사무국에 제출

- 규제총괄부서에서는 회의개최 전일 12:00까지 안전별 관련 부처 참석자 (중요규제는 주무국장, 비중요규제는 담당과장) 현황 통보
- 분과위원회 참석시 안전에 대한 질의·답변 자료를 준비하여 참석하되, 관련 법령에 대한 자료는 필수 지참
- 분과위원회 안전심사시 비중요규제는 사무국에서 “비중요규제 판단 사유” 만을 보고하고, 기타의견 없을시 규제심사 종결처리
- 중요규제는 관련 부처 주무국장이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사무국의 “검토보고” 및 위원 질의후 심의의결
- 부처에서는 “규제의 신설·강화 사유 등” 요점위주로 간략히 설명
- 분과위원회 심사로 종결처리 될 경우 규제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법제처 심사요청, 본 회의상정 결정시 전체회의일자는 별도 통보

<중요규제 판단기준>

- ① 규제영향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인 규제
- ② 피규제자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이 되는 규제
- ③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 ④ 국제기준에 비취 규제정도가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 ⑤ 기타 관계부처 또는 이해당사자간 이견이 있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 입법예고시 신설·강화 필요성 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던 규제
 - 부처 「규제심사위원회」에서 개선·철회권고가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은 규제
 - 규제의 신설·강화내용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과거 의결 내용의 취지와 모순되는 경우
 - 신산업분야에 있어 시장기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규제
 - 신설·강화규제중 전문기관에 의한 「비용편익분석」 절차를 거쳤거나 거칠 필요가 있는 규제
 - 수도권 입지, 대기업 정책 등 정책적 규제와 관련되는 사항
 - 규제신설강화시 경제적·사회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 개인의 신분·자격의 박탈 등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

<전체회의 상정안건 기준>

□ 원칙적 상정 안건

- ① 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
- ② 제정 법률의 시행령 제정안
- ③ 의원입법에 의한 개정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

* 다만, 법령 제·개정 내용 중 규제관련 내용이 경미하여 본위원회에 상정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제외

□ 판단 후 상정안건

- ④ 시행령 개정안 및 기타 하위규정 중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
- ⑤ 기타 분과위원회 심의결과 위원간 이견 등으로 본위원회 상정이 필요하다고 분과위원장이 판단하는 안건

아. 법제처 심사

입안시스템을 이용하여 법제처에 법률안 심사의뢰 → 담당 법제관 법제심사 → 합동심사회 또는 법제합의부 심사 → 사회문화법제국장 결재 → 법제처 차장·처장 결재

법률안의 소관부서에서는 당해 법률안이 부처협의·입법예고 또는 규제 심사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되어 장·차관에 대한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장관의 결재를 얻은 후 법제처에 심사의뢰를 실시하며, 그렇지 아니하고 매우 경미한 사항으로서 당초 우리부 확정안과 대동소이한 경우에는 해당 실·국장의 결재를 얻은 후 법제처에 심사의뢰할 수 있다.

다만, 산림청장과 농촌진흥청장의 경우에는 법률안 심사의뢰 권한이 없으므로(법제업무운영규정 제21조), 산림청과 농촌진흥청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는 각 해당 소관부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협조를 받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결재를 얻은 후 법제처에 심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정부입법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법령안(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안하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반드시 입안시스템 (<http://www.eglaw.go.kr>)에 의하여 법제처에 법령안 등의 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므로 법령 입안단계에서부터 입안시스템을 통해 법령안을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다. (※ 자세한 사항은 『입안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참조)

<< 입안시스템 로그인, 법령안 입안 및 심사의뢰 방법 >>

가. 입안시스템은 <http://www.eglaw.go.kr>로 접속합니다.

나. 신규등록 전에 자바가상머신과 입안편집기를 PC에 설치합니다.

※ 배포판편집기를 PC에 설치한 경우에도 입안편집기를 설치하여야 함.

※ 자바가상머신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법령안 작성화면에서 법령안편집기 버튼이 보이지 않게 됨.

다. 신규등록을 하여야 하며, 아이디는 기관도메인주소(예: skjeong@mifaff.go.kr 등)를 갖고 있는 이메일 주소이어야 합니다.

※ 법제지원시스템 과도기화면(<http://ss.moleg.go.kr>)에 등록된 경우라도 다시 등록하여야 함.

라. 법령안을 작성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법안정보카드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법안정보카드에서는 법령종류(법률, 대통령령, 부령·총리령, 대통령훈령, 총리훈령), 입법형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및 폐지), 알법 해당여부 등이 정확히 입력되어야 합니다. 그 정보에 따라 다른 형식의 입안편집기가 띄워집니다.

- 마. 법률의 경우에는 법안정보카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정부입법계획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관 과에서는 부서입법계획을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고, 법무담당관실은 부처입법계획으로 확정하여 법제처에 제출하며,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2100-2554)에서는 법제관실의 검토를 거쳐 정부입법계획으로 확정합니다.
- 바. 법안정보카드를 등록한 후 “법령안 작성/제출”탭에서 편집기를 작동하여 법령안을 작성합니다.
- 사. 시스템에서 부처협의를 진행하실 수 있고, 부처의견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각 부처 법무담당관실에서만 자기 부처의 부처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아 .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의 관련 자료를 등록합니다.
- 자. 법령안 확정 버튼을 눌러 법령안을 확정하신 후에 법제처에 심사의뢰를 하실 수 있으며, 이 때 해당법령과 관련하여 등록된 모든 파일이 뜨며, 법제처 심사의뢰 시 제출할 파일들을 선택하시고, 추가로 첨부하실 파일이 있는 경우 추가하여 법제처에 심사의뢰할 수 있습니다.
- 차. 법제처에서의 심사진행 상황은 법령입안/법안진행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제처에서 법제지원시스템을 통하여 확인을 의뢰한 심사안은 법령입안/법령안 심사의뢰의 심사의뢰목록조회 화면에서 해당 법령을 클릭하여 심사의뢰 상세조회 화면의 심사조회 주요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카. 부령 및 총리령의 관보정정 시 법제관의 확인서를 입안시스템을 통하여 의뢰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입안편집기를 통한 법령안 작성법은 첨부 매뉴얼과 동영상을 참조하십시오.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대상 안건의 경우 개정문 및 신규조문대비표 작성 방식이 상이합니다. 첨부파일 및 입안시스템 초기 접속화면에 있는 동영상 도움말을 참조하세요.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의뢰시 법률안인 경우에는 통상 해당 법률안 50부(법제처 합동심사회의 자료용)를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의 공식적인 심사절차는 우리부부 담당 법제관의 심사와 법제처 차장 주재 법률안 합동심사회(참석: 실·국장, 법제관, 배석: 서기관·사무관)의 심사 또는 법제합의부(참석: 소관 법제국장 및 법제관, 배석: 서기관·사무관)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 위헌적인 요소등이 있는 경우 소관법안 담당부처와 협의하여 수정하고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의 결재 후 법제처 차장 및 처장의 결재를 거쳐 심사 완료한다.

법률안 담당 소관부서에서는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는 대로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의 협조를 얻어 법제처 우리부 담당 법제관에게 사전 심사의뢰를 하여 공식적인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부 담당 법제관은 “법령입안 심사기준(입안시스템 참고자료 또는 법제처 홈페이지 참조)”에 의거 심사하고 입법예고 및 조직·서식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관계기관협의(공공요금·수수료 관련은 재정경제부와의 협의여부) 및 예산조치가 필요한 법률안은 예산조치 사항 등을 확인하게 된다.

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법제처 심사완료 → 차관회의 심의 → 국무회의 심의

차관회의는 국무회의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임의적 절차이며, 국무회의는 필수적 절차이다. 따라서 헌법과의 관계에서 볼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관회의를 생략할 수도 있다.

법제처의 심사가 끝난 법률안은 법안 소관부서에서 온나라 업무관리 시스템을 통해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의정팀)로 송부한다.

※ 주의사항 : 법제처 심사가 완료된 법률안을 차관회의 개최 3일전 까지 행정안전부(의정팀)에 송부하여 안건상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의정팀)로 송부되어온 법률안은 차관회의(통상 매주 목요일)와 국무회의(통상 매주 화요일)에 상정된다. 차관회의·국무회의에 상정될 안건(법률안)은 차관회의를 개최하는 주의 화요일에 정기 배포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행정안전부(의정팀)와 협의하여 법안 소관부서에서 직접 배포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무회의(차관회의) 안건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정안을 작성하여 법제처에 제출하면 법제처에서는 심의후 수정안을 행정안전부(의정팀)에 송부하여 안건으로 상정 한다.

차. 대통령 재가 및 부서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부서 → 대통령 재가

법률안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부서는 국무회의의 구성원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지위에서 행하는 것이므로, 차관이 부서를 대리할 수 없다.

국회에서는 우선 부서한 국무위원이 어느 부처를 담당하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법률안을 회부할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법률안은 대통령의 명의로 국회에 제출된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사고가 있을 때에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 대행의 자격으로 법률안에 서명·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카. 법률안의 국회제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 후 정부(법제처)는 법률안을 지체없이 국회에 제출한다(상황에 따라 법률안 제출에 법안 소관부서가 협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국회법에서는 발의·제출 또는 제안 등의 용어로 표현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를 「발의」라고 하고, 정부 또는 위원회의 경우를 「제출」이라고 하며 이상의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제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참고로 의원발의법률안은 법률안 3부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의안과에서 필요한 부수를 유인하게 되며, 위원회에서 제출하는 법률안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필요한 500부를 유인하여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제출부수는 의원정수 등에 따라 변동됨).

타. 법률안의 국회소관위원회 심의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국회법 제81조제1항).

의장이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다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를 명시하여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이를 모두 회부한다.

의장이 관련 상임위원회에 법률안을 회부할 때에는 관련 상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기속하지 않으며 그 심사를 함에 있어서 참고의견으로 활용될 뿐이다.

(1) 농림수산물위원회(상임위) 상정 및 의결

입법조사관에 대한 법안 사전설명(소관부서) → 전문위원 법안 예비검토(소관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법률안 상정(위원장) → 제안설명(장관)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대체토론 → 법률안심사소위원회 회부(위원장)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심사 → 상임위 의결

(가) 법안 사전설명

법률안이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회부되면 법률안의 소관부서(해당 과장, 담당서기관·사무관)에서는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담당 입법조사관에게 당해 법률안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실시한다. 정부안의 경우에는 정부안의 입법취지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의원발의안에 대하여는 당해 의원발의안에 대한 정부측 입장 등을 설명한다.

(나) 전문위원 법안 예비검토

법률안이 상정되기 전에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문위원의 법안 예비검토를 거쳐야한다. 전문위원 법안 예비검토는 당해 법률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전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위원 법안 예비검토에는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심의관,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하며, 우리부에서는 해당 법안의 소관국장이 법안 설명을 하고, 담당서기관·사무관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이 배석한다.

전문위원 법안 예비검토는 당해 법률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이때 당해 법률안에 대한 사실상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입법권이 국회의원에게 있기 때문에 대체토론 및 의결 과정에서 법률안의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항상 있으므로 각 소관부서에서는 우리부 정책방향과 상이하거나 향후 집행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다) 법률안 상정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법률안이 회부되면 위원장은 이를 의사일정에 넣어 전체회의시에 상정하고 심사한다. 법률안의 심사에 관한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국회법 제49조제2항).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법률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 법률안의 경우에는 15일,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20일(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의 경우에는 5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회법 제59조).

(라) 제안설명

법률안이 위원회 전체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되면 장관이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의 양해를 구하고 차관이 제안설명)을 한다. 다만, 의원발의법률안의 경우에는 발의 의원중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장관께 보고한 후 확정하고, 동 제안설명서 50부를 유인하여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상정 전일까지 농림수산식품위원회(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사일정에 상정된 모든 법률안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소관부서에서는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전문위원의 법안 예비검토를 받고 검토보고서를 입수하여 상임위 상정에 대비하여야 한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회심사의 방향과 범위를 제시하여 주며 실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전문위원은 해당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입법심의관과 입법조사관 등으로부터 보좌를 받아 법률안의 제출이유 및 문제점 등 법률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그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유인된 검토보고서를 배부하고 구두로 보고하는 것이 보통이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법률안의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상정 48시간 전까지 소속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국회법 제58조제7항).

(바) 대체토론

대체토론이란 의안에 대한 구체적 심사에 앞서 전반적인 문제에 관하여 행하는 토론을 말하며, 「국회법」에서는 “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국회법 제58조제1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나면 장관을 대상으로 법률안에 대해 문제점·당부에 관한 일반적 토론 등 질의를 하게 된다. 질의란 의제가 된 조건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의문나는 점을 물어서 밝히는 것으로서 법률안에 대한 질의는 제안 설명을 한 의원 또는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소위원회회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에도 그 법률안의 주무부처의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집행상의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를 할 수 있으며, 질의는 그 법률안에 관한 사항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02조). 위원은 위원회에서 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국회법 제60조제2항).

이때 해당 법률안의 소관 국장은 예상질의답변서를 작성하여 장관의 답변을 보좌하며 서면질의의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종합하여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행정실)에 제출한다.

(사)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위원장은 법률안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사를 위하여 대체토론 후 법률안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다.

또한, 쟁점이 있는 법안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법률안심사소위원회 또는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주관으로 공청회를 갖는 경우도 있는데 공청회는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 등을 진술인으로 참석하게 하여 의견개선 및 의원들의 질의로 진행되며, 정부측도 1급 또는 국장이 참석하게 된다. 법안 담당서기관·사무관은 대체토론시에 의원 질의사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정부처리의견을 묻고 있는 사항을 묶어서 “의원질의 및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서(소위심사자료)”를 작성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대비하여야 한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법률안 소관 차관이 참석하여 “의원질의 및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보고서(소위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법안에 대해 설명하게 된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위원장이 개의하여 법안을 상정하고 차관이 설명한 다음 위원들의 질의를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각 법안의 소관부서에서는 여건변화 또는 예상하지 못한 사항이 있어 법률안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위원에게 사전에 설명하여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수정하는 것이 좋다.

(아)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의결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에 다시 상정되어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경과보고를 듣고 의원들의 질의·답변을 거쳐서 의결하게 된다.

법률안이 의결되면 위원장이 장관에게 인사말씀을 하도록 회의진행을 하므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간단한 인사말씀을 준비하여야 한다.

(2)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입법조사관에 대한 법안 사전설명(소관부서) → 법률안 상정(위원장) → 제안설명(장관)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대체토론 →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후 5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회법 제59조).

법률안이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되는 즉시 법률안 소관 국장 및 담당서기관·사무관은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및 입법조사관과 협의하여 검토일정을 잡아서 전문위원의 체계·자구검토를 받는다.

법률안 담당서기관·사무관은 전문위원 및 입법조사관의 검토를 거쳐서 주서된 법률안 70부를 유인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전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제안설명서를 작성·유인하여 50부를 법제사법위원회(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안이 상정되면 장관이 제안설명(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의 양해를 구하고 차관이 제안설명)을 하고 법률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서 의원들의 질의와 장관의 답변이 있는 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된다.

다만, 법률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이 있어서 검토를 요하는 경우에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법안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되면, 법률안 담당서기관·사무관은 입법조사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과 협의하여 심사에 대비한 소위원회 보고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과. 본회의 상정·의결 및 정부이송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가 끝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심사보고서는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사항이 모두 반영된 최종안 550부가 첨부되며 의사국 의안과로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의원에게 배포한다.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이 의사일정에 상정됨으로써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장은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 제67조제2항).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심사한 수개의 법률안이 일괄하여 의제로 상정된 때에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도 일괄하여 동시에 할 수 있다.

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게 된다. 그러나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는 생략할 수 있다(국회법 제93조). 일반적으로 의결은 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의장이 이의가 없는지를 묻고 의결하고, 찬반토론이 있는 경우에는 표결에 의해 의결(또는 부결)한다.

본회의 상정 대상 법률안 중 찬반토론이 예상되는 법률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안의 소관과장 및 담당서기관·사무관이 찬성발언을 위한 의원섭외 및 사전준비 등 국회통과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 법률안의 공포 또는 재의 요구

(1) 법률안의 공포

법률안 정부이송 → 오탈자등 유무 확인(소관부처) → 법률공포안 작성(법제처)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재가 → 공포

(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의장이 이를 정부에 이송하며(국회법 제98조), 법률안의 이송을 담당하는 국회사무처 의안과는 법사위 전문위원이 최종 확인한 법률안을 정리하여 법률안 2부를 정부에 이송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헌법 제53조제1항).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오면 법제처(법령총괄담당관실 02-2100-2564)에서는 법률안을 각 소관부처에 송부하여 오탈자등 유무를 확인한 후 법률공포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의정팀)에 법률공포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요청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치면(이 경우 차관회의 심의는 생략된다)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5조).

대통령의 서명이 끝나면 법제처(법령총괄담당관실)는 법률공포대장에 따라 공포번호를 부여하고 행정안전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관보계)에 관보게재를 의뢰한다. 관보는 통상 해당 일자의 하루 전에 인쇄가 완료되므로 늦어도 관보게재일 3일 전까지는 관보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나) 법률공포일은 그 법률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하고 있으나(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제12조), 판례는 공포일이란 그 법령이 수록된 관보의 발행일자가 아니라 그 관보가 정부간행물 판매센터에 배치되거나 관보취급소에 발송된 날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판 1970. 7.21, 70누 76).

법률은 그 법률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헌법 제54조제6항,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13조).

(다) 관보정정

법률 공포 → 오류사항 발견(소관부처, 법제처, 국회 등) → 국회요청(국회사무처 의안과에서 법제처로) → 관보정정 요청(법제처 법령총괄담당관실에서 행정안전부로) → 관보 정정

법률이 공포된 후에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관보를 정정함으로써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의 관보정정은 국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법제처에서는 국회의 관보정정 요청공문을 접수받아 행정자치부에 관보정정 의뢰를 하게 된다.

(2) 재의 요구

법률안 정부이송 → 재의요구여부 파악(법제처) → 재의요구안 심사요청(해당 부처) → 법제처 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 →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재가 → 법률안재의안의 국회 제출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송해 온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헌법 제53조). 재의의 사유에 대하여는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 일반적으로 법률안의 내용대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응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재의요구와 관련하여 유념할 것은 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동안에 그 법률안의 내용대로 시행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도록 여당과 협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만장

일치로 법률안이 의결되면 정부가 이를 재의 요구하는데 정치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법률안에 대하여 재의 요구를 하려면,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국회에 환부하여야 한다. 우선 재의요구안을 작성하여 법제처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이후 법률안 제출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우선 국회의장이 재의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국무총리와 주무부처장관이 재의 이유를 설명하면,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진다. 재의 이유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료되고 나면 국회의원 간의 토론이 진행되고 토론이 종결되고 나면 무기명으로 표결처리 된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정부는 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필요한 찬성을 얻지 못하면 재의요구된 법률안은 폐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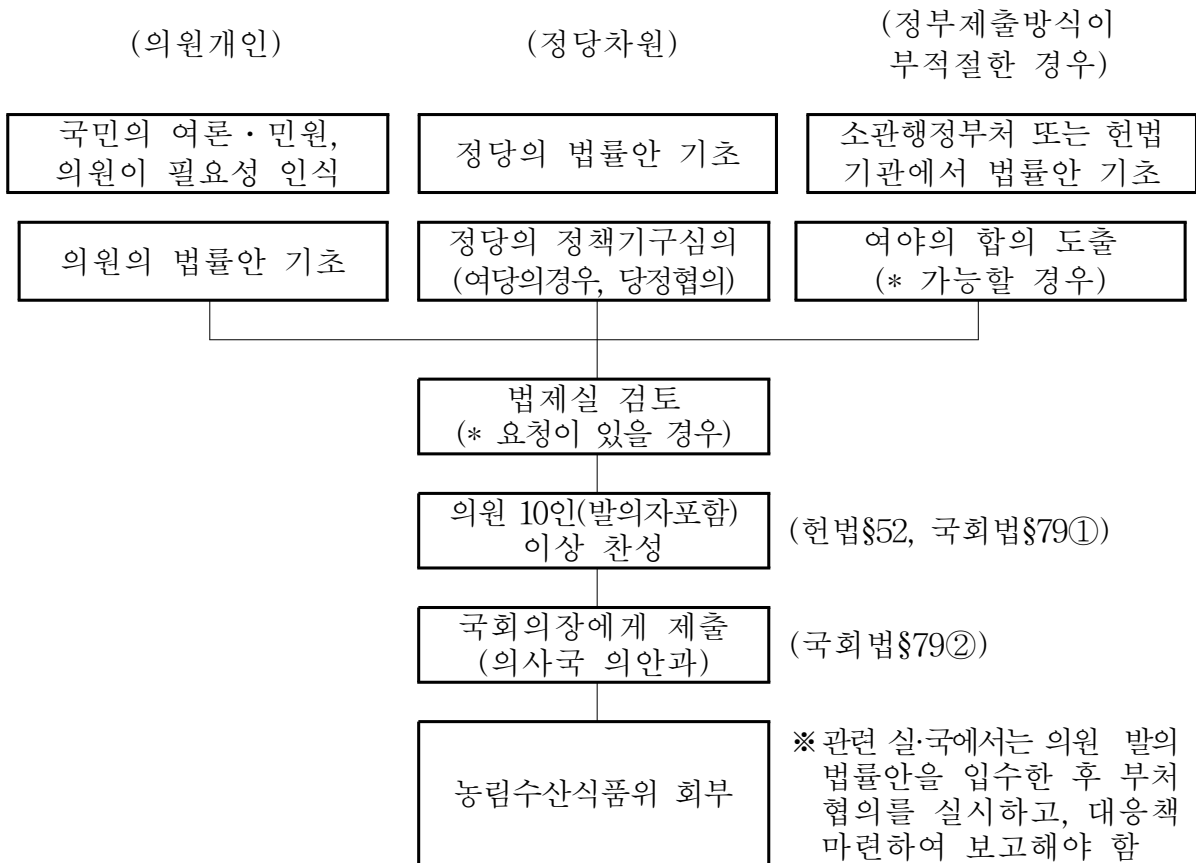
2. 의원발의 법률안 입법 절차

<※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업무처리 요령은 제3편 참조>

의원발의 법률안은 ① 의원이 직접 기초하는 경우 ② 정부 또는 제3자가 기초하여 제공하는 안을 근간으로 의원이 입안하여 제출하는 경우 ③ 정부가 마련한 안을 의원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 ④ 연구원, 관련단체 등이 마련한 법률초안을 의원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 ⑤ 소속정당의 정책실무부서에서 입안한 법률안을 당내절차를 거쳐 발의하는 경우 등 그 입안과정이 다양하다.

특히, 최근에는 국가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법률이나 다수 부처의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법률로서 의견불일치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법률 등이 의원발의를 통하여 처리되는 예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정부내 의견을 통일하여 국회에 제시하기 위해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도 소관 부처가 의무적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과정>



가. 입법준비

특정분야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개인의 입법동기에 의하여 입법이 추진되는 경우도 있으나 정당내 정책기구의 결정 또는 정당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입법이 추진되기도 한다. 각 정당은 정책위원회 등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기구를 두고 있으며, 분야별로 당전문위원을 두어 정책개발 활동을 수행한다.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경우에는 국회 소속으로 정책연구위원을 두어 입법정책의 심의·결정과정에서 당과 국회와의 통로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대국민관계에 있어서 전문가 및 일반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하여 당차원에서 정책세미나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기도 한다.

나. 법률안의 기초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원은 법제실무자에게 법률안의 기초를 의뢰하게 된다. 직접 개인참모에게 지시할 수도 있고,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도 있으며, 의원발의 법률안의 기초 및 성안 등의 법제지원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회에 설치된 법제실을 활용할 수도 있다. 법제실에는 법제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제관(계약직 변호사 및 박사 포함) 등이 배치되어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법제지원과 각종 법제자료의 제공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법제실의 입법지원을 받아 법률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은 입법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법요강이나 법률안 초안을 작성하여 소정의 법률안입안의뢰서와 함께 법제실(의회법제과)에 제출한다.

다. 국회제출(발의)

법률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소정의 찬성자(발의자를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국회법 제79조제1항)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안에는 발의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되,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한다(국회법 제79조). 제안이유·주요내용·신구조문대비표·제정소요추계서 등은 정부안의 경우와 동일하다.

제3장 대통령령·부령의 입법 절차

1. 대통령령(시행령)

입안(소관부서) → 법령정비협의회 심의 → 관계 부처 협의 → 부패영향평가 → 입법예고(10일 이내에 입법예고안 국회제출) → 당정협의 → 규제심사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의결 → 국무회의 의결 → 관계 국무위원부서·국무총리 부서·대통령 재가 → 관보게재의뢰(법제처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 공포(공포 후 10일 이내에 국회제출)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법규명령을 말한다. 대통령령은 상위법령이 위임하는 내용이나 상위법령을 집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범위내의 내용만을 규정해야 하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와 불이익을 부과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위법이다.

대통령령의 입법시에는 국회심의절차가 필요 없다. 다만,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총괄하여 제출함)

대통령령의 입법절차는 정부 내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회심사와 같은 절차는 없으며, 그 밖의 입법절차는 법률의 입법절차와 같다. 즉, ① 입안 ② 관계 부처 협의 ③ 부패영향평가 ④ 입법예고 ⑤ 당정협의 ⑥ 규제심사 ⑦ 법제처심사 ⑧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⑨ 국무위원 및 국무총리의 부서 ⑩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⑪ 법제처에서 대통령의 공포번호를 부여받은 후 행정안전부에 법령공포를 위한 관보게재의뢰로 공포된다.

대통령령이 공포된 후에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관보를 정정함으로써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당초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안의 실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명백하고도 경미한 사항(오탈자의 수정, 경미한 자구수정, 인용조항의 오류 등)에 한정된다.

공포된 대통령령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보의 발행기관인 행정안전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관보계)에 관보정정을 요청하게 되며, 반드시 법제처가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소관 법제관이 법제국장의 결재를 받아 법령총괄담당관에게 요청하게 되며, 법령총괄담당관은 요청사항이 관보정정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행정자안전부에 관보정정을 요청하게 된다.

2. 부령(시행규칙)

입안(소관부서) → 법령정비협의회 심의 → 관계 부처 협의 → 부패영향 평가 → 입법예고 → 규제심사 → 법제처심사 → (법안 소관부서에서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 의뢰) → 공포(공포 후 10일 이내에 국회제출)

부령은 행정각부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하는 법규명령으로서, 법률 또는 대통령령이 위임하는 내용이나 법률 또는 대통령령을 집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범위내의 내용만을 규정하여야 한다.

부령은 법률 및 대통령령과는 달리 국무회의 및 대통령재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제처 심사후 주무부장관이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공포하면 된다. 다만, 부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입안(소관부서)

- (1) 입안
- (2) 부내협의

나. 법령정비협의회 심의

- (1) 법령정비협의회 심의(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사전검토 후 상정)
- (2)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협조 및 장관 결재를 받아 우리부안 확정

다. 관계 부처 협의 및 부패영향평가

- (1) 관계부처협의(필요시 서식승인, 위생·동식물검역 관련 WTO 통보 사항 여부 검토 포함)
- (2)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 (3) 당정협의(중요정책과 관련된 부령의 경우)

라. 입법예고

- (1) 규제개혁위원회 사전심의 및 통계청 통계기반 정책관리 평가
- (2) 입법예고 실시 및 의견수렴
- (3) 제출의견의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

마.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

- (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 의뢰
- (2) 정부입법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법제처에 부령안 심사의뢰
- (3) 법제처의 부령안 심사(관계 부처 합의사항 확인 등 포함)

바. 부령 결재안 및 부령안 심사확인증 접수

사. 관보게재 의뢰

- (1) 제안부처(부령안 소관부서)가 직접 행정안전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관보계)에 관보게재를 의뢰

- 법제처 부령결재안과 부령안심사확인증 첨부

※ 「관보규정」(대통령령) 및 「관보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참조

(2) 부령번호는 우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부여 받음

아. 관보정정 의뢰

법제처 결재안과 관보게재 내용을 비교·확인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보정정 의뢰를 하여야 한다. 특히, 부령의 경우에는 관보게재를 요청한 소관부처에서 관보정정 의뢰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당해 부령을 심사한 법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법률의 하위법령 마련시 유의사항

하위법령 적기마련을 위한 활동의 내용과 결과는 국무총리실 및 법제처의 소관 기관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 포함되고, 수시로 국무회의 등에도 보고되고 있는 바, 소관 하위법령이 법시행일 전에 공포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각 법률의 하위법령에 대한 입안·부처협의·입법예고 등 입법절차의 신속한 진행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하위법령 적기마련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추진하여야 한다.

- 유 의 사 항 -

- 가. 하위법령의 적기 마련을 위해서는 법률안 입안시,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법률안의 상임위 심의시부터 입안 및 부처협의 등 입법절차를 진행하는 등 미리 준비하여야 함
- 하위법령의 제·개정을 위해서는 정상적으로는 3개월 이상이 소요
 - 부처협의(10일), 입법예고(20일) 및 규제심사(통상 30일 내외) : 약 2월정도 소요
 - 법제처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재가 및 관보게재 : 약 45일 내외 소요
- 나.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회 상임위 심사시 3월 이상의 시행유예기간을 두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함(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임)
- 다. 법제처 심사의뢰시에는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감안하여 하위법령이 가급적 45일 전에, 늦어도 30일 전에 심사의뢰될 수 있도록 하고, 입안지연, 부처협의 지연 등으로 입법절차의 진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법제처 소관 법제관실 또는 법령총괄담당관실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함

제4장 법률 및 대통령령·부령의 입법 절차(요약)

법률과 하위법령의 입법 절차를 간략하게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부입법계획 수립(법제처)

- 입법계획수립지침 각 부처에 통보 : 11.30까지, 법제처
 - 입법계획수립지침 각 소관부서에 통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입법계획안 작성·제출 : 각 소관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우리부 입법계획안 제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법제처
 - 각 부처 입법계획안 조정, 정부입법계획안 확정후 국무회의 보고 : 법제처
 - 정부입법계획안 관보 고시 : 매년 3월
- ※ 정부입법계획 대상은 법률이며, 대통령령과 부령은 해당 없음

2. 입 안

- 우리부 입법계획안에 따라 법률 입안 : 소관부서(대통령령·부령은 입법계획과 상관 없이 필요에 따라 입안)
- 법령정비협의회 상정 의뢰 : 소관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법안 예비검토·법안 사전설명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법안 담당서기관·사무관
- 법령정비협의회(위원장 : 기획조정실장) 심의 : 소관 법안의 담당과장 설명
- 법령정비협의회 결과보고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장관결재 후 우리부안 확정 : 소관부서

3. 관계 부처 협의(10일 이상)

- 우리부 확정 안에 대하여 부처협의 실시 : 소관부서
-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안의 경우 비용추계서 첨부

4. 부패영향평가(국민권익위원회)

- 관계 부처 협의와 동시에 법률안과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제출(제정안은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도 함께 제출) : 소관부서 → 국민권익위원회(법령분석기획과)
- 소관부서에서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제출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확인·검토 필요

5. 입법예고(20일 이상)

- 부처협의를 완료된 법안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심의 받음 : 소관부서
- 입법예고 실시 : 소관부서 →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 의뢰
- 입법예고시 법안 전문과 규제영향분석서를 우리부 홈페이지에 게재 : 소관부서
- 입법예고 의뢰시 공고번호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부여

6. 당정협의를

- 당정협의를 의제확정요청서 작성·제출 : 소관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당정협의를 의제확정요청서 국회 제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여당 정책위원회 의장 등
- 당정협의를 실시
 - 부처별 당정협의회 : 장관, 해당 법안의 소관 국장, 담당서기관·사무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참석
 - 실무당정협의 : 해당 법안의 소관 과장, 담당서기관·사무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참석

7. 규제심사(규제개혁위원회)

- 농림수산식품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제심사
 - : 해당 법안의 소관 과장 설명,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관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중요규제는 해당 법안의 소관 국장 설명
비중요규제는 해당 법안의 소관 과장 설명

8. 법제처 심사(20일 이상)

- 규제심사가 끝난 법안을 법제처에 심사의뢰 : 소관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협조
 - ※ 법제처 심사의뢰시 반드시 정부입법통합시스템 입안시스템 사용
- 심사의뢰시 통상 법률안 50부 첨부(법제처 합동심사회 자료)
-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의뢰 전에 법안 사전설명 실시 : 소관부서
- 법제처 담당 법제관 심사 → 사회문화법제국장 결재 → 법제처 차장·처장 결재
- 부령 결재안 및 부령안 심사확인증 송부 : 법제처 → 소관부서
- 부령안 공포(관보게재) 의뢰 : 소관부서 → 행정안전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공포번호 부여

9. 차관회의 · 국무회의(통상 매주 목요일 · 화요일)

- 매주 월요일까지 법제처 심사완료된 법안을 차관회의 상정
 - 차관회의 안전상정 절차 : 소관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차관회의
- ※ 소관부서 : 월요일까지 법령보고안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메일로 송부 및 제안설명서 등 작성
 - 화요일까지 업무관리시스템 내 문서관리카드 결재 후 안전 상정 조치
- 차관회의 : 매주 목요일 14:00 개최 (중앙청사 국무회의실)
- 차관회의 통과 법안을 국무회의 상정
 - 국무회의 : 매주 화요일 09:00 또는 09:30 개최 (중앙청사 국무회의실 또는 청와대)
- ※ 차관회의·국무회의 대상은 법률안과 대통령령안임

10. 대통령 재가 및 부서

-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부서
- 대통령 재가
- 법률안 국회제출 : 법제처
- 대통령령안 공포(관보게재) 의뢰 : 법제처 → 행정안전부
- ※ 법령안 재가문서는 법제처에서 작성

11. 법안 국회제출

- 정부안 : 법제처 → 국회 의안과
- 의원발의안 : 소관부서에서 부처협의 실시후 법제처에 부처협의결과 통보, 부처간 의견조정이 안되는 경우에는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 요청
- 정부안 · 의원발의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 소관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국회

12. 법안 사전설명(농식품위 입법조사관)

- 참석 : 소관 법안의 해당 과장, 담당서기관·사무관
- 입법조사관 요구자료 제출 등

13. 법안 예비검토(농식품위 수석전문위원)

- 참석 : 소관 법안의 해당 국장, 담당서기관·사무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설명자료 준비 : 담당서기관·사무관(법안이 많은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취합)

- 전문위원 요구자료 제출 등
- 예비검토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확인 : 담당서기관·사무관
- 소위심사자료 및 수정안·대안 작성·확인 : 담당서기관·사무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14. 법안 상정(농식품위 전체회의)

- 참석 : 장관님, 해당 법안의 담당 국장, 담당서기관·사무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장·차관님 설명자료(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예상쟁점 및 답변방향 포함) 작성·제출(상정 5일 전) : 담당서기관·사무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장·차관님께 상정 법안관련 보고(상정 1 ~ 2일 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소관부서 공동
- 제안설명서 작성·유인 후 국회제출(50부, 상정 1일 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질의서 입수(기획재정·규제법무) 및 답변자료 작성(소관부서)→장관 보고(전체회의 개최 전)
- 전체회의시 대체토론 결과정리 및 소위심사자료 확인 : 담당서기관·사무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15. 법안심사소위(농식품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

- 참석 : 차관, 담당국장, 담당서기관·사무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차관계 소위심사자료 관련 보고(소위 개최 전일)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관부서
- 소위 종료 후 전체회의 의결용 수정안·대안 확인 : 담당서기관·사무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16. 법안 의결(농식품위 전체회의)

- 참석 : 장관, 해당 법안의 담당 국장, 담당서기관·사무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장관께 소위심사 결과 보고(전체회의 개최 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관부서
- 법안통과 후 장관 인사말씀 준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법안통과 후 최종 확인작업 : 담당서기관·사무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17. 법사위 법안 사전설명(법사위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 농식품위 의결 직후 각 법안 설명자료·담당자 명단 등 제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법사위 제출 수정안·대안, 법안의 현행 최신법률, 법안원문, 검토보고서, 법안 설명자료, 법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 또는 다른 법률의 해당 조문 스크랩)

- 법안 사전설명 : 전문위원 불참시 - 해당 법안의 담당 과장, 담당서기관·사무관
전문위원 참석시 - 해당 법안의 담당 국장, 담당서기관·사무관, 규제 개혁법무담당관실
-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확인 : 담당서기관·사무관
- 법안 주서본 작성·유인 : 담당서기관·사무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주서본 확정연락을 받으면 상정 전일까지 70부를 유인하여 법사위 행정실에 제출)

18. 법사위 법안 상정(법사위 전체회의)

- 참석 : 장관, 해당 법안의 담당 국장, 담당서기관·사무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장관께 상정 법안관련 보고(상정 1 ~ 2일 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관부서
- 제안설명서 작성·유인 후 국회제출(70부, 상정 1일 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체회의시 대체토론 결과정리 및 소위심사자료 작성·확인
: 담당서기관·사무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혹은, 법안통과 후 최종 확인작업 : 담당서기관·사무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법사위는 법리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법안심사제2소위에 회부)

19.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법사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

- 참석 : 차관, 담당 국장, 담당서기관·사무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차관께 소위심사자료 관련 보고(소위 개최 전일)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관부서
- 소위 종료 후 전체회의 의결용 법안 확인작업
: 담당서기관·사무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법안 주서본 작성·유인 : 담당서기관·사무관, 70부(전체회의 개최 전일까지 법사위 행정실에 제출)

20. 법사위 법안 의결(법사위 전체회의)

- 참석 : 장관, 해당 법안의 담당 국장, 담당서기관·사무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장관께 소위심사 결과 보고(전체회의 개최 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관부서
- 법안통과 후 최종 확인작업 : 담당서기관·사무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법사위 통과 법안 농식품위 제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21. 국회 통과(본회의) 및 정부이송

- 본회의 참석 : 장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중요 법안의 경우 소관 과장·담당서기관·사무관
(* 찬반토론이 예상되는 법안의 경우에는 찬성발언을 위한 의원섭외 및 사전준비)
- 국회통과 법안 정부 이송 : 국회 의안과 → 법제처

22. 법률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

- 법안 이탈자 유무 및 재의요구 여부 확인 요청 : 법제처 → 각 부처
 - ※ 이탈자가 있는 경우 : 소관부서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법제처(법령총괄담당관실)와 국회(상임위·의안과)에 통보하고 정정 협조요청
- 공포안 작성 : 법제처
재의요구안 작성·심사요청 : 소관 부처 → 법제처
- 공포안 국무회의 심의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재가
- 공포
법률안재의안 국회제출

제5장 훈령 · 예규 · 고시 · 공고

1. 훈령

가. 의의

훈령이라 함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3조 참조)을 말한다(위임전결규정 등).

나. 성질

상급행정기관이 소관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권에 의거하여 하급행정기관에게 발하는 행정규칙으로서 주로 기본적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의미한다.

외부관계에서 일반적효력을 가지는 법규와는 달리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적으로는 외부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기본사항에 관한 명령이므로 세부적인 시달사항인 통첩과 구별되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명령이므로 개별·구체적인 행정행위와도 구별된다.

다. 근거와 한계

특별한 법규의 수권을 요하지 않고 상급기관이 정당한 권한 내에서 행사하면 된다. 훈령은 행정규칙이므로 특정한 행정법관계의 내부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그쳐야 한다. 또한, 법규와 상급행정규칙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고, 특정행정목적에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라. 절차

(1) 훈령안 작성

(2) 관계부처 협의 등

필요한 경우 관련국·관련부처와 협의한다.

(3)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절차

훈령안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기타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특히,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등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사실상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법원에서도 그 법규명령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훈령은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의 행정예고를 하고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규제심사

훈령안을 작성한 소관부서에서는 당해 훈령안에 대하여 행정법무팀에 법제심사 및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규제심사를 받는 “법령 등”의 범위를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그 위임에 따른 고시 등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행정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5) 법제처 사전 자문 의뢰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5조제6항에 따르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 등의 적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훈령·예규 등을 발령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 자문 의뢰시에는 별도의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자우편으로 요청하거나 대면검토요청도 가능하다.

(6) 훈령안 확정

정책결정을 요하는 중요사항에 관한 훈령안은 장관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행정절차적인 사항으로서 중요한 사항은 차관 결재를, 행정절차적인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과 기본방침이 결정된 사항은 실·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훈령안 확정시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훈령안의 소관부서에서는 훈령안의 결재를 받은 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부터 훈령번호를 부여받아 시행한다.

(7) 발령

법령에 관보에 고시하도록 한 행정규칙의 경우 행정자치부에 관보게재를 의뢰하여야 하며, 그 밖의 행정규칙의 경우에도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행정규칙의 시행일은 해당 부칙에서 시행일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일이 되며, 시행일을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관리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공고문서의 경우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행정규칙의 시행일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규칙의 부칙에 시행일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등재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발령 후 지체없이 해당 훈령·예규 등을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부입법 관련 전산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하며,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전산시스템에 등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당해 훈령·예규 등의 제명과 비공개 사유를 통보하되, 법제처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훈령·예규 등을 문서로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국회제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국회법 제98조의2 제1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형식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형식에 의해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바. 성립 및 효력발생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훈령안에 대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하고, 훈령안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발생(사무관리규정 § 8) 한다.

사. 소멸

법규나 상위행정명령 또는 같은 형식의 행정명령에 의한 적극적 폐지 또는 상충되는 내용을 제정하는 경우와 종기(終期)의 도래 또는 해제조건이 성취될 때 소멸되며 정비를 위해 기발령훈령의 폐지절차가 필요하다.

2. 예규

가. 의의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외의 문서(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3조 참조)를 말한다.

나. 성질

훈령과 동일한 성질을 가진 행정규칙이지만 법령의 해석과 집행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므로 국민생활과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다. 근거와 한계 및 절차

훈령과 동일

라. 형식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형식으로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마. 성립 및 효력발생

결재에 의해서 성립하고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바. 소멸

훈령과 동일

3. 고시

가. 의의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적 성격을 가진 사항을 불특정다수의 국민에게 알리는 형식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나. 성질

행정내부의 업무처리, 법규해석 등의 기준으로서 행정규칙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불특정다수의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한 통지사항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규의 내용을 보충하는 법규적 성격을 띠는 경우도 많다.

(1) 부령과의 구별

고시의 형식을 띠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법규가 아닌 행정내부의 행정규칙적 성격을 띠는 점에서 부령과 구별되며 그 절차도 다르다(예, 법제처 심사가 필수적 절차는 아님).

그러나, 강제성 있는 법규는 아니더라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는 것이므로 부령등 법령의 공포와 형식은 비슷하다. 실질적으로도 양자간의 성격 구별이 모호한 경우가 있으므로 고시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에게 강제성을 갖는 법규적 내용은 고시가 아닌 부령 이상의 형식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령에서 “ 부령으로 정한다”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령으로 정하지만 “ 장관이 정한다”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시로 정하고 있다.

(2) 공고와의 구별

공고·고시 모두 일반국민에게 알리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을 가지나 공고는 단지 행정행위를 불특정다수에게 송달하는 방법을 의미하므로 실제로는 단순한 사실 및 의미의 통지는 공고로, 행정기관의 의사표시가 함축된 상위차원의 장기적 업무기준등과 같은 내용은 고시로 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법령에서 고시 또는 공고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고, 공고의 경우는 법령에 근거 없이도 비교적 자유롭게 발할 수 있으나 고시의 경우는 상대적인 의미에서 공고보다는 법령의 근거를 더 필요로 하고 있다.

다. 근거와 한계

법규의 수권을 요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고, 국민에게 의무와 불이익을 강제하는 법규적 내용은 규정하지 못한다.

라. 절 차

(1) 고시안 작성

(2) 관계부처 협의 등

필요한 경우 관련국·관련부처와 협의한다.

(3)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절차

훈령안의 경우와 동일하나, 훈령안의 경우보다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항이 많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고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할 것이다.

(4) 규제심사

훈령안의 경우와 동일

(5) 법제처 사전 자문 의뢰

훈령안의 경우와 동일

(6) 시안 확정

훈령안의 경우와 동일

(7) 관보게재 등

법령에 관보게재를 명시한 규정이 없으면 고시의 방법은 관보게재, 일간신문게재, 게시판이용 등 어떠한 형식이든 일반다수의 국민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기만 하면 된다. 다만, 「관보규정」 제13조에 의하면 고시란·공고란·기타란등에 게재 의뢰된 것 중 법령으로 관보에의 게재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관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 관보보다는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이 일반화 되고 있다.

관보게재는 관보게재의뢰공문과 고시안을 행정안전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의뢰한다.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운영지원과(경리계)와 협조가 필요하다.

마. 성립 및 효력발생

결재로써 성립하고 고시안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고시후 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바. 소멸

이론적으로는 상충되는 내용의 고시로 폐지가 가능하나 국민의 편의를 위한다는 관점에서 적극적인 폐지행위가 바람직하다. 종기(終期)의 도래 및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그 효력이 소멸한다.

4. 공 고

가. 의 의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로서 행정기관이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송달의 방법을 의미한다.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다수의 일반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행정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발할 수 있다(예, 수의사면허증일제갱신 및 신고공고).

나. 성 질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된 법규적 내용과 고시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적합한 내용(상위차원의 장기적인 사무기준등)을 제외한 단순한 사실, 의사, 통지 및 단기적인 사무기준등은 공고의 형식에 의한다. 입법예고안도 공고의 형식을 빌어 일반에게 알리고 있다.

다. 근거와 한계

실제운영상으로는 법규의 수권을 요하는 것이 원칙이고 행정기관의 판단에 의해 공고하는 경우도 많다. 공고의 형식에 담은 내용의 성격에 따라 그 한계가 일정하지는 않지만 행정행위의 통지인 경우에는 기속재량의 한계를 가진다.

라. 절 차

공고번호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부여하고, 공고의 방법은 고시의 방법과 같다.

마. 성립 및 효력발생

고시의 경우와 같음

바. 소 멸

공고안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충하는 내용의 공고 또는 적극적 폐지행위에 의하고, 종기(終期)의 도래 및 해제조건이 성취에 의해 그 효력이 소멸된다.

부령 · 훈령 · 예규 · 고시 · 공고의 구별

구 분	부 령	훈 령	예 규	고 시	공 고
성 질	법규명령	행정규칙	행정규칙	행정규칙 또는 의사의 통지	통지 행위
내 용	상위법령의 위임 또는 집행을 위한 명령	상급기관의 장기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명령	반복적인 행정 사무의 기준에 대한 명령	일반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무처리기준 등의 의사표시	일반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단기적인 내용의 사실 및 의사의 통지
형 식	조문형식	조문 또는 시행문형식	훈령과 동일	제한없음	제한없음
근 거	상위법령의 엄격한 근거 필요	법령의 근거 불필요	"	원칙적으로 법령의 근거 필요(예외 인정)	법령의 근거 또는 행정 기관의 판단
한 계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내	상급기관의 권한내	"	법규적 내용을 규정할 수 없음	고시와 동일
법 제 처 사전심사	필수적임	신청하는 경우에만 심사가능	"	훈령과 동일	불필요
효력발생	공포(반드시 관보게재)	공포는 불필요(수신자에게 도달하면 효력발생)	"	관보·일간신문 게재 등 어떠한 형식이든 고시 하면 됨	관보·일간신문게재 등 어떠한 형식이든 공고하면 됨
일련번호 부 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의 규제심사의견서 확인 후 부여				

제3편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업무처리 요령

제3편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업무처리 요령

제1장 개요

1. 의원입법 검토 필요성

가. 법집행상의 문제 발생에 대처

국가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집행이 곤란한 법률 등이 통과되어 집행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의원입법을 사전에 검토하여 대처 방안 마련이 필요함

나. 정부내 의견 불일치로 인한 혼란 방지

다수 부처의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법률의 경우, 집행단계에서 부처간 의견불일치로 인한 혼란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사전에 정부내 의견 조정이 필요함

2. 국무총리훈령의 제정

가. 제정 목적 : 효율적인 입법활동의 지원

의원입법에 대한 정부내 의견협의 절차를 통하여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국회의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법률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훈령의 제명 및 시행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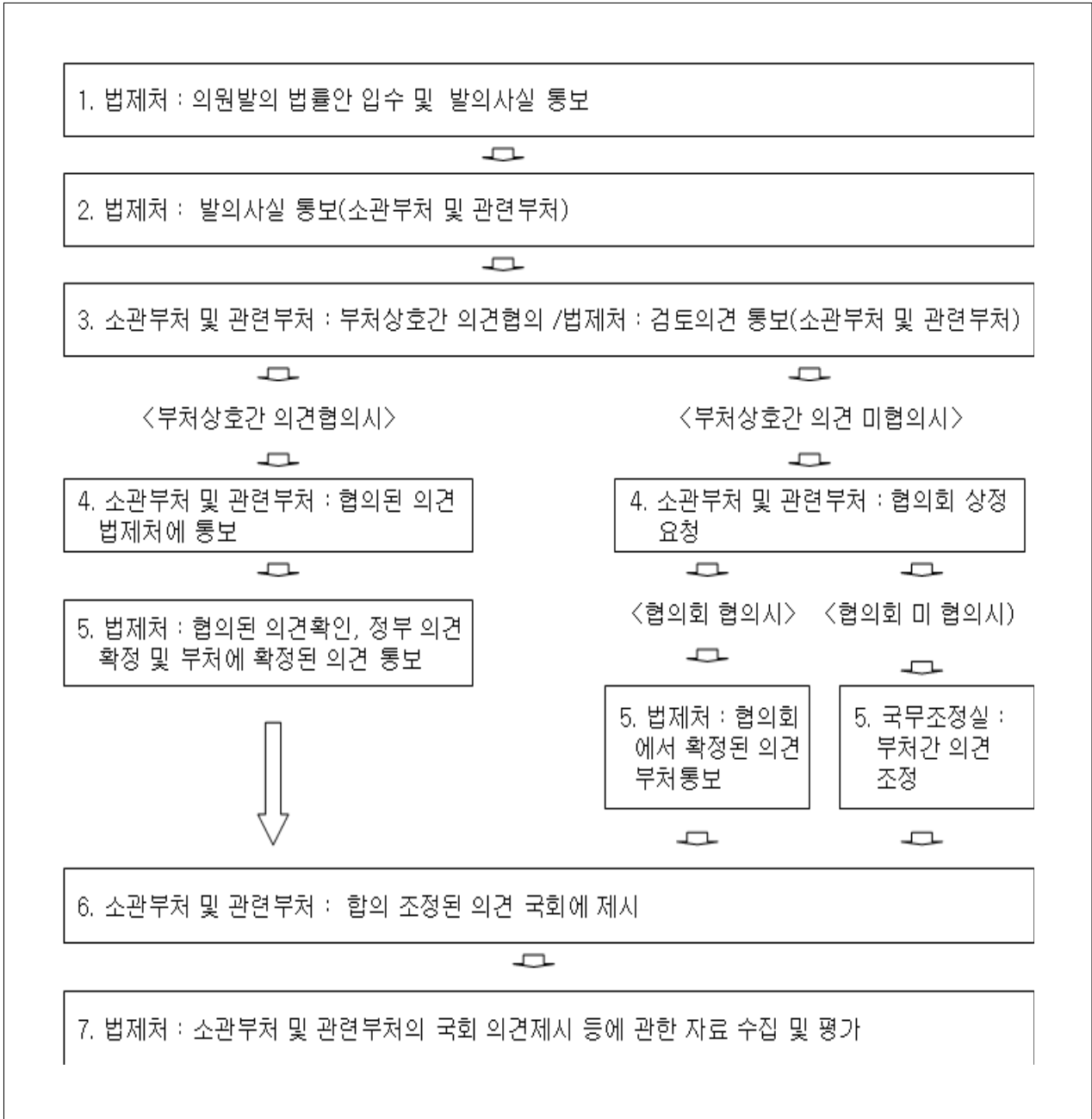
제명 :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477호)

제정 및 발령 일시 : 2006. 3. 10.

시행일시 : 2006. 4. 11.

제 2 장 의원입법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

<업무처리 절차 흐름도>



※ 정부입법중 국회 심의과정에서 주요내용이 변경된 법안의 경우 소관부서 담당자는 이를 입수하여 법제처 및 관련부처에 통보한 후 의견협의 절차를 거쳐 이후 국회에 협의된 의견을 제출(의견협의 절차는 의원입법 의견협의 절차와 동일)

1. 의원발의 법률안 등 입수

가. 의원발의 법률안

국회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최근접수의안, 위원회별 계류의안 등 처리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입수하고, 의안정보시스템에 등재되지 아니한 법안 중 시급히 의견협의를 필요한 법안은 관계자를 통하여 입수함

나. 정부제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이 변경된 법안

정부제출 법률안 중 국회심의과정에서 주요내용이 변경된 법안은 국회 관계자 또는 법률 소관부처 담당자로부터 직접 입수함

2. 법률안 발의사실 통보

가. 소관부처에 통보(훈령 제3조제1항)

법제처에서 법률안을 입수하여 소관부처에 발의사실을 통보(법률안, 국무총리훈령 등 첨부)함

※ 소관부처 또는 관련부처가 법안을 직접 입수한 경우에도 법제처에서는 이를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발의사실을 부처에 통보함

나. 관련부처에 통보

법제처에서 법률안을 입수하여 주요 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 국토해양부)를 관련부처로 하여 통보함

3. 법제처 검토의견 통보

가. 소관부처 및 관련부처에 통보(훈령 제4조)

법제처에서는 당해 법안에 법리적 쟁점 소지여부, 재정지출 증가 여부, 정부조직 신설 여부 등을 검토하여 소관부처 및 관련부처에 통보함

나. 검토의견의 제출 요청(훈령 제4조제3항)

법제처에서는 당해 법률안에 검토를 위하여 소관부처의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함

4. 법률안에 대한 소관부처의 조치

가. 소관부처의 법안 검토(훈령 제3조제2항)

발의사실을 통보받은 소관부처 법무담당부서에서는 문서접수 후 당해 법안 소관부처에 통보하여 검토 및 의견조회를 하도록 요청(당해 법안에 2 이상의 담당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가 총괄)함

※ 법안 소관부처가 미확정인 경우 법무담당부서 또는 기관장이 담당 부서 결정(결정 방법은 자율적임)

나. 관련부처에 의견조회(훈령 제5조제1항)

법률안 소관부처에서는 법률안을 검토하고, 관련부처를 파악하여 관련 부처에 의견조회를 실시(법제처에서 통보한 관련부처와는 별도로 실제 법안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처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모든 부처에 의견조회 실시)

다. 관련부처와 의견협의 및 의견조정(훈령 제6조제1항)

의원입법에 대하여 관련부처와 의견교환 및 의견협의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의견협의 및 조정 방법은 공문서 또는 유선상 등 자율적임)

라. 의견협의 결과 법제처 통보(훈령 제4조제4항)

법률안 소관부처는 의견협의 결과를 「소관부처 검토의견서」양식에 따라 주요 쟁점사항, 소관부처 검토의견, 의견협의 여부 등을 기재하여 법제처로 통보

마. 정부의견 확정 등(훈령 제3조제2항, 제6조, 제11조)

(1) 부처간 협의로 의견조정이 된 경우(이견이 없는 경우 포함)

법제처에서는 소관부처 및 관련부처로부터 각각 검토의견서를 받아 그 조정된 의견을 확인한 후,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협의된 의견」양식에 따라 협의된 의견 등을 기재하여 소관부처 및 관련 부처에 통보(정부의견 확정)

소관부처는 협의된 의견(정부의견)을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정부의견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2) 부처간 협의로 의견조정이 아니된 경우

부처간 협의로 의견조정이 되지 않은 때 소관부처는 「의견협의 신청서」의 양식에 따라 협의사항 등을 기재하여 정부입법정책 협의회에 의견협의를 요청하며, 협의회에서 의견협의를 통하여 의견이 조정되면 「협의회 협의결과」양식에 따라 기재하여 소관 부처로 통보(정부의견 확정)함

소관부처는 협의된 의견(정부의견)을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정부의견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입법정책협의회에서 의견조정이 아니된 경우 「협의회 협의결과」 양식에 기재하여 국무총리에 보고하여 의견조정

5. 법률안에 대한 관련부처의 조치

가. 관련부처의 법안 검토(훈령 제5조)

법제처 또는 소관부처에서 관련부처의 법무담당부서(또는 당해 업무 소관 부서)에 발의 사실 또는 의견조회 실시

관련부처 법무담당부서에서는 문서접수 후 당해 업무관련부서에 통보 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소관부처 및 법제처에 의견제시 하도록 요청(당해

법안에 2 이상의 업무관련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 또는 주요 업무관련부서가 총괄)

※ 당해 업무관련부서가 미확정인 경우 법무담당부서 또는 기관장이 관련부서 결정(결정 방법은 자율적임)

나. 관련부처와 의견협의 및 의견조정(훈령 제5조 및 제6조)

의원입법에 대하여 소관부처에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교환 및 의견협의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의견협의 및 조정 방법은 공문서 또는 유선상 등 자율적임)

다. 의견협의 결과 법제처 통보

당해 업무 관련부서는 의견협의 결과를 「관련부처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주요쟁점사항, 관련부처 검토의견, 의견협의 여부 등을 기재하여 법제처로 통보(당해부처 법무담당부서에도 송부)하며, 이견이 없는 경우에도 이견없음을 통보(관련부처의 의견을 법제처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

라. 정부의견 의견확정 등(훈령 제6조 및 제11조)

(1) 부처간 협의로 의견조정이 된 경우(이견이 없는 경우 포함)

법제처에서 소관부처 및 관련부처로부터 각각 검토의견서를 받아 그 조정된 의견을 확인한 후,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협의된 의견」 양식에 따라 협의된 의견 등을 기재하여 소관부처 및 관련부처에 통보(정부의견 확정)하고, 관련부처는 국회에서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때 또는 국회 심의시 협의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함

(2) 부처간 협의로 의견조정이 아니된 경우

부처간 협의로 의견조정이 되지 않은 때 관련부처는 「의견협의 신청서」의 양식에 따라 협의사항 등을 기재하여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의견협의 요청

협의회에서 의견협의를 통하여 의견이 조정되면 「협의회 협의결과」 양식에 따라 기재하여 관련부처로 통보(정부의견 확정)하고, 관련부처는

국회에서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때 또는 국회 심의시에는 협의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함

6. 국무회의 보고 등

가.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 상정(훈령 제12조)

부처간 협의 또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협의결과 의원입법에 법리적 문제, 예산상 문제 등으로 집행에 어려움이 중대하여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부처 또는 법제처는 이를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하여 여당의 협조 요청

나. 입법추진 상황 국무회의 보고(훈령 제13조)

의원입법에 대한 관계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의원입법의 입법추진 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함

제4편

법률안 작성요령

제4편 법령안 작성요령

1. 법령안의 구성

법령안건은 다음의 4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 ① 표지부분 : 의안번호, 의결구분, 의결년월일, 법령제명, 제출자, 제출년월일, 법제처 심사여부등을 표시하는 부분
- ② 의결관련부분 : 의결주문, 제안이유, 주요내용, 주요토의과제, 관계법령, 예산조치, 관계부처 합의여부,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등 법령안건의 의결과 관련된 부분
- ③ 본문부분 : 법령종별·공포번호, 법령제명, 본칙, 부칙, 별표, 별도(別圖), 별지서식등 법령의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
- ④ 참고사항부분 :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정원대비표, 신·구세울대비표, 기타 법령안 의결에 참고될 사항에 관한 부분

법령안건을 구성하는 4개 부분은 각각 반드시 홀수쪽에서 시작한다

(* 동 원칙은 국회 법안처리시 특히 유의).

본문부분, [별표]·[별도] 및 [별지 서식], 신·구조문대비표나 신·구정원 대비표 또는 신·구세울대비표 등 각종 대비표, 기타 관계법령, 입법예고 실시에 따른 조치결과 등은 그 끝난 쪽의 여백이 있거나 뒷면에 여백이 있더라도 ‘반드시 홀수쪽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 용지크기, 글자의 크기·종류, 행간격 등의 기준

- 워드프로세서 : 글(호글 기준)
- 용지크기 : A⁴ (210mm×297mm)
- 용지방향 : 보통
- 여백 : 여백을 제외한 부분이 160mm×235mm 이내가 되도록 다음과 같이 여백을 지정함
 - 위 쪽 : 16 - 원 쪽 : 25 - 머리말 : 12.7
 - 아래쪽 : 16 - 오른쪽 : 25 - 꼬리말 : 12.7
 - 제 본 : 0 - 문단여백(위·아래) : 0
- 글자크기 및 글자종류
 - 제명 등 : 의결주문, 제안이유, 주요내용, 주요토의과제, 참고사항, 법령의 제명, 장·절의 제목, 부칙, 신·구조문대비표 등 각종제목(내용은 제외)
: 고딕 16 Point
 - 내용 : 의결관련부분 - 신명조 15 Point, 본문부분 - 신명조 14 Point
 - 서식·도표등 : 적당한 규격
- 행 간격
 - 기본 : 230%
 - 의결관련부분의 제목과 내용사이 : 230%
 - 의결관련부분의 내용과 제목사이 : 460%
 - 법령공포번호와 제명사이 : 460%
 - 제명과 모두개정문사이 : 460%
 - 새로운 개정문의 시작시 : 230%
 - 개정문과 조문사이, 조문과 조문사이 : 230%
 - 장·절 제목의 위·아래 : 230%
 - 부칙의 위·아래 : 460%
 - 신·구조문대비표 : 180%
- 신·구조문대비표의 선
 - 그리기 또는 표 사용

2. 법령안의 세부작성방법

가. 표지부분

표지는 국무회의의 의안의 표지와 같다.

나. 의결관련부분

(1) 제안이유 작성요령

- 의안의 제안이유, 정책의 추진배경, 핵심되는 주요골자 및 기본적인 개선방향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
-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요정책과 관련된 법령안은 「정책의 추진배경」과 「기본적인 개선방향」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서술해야 한다.
 - 정책의 추진배경 : 제·개정이유, 정책의 기본방향, 현행제도의 문제점 등
 - 기본적인 개선방향 : 전체 또는 핵심되는 제도변경에 의하여 추구하는 주된 기대효과

* 예시: 2007.2.2 개정된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19867호] 중 발췌

2. 제안이유

법제처 주관으로 각 부처가 참여하여 법령 등의 정비·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령정비위원회를 법제 전문 공무원 및 민간인 위주로 개편함으로써 신속한 법제정비 및 전문적·효율적인 법제 자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령·예규 등의 심사대상 행정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며, 훈령·예규 등의 통합관리전산시스템에의 등재 의무화, 훈령·예규 등의 수시심사제 도입 등을 통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이 발령하는 훈령·예규 등의 적법성을 높임으로써 법치행정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작성요령

- 현행내용과 개정내용이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제·개정하는 목적이나 배경, 제·개정내용의 장점이거나 기대효과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 주요내용의 작성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 ○○ 제도 도입

....제도의 도입, ...정책의 시행, ...의 사업폐지, ...제도로 변경 등 (당해 조항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해당조문을 기재)

(1) 당해제도(정책) 도입배경

- ...제도는 ...정책변경에 따라 ...하게 되어 ...제도를 추진하게 된 것임
- ...제도는 ...문제점이 있어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려는 것임

< 항목기재 방법 >

- 제도 도입배경이 대통령지시, 정책방향의 변경, 상황변동, 특정사건 발생 등 입법 수요 발생 원인이 되는 사항 기재
- 가능한 경우 판례, 결정례, 통계자료, 특정사건 경위 등도 활용

(2) 도입하는 제도의 내용 기재(제·개정 내용)

- 현행 정책이 ..인 것을 ...정책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목적에 위하여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것임

< 항목 기재 방법 >

-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전후를 대비
- 새로이 도입하는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기술

(3) 기대효과 기재

- 새로이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현재의 ...상황은으로 개선이 기대됨

<항목 기재방법>

- 종전 제도변경 또는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기대효과 서술
- 통계수치 기타 분석자료 등을 활용 설명

* 예시: 2007.2.2 개정 한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19867호] 중 발췌

3. 주요내용

가. 법령정비위원회의 개편(영 제24조제6항)

- (1) 현재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법령정비위원회는 반기별로 연 2,000여건에 달하는 법령개선건의에 대하여 정비 반영여부를 결정하는 형태로 운영됨으로써 법제정비가 지연되고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음.
- (2)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법령정비안건의 채택 및 부처간 의견조정을 하는 법령정비위원회를 앞으로는 법제업무에 관한 전문적 능력을 갖춘 법제처 소속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법제정비 및 법령개선을 위한 협의·자문을 하는 기구로 개편함.
- (3) 법령정비위원회를 법제개선에 관한 전문적인 협의·자문기구로 개편하고, 법령정비안건의 채택은 수시로 부처간 실무협의를 의견조정을 거쳐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신속한 법제정비의 추진이 가능하게 되고, 법제정비 및 법령개선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규격기준

- 의결관련부분의 제목번호는 좌측기준선(Left margin)에서 시작하고 번호다음에 영문 한글자를 띄우고, 제목을 표시한다.
- 의결관련부분의 각 내용은 그 제목을 표시하는 행의 다음행(230%)에서 시작하되, 각 내용의 다음의 새로운 제목은 한행을 뺀 다음행(460%)에서 시작한다.
- 의결관련부분의 내용은 좌측기준선에서 4타를 띄우고 시작하되, 2행 이상 되는 경우 2행이하의 첫글자의 좌측기준선에서 3타를 띄우고 시작한다.
- 가., 나., 다. 등이 목으로 구분할 때에는 가. 등의 목번호는 좌측기준선에서 2타를 띄우고 시작하고 그 내용은 목번호 다음에 1타를 띄우고 시작하되, 2행이상인 되는 경우 2행이하의 첫글자는 좌측기준선에서 5타를 띄우고 시작한다.

- 각 목이 콜론(:)으로 구분되어 제목과 내용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경우 내용이 2행이상이 될 때에는 2행이하의 첫글자는 첫행의 콜론을 기준선으로 1타를 띄우고 시작한다.

< 예 >

1. ㄱ의결주문

ㄱ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ㄱ제안이유

ㄱ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재의 보존 및 보급을 위한 이론 및
 ㄱ실기교육·····:

3. ㄱ주요내용

ㄱ가. ㄱ전통문화전문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부장관 관할아래 한국
 ㄱ전통문화학교를 두되, 그 설립 및·····:

4. ㄱ주요토의과제

ㄱ없음

5. ㄱ참고사항

- ㄱ가. ㄱ관계법령 ㄱ: ㄱ생략
- ㄱ나. ㄱ예산조치 ㄱ: ㄱ별도조치 필요없음
- ㄱ다. ㄱ합의 ㄱ: ㄱ문화관광부 및 행정자치부와 합의되었음
- ㄱ라. ㄱ기타 ㄱ:
- ㄱ(1) ㄱ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ㄱ(2) ㄱ입법예고(1998. 5.10~ 5.30)결과, 특기할 사항없음
- ㄱ(3) ㄱ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다. 본문부분

(1) 법령종별 및 공포번호

- 법령종별과 그 공포번호란은 법령안건의 본문부분의 시작되는 첫쪽의 좌측상단에 배열한다.
- 법령종별의 최초글자는 당해 유인물의 좌측 기준선에서 시작한다.
- 공포번호는 법률종별 다음에 2타를 띄우고 배열하되 <예>와 같이 공포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예 >

법률 제_____호
대통령령 제_____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_____호

(2) 법령의 제명

- 법령의 제명은 법령종별 및 공포번호를 표시하는 행에서 한행을 뺀(460%) 다음 행에 두도록 하되, 그 행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배열한다.
- 제명이 길어서 두 행이상으로 배열하는 경우 2행이하의 첫글자의 첫 번째 행의 첫글자와 맞추어 시작한다.

(3) 모두개정문(冒頭改正文)

- 법령을 개정함 있어서 모두개정문은 개정법령의 제명에서 한 행을 뺀(460%) 다음 행부터 시작한다.
- 모두개정문의 첫글자는 좌측기준선에서 시작한다.(예1참조)
제정의 경우에는 모두 개정문이 없다.(예2참조)

< 예 1 >

법률 제 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중 “등록”을 “등록 또는 신고”

< 예 2 >

법률 제 호

양곡증권정리기본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양곡증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4) 개정문

- 개정문은 모두개정문(冒頭改正文)의 다음 행(230%)부터 시작한다.
- 개정문의 첫글자는 좌측기준선에서 시작한다.
- 개별 조문을 부분개정하는 경우, 당해 조문의 개정문이 2행이상 되는 경우에는 2행이하의 첫글자는 좌측기준선에서 시작한다.

< 예 >

제1조제1항 중 “……”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을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를 “……”로 한다.

- 개별 조·항·호 또는 목을 전부 개정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개정 또는 신설되는 조·항·호 또는 목은 개정문이 끝나는 행의 다음행(230%)에서 시작하되, 配字는 다음의 「조문의 배자(配字)」를 참조한다.
- 개정문에서 해당조문을 특정하여 서술하는 경우 해당조문의 띄어쓰기는 조·항·호·목은 모두 붙여 쓰되, 본문·단서·전단·후단은 띄어 쓴다.

< 예 >

제12조제5항_후단 중 “……”을 “……”로 한다.

제20조제1항제5호가목_단서 중 “……”를 “……”로 한다.

(5) 조문의 배자(配字)

- 조문의 첫글자인 “제”자는 좌측기준선에서부터 시작하며, 조의 제목이 끝난 다음 2타를 띄우고 항의 표시 또는 조의 본문의 첫글자를 시작하며 항의 표시 다음에는 띄우지 않도록 한다.
- 본문 또는 항의 내용이 길어서 2행이상이 되는 경우 2행이하의 첫글자는 좌측기준선에서 2타를 띄우고 시작한다.
- 1개의 조문이 여러개의 항으로 구성되거나 1개항이 여러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항 또는 호를 표시하는 아라비아 숫자는 좌측기준선에서 2타를 띄우고 시작한다.

- 호의 내용은 당해 호를 표시하는 아라비아 숫자 다음에 마침표를 찍고 마침표에서 1타를 띄우고 시작한다.
- 1개의 호의 내용이 길어서 2행이상이 되는 경우 2행이하의 첫글자는 좌측기준선에서 4타를 띄우고 시작한다.
- 목을 표시하는 “가, 나”등은 좌측기준선에서 4타를 띄우고 시작하고, 목의 내용은 당해 목을 표시하는 “가, 나” 다음에 마침표를 찍고 마침표에서 1타를 띄우고 시작한다.
- 1개의 목의 문장이 길어서 2행이상이 되는 경우 그 다음행 에서의 첫글자는 좌측기준선에서 6타를 띄우고 시작한다.

< 예 >

제3조(문서작성의 원칙)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는 다음 구분
에 따라 작성한다.

1. 법규문서는 조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
한다.

2. 지시문서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작성한다.

가. 훈 령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
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나. -라. (생략)

3. -10. (생략)

10. 일반문서는 제1호 내지 제9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서로서 시
행문형식등에 의하여 작성한다. 다만,

가. -나. (생략)

(7) 부칙에서 다른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의 개정문

- 「조문의 배자」에 준하여 배열하되 다음 <예>와 같이 작성한다.

< 예 >

부 칙

제1조-제7조 (생략)

제8조(부처간 사무조정 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⑥ (생략)

⑦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신청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써”를 “신청에 의하여 교통부장관과의합의를 거쳐 도시계획으로써”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통부장관은 주차장정비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주차장정비지구안의 주차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주차장정비계획”이라 한다)을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주차장정비지역 지정일부터 2년이내에 주차장정비계획을 입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⑧ 해외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하 생략)

(8) 기존 법률의 부칙에서 개정하는 경우의 개정문

< 예 >

『법률 제○○호----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항 중 “--” 을 “--” 으로 한다.

라. 참고사항 부분

(1)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과 개정안란으로 구분한다.
- 일부내용의 개정되는 조·항·호에서 “현행”란에는 전부를 기재하고, “개정안”란에는 개정되는 부분은 기재하며 개정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점선(...)으로 표시하고, 개정되는 부분(현행규정과 개정규정)에 밑줄을 친다.
- 조·항·호 등의 신설시에는 “개정안”란에 신설되는 조·항·호 등을 기재하고, 밑줄을 치며, “현행”란에는 “<신설>” 이라 기재하고 밑줄을 친다.
- 조·항·호 등의 개정이 없는 항·호 등은 현행란에 “(생략)”을 기재하고, 개정안란에는 “(현행과 같음)”으로 기재한다.
- 호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행란에 항의 본문 등을 기재하고, 개정안란에는 점선(...)으로 표시한다.
- 현행란 및 개정안란에 기재하는 조에는 조명과 조의 제목을 반드시 기재한다.
- 법령안의 전부분에 걸쳐서 종전의 용어를 새로운 용어로 정리적 차원에서 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어 변경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
 - (예) 농림부장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27조(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등) <u>① ~ ③ (생략)</u> <u><신설></u></p> <p>제132조(자료제출) <u>농림부장관은</u> <u>자체보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한</u> <u>종자사업자에게 당해 종자의 품</u> <u>질 확인에 필요한 자료 및 시료</u> <u>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u></p> <p>제137조(종자업의 등록과 종자매매 <u>업의 신고) ①·② (생략)</u> <u>③종자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u> <u>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u> <u>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u> <u>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u> <u>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p> <p><u>④제1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u> <u>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종자의 증</u> <u>식·생산·판매·보급·수출 또</u> <u>는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u> <u>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u> <u>아니한다.</u></p>	<p>제127조(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등) <u>① ~ ③ (현행과 같음)</u> <u>④ 종자관리사는 농림부령이 정</u> <u>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u> <u>게 등록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을</u> <u>수 있다.</u> <u><삭제></u></p> <p>제137조(종자업의 등록) ①·② <u>(현행과 같음)</u> <u><삭제></u></p> <p><u>④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u> <u>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u> <u>지사 또는 농업단체등이……</u> <u>……제1항</u> <u>및 제2항……</u> <u>……</u></p>

제5편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제5편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회의명	회의구분 (개최일시)	장 소	관련부처
국무회의	정례회의 (매주 화요일 08:00) 임시회의 (필요 시)	청와대 본관 세종실 (중앙청사 및 과천청사 국무회의실)	국무총리실 (의정과)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차관회의	정례회의 (매주 목요일 14:00) 임시회의 (필요 시)	정부중앙청사 국무회의실 (정부 중앙-과천청사 영상회의실)	"

※ 일시·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 국무회의

- 설치근거 : 헌법 제88조, 정부조직법 제12조, 국무회의규정(대통령령)
- 구성 : 국무위원 17명(의장:대통령) 및 배석자 13명
 - 위원 : 기획재정부·법무부·통일부·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
 - 간사 : 행정안전부 의정관
- 주요 심의 및 보고사항
 - 중요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안 심의
 - 국내외 중요정보 분석상황 등 수시보고 사항

□ 차관회의

- 설치근거 : 국무회의규정 제5조, 차관회의규정(대통령령)
- 구성 : 26명(의장:국무총리실장) 및 배석자 9명
 - 위원 : 기획재정부·법무부·통일부·농림수산식품부 차관 등
 - 간사 :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
- 주요 심의사항
 - 국무회의에 제출되는 의안,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 **국무(차관)회의 의안 및 보고안건 작성 및 상정절차 요령 : 「의정실 무편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참조**

제6편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령절차**

제6편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 절차

제1장 법령해석의 개요

1. 법령해석의 의의 및 성격

가. 법령해석의 의의

법제처 법령해석은 「정부조직법」과 「법제업무운영규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입법을 심사하고, 이를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법제처에서 당해 법령에 대한 해석의견을 제시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는 행정부 내에서 국법체계 전반에 걸친 법령해석에 관하여 정부견해의 통일을 기하고 일관성있는 행정운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행정각부 통할권에 기초하여 인정되고 있는 기능이다.

나. 법령해석의 성격

법령해석은 행정기관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전제로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의문이 있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관장업무와 관련된 법령에 있어서 해석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에 정부견해의 통일을 위하여 정부전체차원에서 법령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라 할 것이다.

다. 사법해석과의 관련성

법원에서 하는 해석은 구체적 쟁송의 해결을 목적으로 추상적인 법규범의 객관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는데 반하여 정부유권해석은 행정기관이 앞으로 법령을 집행하여 행정목적 달성하는데 있어 그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여 주는 기능을 포함하여 있어 당해 법령의 집행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즉 입법취지의 효율적 수행에 중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법령해석기관이 각 부처에 대하여 하는 법령해석은 각 부처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규정한 법령을 집행함에 있어서 집행의 방향 내지 지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령의 입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또는 입법취지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법령해석의 핵심적인 기준이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정부의 법령해석은 법령에 담긴 정책집행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입법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법 집행의 결과 발생한 구체적이고 특정한 법적 분쟁에 대하여 하는 사법적 해석과는 기능적으로 다르다고 할 것이다.

라. 법집행작용과의 관계

행정기관의 법집행작용을 살펴보면,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사실에 적용될 법령의 의미내용을 해석하여 당해 사실에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이러한 법집행작용은 각 법령에 의하여 각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것이나, 정부유권해석은 행정기관의 이러한 법집행을 위한 해석에 대하여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여 주는 기능을 한다.

2. 법령해석의 구속력

통상 구속력있는 유권해석이란 법원에 의한 사법해석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일반인의 질의에 대한 행정기관의 해석이나 행정기관의 질의에 대한 상급 행정기관의 해석으로서의 행정해석은 그와 다른 사법해석이 나올 경우 그 효력이 부인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제처에서 수행하는 정부유권해석도 관계 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나, 정부 견해의 통일과 행정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이에 위반할 경우 부적절한 집행으로 인한 징계나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한 책임문제가 언제든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행정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구속력은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제2장 법령해석 업무절차

1. 법령해석의 요청기관 및 요청방법

가. 중앙행정기관

부·처·청 또는 위원회 등 소관 법령을 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질의를 받는 등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법령에 대하여 해석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먼저 들은 후 그 의견을 첨부하여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해석이 필요한 경우 당해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1차적으로 법령해석을 요청한 후 그 해석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내용을 첨부하여 직접 법제처에 해석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민원인

민원인은 법제처가 법령해석기관이 되는 행정관계법령에 대하여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석요청을 한 후 그 해석내용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제처에의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당해 기관의 회신내용과 민원인이 제출한 법령질의 사항에 대하여 당해 기관의 추가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요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①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② 구체적 사실 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③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절차가 완료된 경우, ④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⑤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법령해석기관에의 해석요청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것인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당초 민원질의에 대한 회신기관 및 경유기관으로서 책임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 해석요청방법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해석기관에 해석요청을 하는 때에는 ① 질의의 요지, ②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당해법령의 조문 및 관련법령, ③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④ 법령해석요청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법제처에의 해석요청을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민원인이 ① 질의요지, ② 해석대상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③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 소관부서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장(팀장) 전결로도 가능하나, 반드시 법령해석 요청 전에 해당 국장께 보고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법제처에 해석요청되는 법령해석안건은 반드시 법제처 법령해석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부 안건의 심의시에는 우리부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기획조정실장이 업무 등의 이유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안건의 해당 국장이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과장이 대신 참석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발언만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국장이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부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민사·상사·형사(다른 법령의 별칙조항을 포함한다)·행정소송 및 국가배상관계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에 질의하되, 그 요령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와 같다.

2. 법령해석의 처리방법

가. 법령해석업무의 담당기관 및 안건 검토

법제처에 제출된 법령해석 요청안건에 관한 업무는 2급 단장을 중심으로 법령해석지원팀·행정법령해석팀 및 경제법령해석팀 등 3개팀 26명으로 구성된 법령해석관리단에서 담당한다.

법령해석관리단에서는 법령해석 사안에 대하여 소관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기존 해석례, 판례, 이론 등을 참고하여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단장주재의 사전검토회의에서 법령해석관리단의 내부의견을 수렴한 후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법령해석관리단에서 검토한 법령해석사안은 법제처에 설치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제처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된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법제처 차장), 4명의 지명위원 및 4명의 위촉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법령해석사안에 대한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당초 회신내용(법령해석이 불명확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해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법령집행기관의 의사를 번복하는 데에 보다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직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고, 법령해석을 요청한 기관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소속직원의 위원회 출석·발언을 요청하면 위원장은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여 법령집행기관의 의사가 해석과정에서 충분히 개진되도록 하고 있다.

다. 법령해석의 회신

법령해석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령해석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법령의 운영·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회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법령해석에 대한 회신을 하는 때에는 그 회신내용을 당해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하여 법령집행의 혼선이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이 요청을 의뢰한 법령해석사안에 대하여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안에 대한 당해 기관의 의견을 민원인에게 회신하도록 하였다.

제7편

기타 참고사항

제7편 기타 참고사항

1. 법제처 법제조정 제도

가. 개요

입법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처간 이견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법제업무조정법」을 전면 개정[「법제조정에 관한 규정」(법제처 훈령 제202호, '07. 5. 29. 발령)]함.

나. 주요 조정 절차

○ 조정권자

- 1차 : 소관 법제국장 주재 실무조정회의
- 2차 : 법제처 차장 주재 법제조정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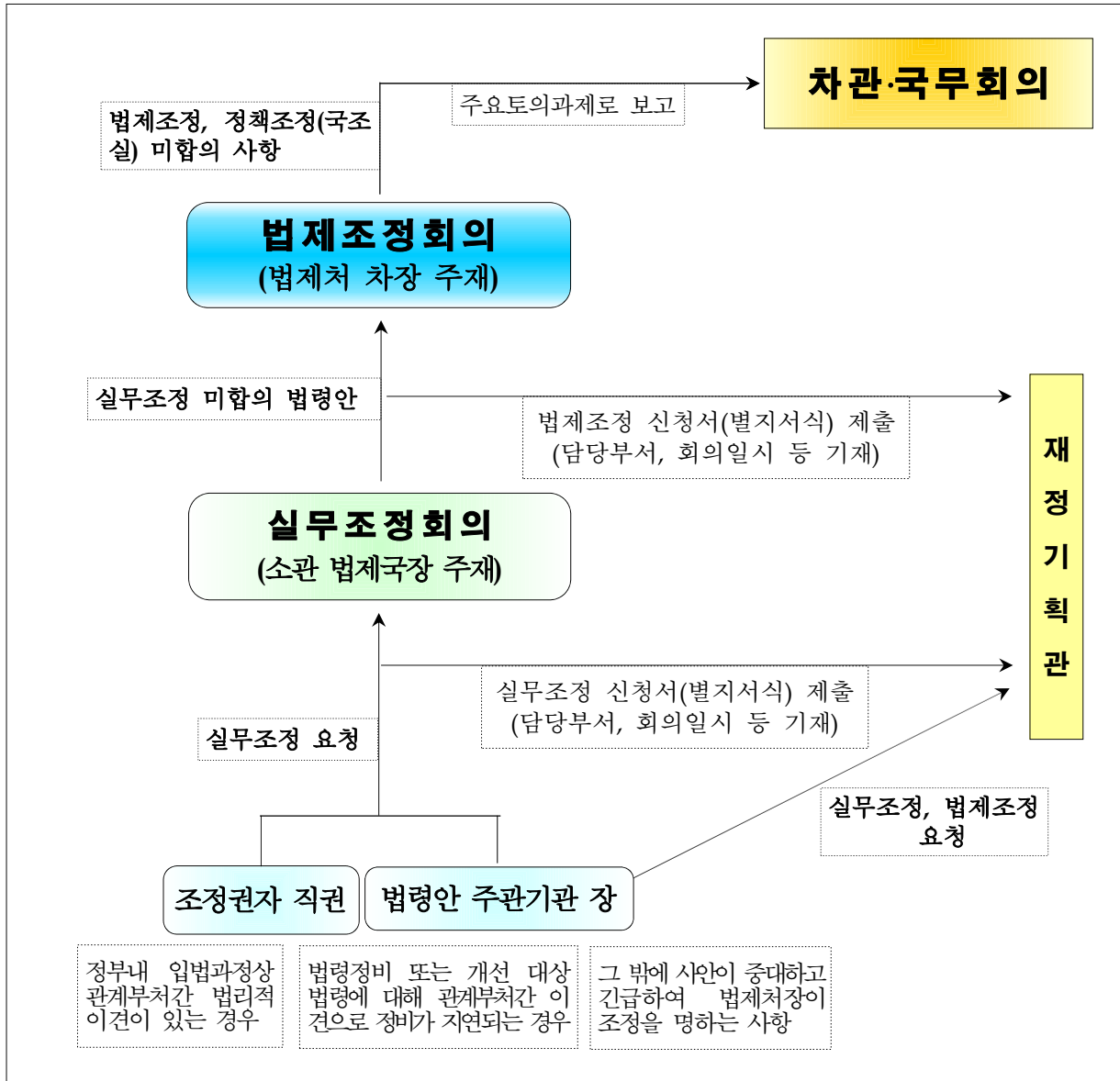
○ 법제조정 대상

- 정부내 입법과정에서 법령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법리적 견해 차이가 발생한 사항
- 법령정비 또는 개선 대상으로 채택되었으나 관계기관 사이의 견해 차이로 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
- 그 밖에 사안이 중대하고 긴급하여 법제처장이 조정을 명하는 사항

○ 조정개시

-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요청 또는 법제처장의 명에 의해 조정 절차 개시

〈법제조정 체계〉



2. 대통령령 등의 국회제출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때를 말한다)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 소관부서는 소관 대통령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때에는 10일 이내(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제정·개정 또는 폐지 내용을 국회(수신-농림해양수산위원회, 참조-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록 1

참 고 법 령

부 록 1 - 참 고 법 령

1. 행정절차법	113
2. 행정규제기본법	134
3. 법제업무운영규정	146
4.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164
5. 국무회의규정	173
6. 차관회의규정	178
7.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	181

1.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정의 및 적용범위 등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30>

1. "행정청"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한다.
2.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3. "행정지도"라 함은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4. "당사자등"이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5. "청문"이라 함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6. "공청회"라 함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7. "의견제출"이라 함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 당사

자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8.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9.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 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2.5>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
2.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3.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5.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와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6.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사항
7.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8. 심사청구·해양안전심판·조세심판·특허심판·행정심판 기타 불복절차에 의한 사항
9. 병역법에 의한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 또는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조정·중재·재정 기타 처분등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①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투명성)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절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제6조 (관할) ① 행정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안을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행정청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접수 또는 이송받은 후 관할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행정청이 그 관할을 결정하며,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각 상급행정청의 협의로 그 관할을 결정한다.

제7조 (행정청간의 협조)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행정응원) ① 행정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1. 법령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인원·장비의 부족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4. 다른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통계등 행정자료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 다른 행정청이 보다 능률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행정응원으로 인하여 고유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지장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③행정응원은 당해 직무를 직접 응원할 수 있는 행정청에 요청하여야 한다.
- ④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이 응원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응원요청한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⑤행정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당해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 ⑥행정응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며, 그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과 응원을 행하는 행정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절 당사자등

제9조 (당사자등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절차에 있어서 당사자등이 될 수 있다.

1. 자연인
2.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하 "법인등"이라 한다)
3. 기타 다른 법령등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제10조 (지위의 승계) ①당사자등이 사망하였을 때의 상속인과 다른 법령등에 의하여 당사자등의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는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②당사자등인 법인등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등이나 합병후 새로 설립된 법인등이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 또는 합병전의 법인등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한 통지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11조 (대표자) ①다수의 당사자등이 공동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행정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가 지나치게 많아 행정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들어 상당한 기간내에 3인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등이 대표자의 선정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청이 직접 선정할 수 있다.

③당사자등은 대표자를 변경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④대표자는 각자 그를 대표자로 선정한 당사자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행정절차를 끝맺는 행위에 있어서는 당사자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⑥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이 있다. 다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행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제12조 (대리인) ①당사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등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등이 법인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행정청 또는 청문주재자(청문의 경우에 한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 법령등에 의하여 당해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②제11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대리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대표자·대리인의 통지) 당사자등이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정하거나 선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절 송달 및 기간·기한의 특례

제14조 (송달<개정 2002.12.30>) ①송달은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피용자(피용자)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③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⑤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⑥삭제 <2002.12.30>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30>

③제14조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발생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제16조 (기간 및 기한의 특례) ①천재지변 기타 당사자들의 책임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②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소요되는 일수를 감안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2장 처분

제1절 통칙

제17조 (처분의 신청) ①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신청함에 있어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30>

③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접수기관·처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비치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④행정청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⑤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행정청은 신청인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⑦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에 접수할 수 있는 신청의

종류를 미리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⑧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당해 신청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 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행정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당해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처리기간의 설정공표) ①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행정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행정청이 정당한 처리기간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은 당해 행정청 또는 그 감독행정청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①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당해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당사자들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①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은 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제1항제6호에 의한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2조 (의견청취) ①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외에는 당사자들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 ⑤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친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당해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행정청은 처분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 기타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 (처분의 이유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경우
-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4조 (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행정청 및 담당자의 소속·성명과 연락처(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제25조 (처분의 정정)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체없이 정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7.5.17>

제2절 의견제출 및 청문

제27조 (의견제출) ①당사자들은 처분전에 그 처분의 관할행정청에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당사자들은 제1항에 의하여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③행정청은 당사자들이 구술로 의견제출을 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당사자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삭제 <2002.12.30>

제27조의2 (제출의견의 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30]

제28조 (청문주재자) ①청문은 행정청이 소속직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선정하는 자가 주재하되, 행정청은 청문주재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청문주재자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수행상의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중에서 선정된 청문주재자는 형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제29조 (청문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 ①청문주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다. <개정 2002.12.30>

1. 자신이 당사자등이거나 당사자등과 민법 제77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자신이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자신이 당해 처분의 당사자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자신이 당해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하였던 경우

②청문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등은 행정청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청은 청문을 정지하고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청문주재자를 지체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③청문주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청문의 주재를 회피할 수 있다.

제30조 (청문의 공개) 청문은 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거나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 (청문의 진행) ①청문주재자가 청문을 시작할 때에는 먼저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등은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③당사자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

④청문주재자는 청문의 신속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청문을 계속할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사자등에게 다음 청문의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자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청문에 출석한 당사자등에게는 당해 청문일에 청문주재자가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제32조 (청문의 병합분리) 행정청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 (증거조사) ①청문주재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②증거조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1. 문서·장부·물건등 증거자료의 수집
2. 참고인·감정인등에 대한 질문
3. 검증 또는 감정·평가
4. 기타 필요한 조사

③청문주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청에 대하여 필요한 문서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청은 직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4조 (청문조서) ①청문주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청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1. 제목
2. 청문주재자의 소속·성명등 인적사항
3. 당사자등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및 출석여부
4. 청문의 일시 및 장소
5. 당사자등의 진술의 요지 및 제출된 증거
6. 청문의 공개여부 및 공개 또는 제3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한 이유
7.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요지 및 첨부된 증거
8. 삭제 <2002.12.30>
9. 기타 필요한 사항

②당사자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의2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청문주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청문의 제목

2. 처분의 내용·주요 사실 또는 증거
3. 종합의견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02.12.30]

제35조 (청문의 종결) ①청문주재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의견진술·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②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③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들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당해 기간이 경과한 때에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④청문주재자는 청문을 마친 때에는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행정청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⑤삭제 <2002.12.30>

제35조의2 (청문결과에의 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30]

제36조 (청문의 재개) 행정청은 청문을 마친 후 처분을 하기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청문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청문조서등을 되돌려 보내고 청문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 (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①당사자들은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대하여 당해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행정청은 제1항의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에 응하는 경우 그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③행정청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문서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행정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사에 따른 비용을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누구든지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생활 또는 경영상이나 거래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공청회

제38조 (공청회 개최의 알림)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 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07.5.17]

제38조의2 (전자공청회) ①행정청은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이하 "전자공청회"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행정청은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③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 ④그 밖에 전자공청회의 실시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5.17]

제38조의3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①공청회의 주재자는 당해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행정청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자 중에서 행정청이 선정한다. 다만, 발표 신청자가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당사자등
2. 당해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당해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③행정청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거나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5.17]

제39조 (공청회의 진행) ①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중지, 퇴장명령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③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 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 대하여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07.5.17]

제39조의2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의 반영 <개정 2007.5.17>)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공청회·전자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본조신설 2002.12.30]

제3장 신고

제40조 (신고) ①법령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기관 기타 법령등에 의한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비치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3. 기타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③행정청은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행정청은 신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해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제4장 행정상 입법예고

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 ①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1.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삭제 <2002.12.30>

③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④입법예고의 기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예고방법) ①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4>

③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7.5.17>

④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7.5.17>

⑤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2007.5.17>

⑥행정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복사에 따른 비용을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6.3.24, 2007.5.17>

제43조 (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이상으로 한다.

제44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행정청은 의견접수기관·의견제출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행정청은 당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출된 의견의 처리방법 및 결과통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 (공청회) ①행정청은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공청회에 관하여는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0, 2007.5.17>

제5장 행정예고

제46조 (행정예고) ①행정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4. 기타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행정예고기간은 예고내용의 성격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이상으로 한다.

제47조 (준용) 행정예고의 방법, 의견제출 및 처리,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에 관하여는 제42조(제4항을 제외한다), 제44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5.17>

제6장 행정지도

제48조 (행정지도의 원칙) ①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9조 (행정지도의 방식) ①행정지도를 행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당해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신분을 밝혀야 한다.

②행정지도가 구술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행정지도를 행하는 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0조 (의견제출)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당해 행정지도의 방식·내용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제51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52조 (비용의 부담)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등이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지출한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지급) ①행정청은 행정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참고인·감정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와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급기준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 (협조요청등) 행정안전부장관(제4장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은 이 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상황과 실태를 확인할 수 있고, 관계행정청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8.2.29>

부칙 <제5241호,1996.12.3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진행중인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6839호,2002.12.30>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중인 행정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904호,2006.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51호,2007.5.17>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행정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8521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9>까지 생략
<240>행정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5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41>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29>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 "법령등"이라 함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등을 말한다.
3. "기존규제"라 함은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된 규제와 이 법 시행후 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규정된 규제를 말한다.
4. "행정기관"이라 함은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동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규제영향분석"이라 함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등에 미치는 제반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제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05.12.29>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2.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3. 「국가정보원법」에 의한 정보·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통합방위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③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규제법정주의) ①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제5조 (규제의 원칙)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규제를 실효성 있게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③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제6조 (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등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규제사무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매년 6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③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당해 규제를 폐지하는 법령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의 등록·공표의 방법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제7조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 및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5.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여부
6.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7.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여부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9>

제8조 (규제의 존속기한 명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에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당해 법령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규제의 존속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이 도래하기 6월 전까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④위원회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이 도래하기 3월 전까지 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제9조 (의견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민간단체·이해관계인·연구기관·전문가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요청)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안에 대하여는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

-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의견
-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해관계인등의 제출의견 요지
-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심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법령에 대한 규제정비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12.29>

제11조 (예비심사) ①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당해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사) ①위원회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에 대하여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0조제2항 각호의 첨부서류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29>

④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긴급한 규제의 신설·강화 심사)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제8조제3항·제9조 및 제10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때에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때에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개선권고) ①위원회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재심사)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4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조 (심사절차의 준수)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포함하는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당해 규제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제17조 (의견제출) ①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기존규제의 심사)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 위원회로부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이송받은 경우
3. 기타 위원회가 이해관계인·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9조 (기존규제의 자체정비)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위원회는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를 선정하여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비지침에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지침에 따라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정비계획을 종합하여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 후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④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공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시행)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공표된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에 의하여 소관 기존 규제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정비의 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하여는 그 기한내에 정비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정비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당해 기존규제의 정비계획을 제출하고, 정비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조직정비등) ①위원회는 기존규제가 정비된 경우 정부의 조직 및 예산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의 정비에 따른 정부의 조직 또는 예산의 합리화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제23조 (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제2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 (구성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12.29>

②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⑤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8조 (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12.29>

②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12.29>

제29조 (전문위원등)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필요한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

제30조 (조사 및 의견청취등) ①위원회는 제24조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등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실지조사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1조 (위원회의 사무처리등)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무기구를 둔다.

②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5.12.29>

제33조 (조직 및 운영) 이 법에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조직·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4조 (규제개선 점검·평가) ①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의 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 결과를 평가하여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 및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 및 평가 결과 규제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에게 이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35조 (규제개혁백서) 위원회는 매년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36조 (행정지원등) 국무조정실장은 규제관련제도를 연구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2005.12.29>

제37조 (공무원의 책임등) ①공무원이 규제개선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당해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인사상 우대조치등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5368호,19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법률 제4735호 행정규제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법 시행당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대한 특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후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갈음하여 이 법 시행당시 모든 소관 규제에 대한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정비계획 및 그 시행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훈령·고시등의 재검토)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 시행당시 시행중인 훈령·레규·지침·고시등에 규정된 규제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근거하였는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토 결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근거하지 아니한 훈령·레규·지침·고시등에 규정된 이를 지체없이 폐지하거나 관계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그 근거를 정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다른 법령의 규정"을 "다른 법령(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다)

의 규정"으로 한다.

제42조중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미리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2조제3호중 "제정 또는 개정"을 "개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행정규제"를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사·심사사항중 행정규제에 관한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미리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규제개혁위원회는 당해 사항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지체없이 관련자료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부칙 <제7797호,2005.12.29>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52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49>까지 생략

<750>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751>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3. 법제업무운영규정

[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39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등 정부입법활동과 기타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국가정책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법령"이라 함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제3조 (입법활동의 기준) 모든 입법활동은 헌법과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입법에 관련된 정부기관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 (입법계획의 총괄·조정) 법제처장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령안의 입법계획을 총괄·조정한다.

제5조 (부처입법계획의 수립) ①법제처장은 매년 각 중앙행정기관이 당해 연도에 추진할 법령안 입법계획의 작성방법·제출시기 기타 협조사항등을 마련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9>

②법령안의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내용에 따라 당해연도 주요업무계획등의 추진에 필요한 법령안의 연간 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부처입법계획의 내용) ①제5조제2항의 입법계획에는 법령안별로 입법의 필요성, 내용요지, 추진일정,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의 필요성에는 종전의 제도운영실태, 입법 추진배경,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와 관련단체등의 입법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일정에는 입안시기,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 입법예고 및 공청회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 법제처 제출시기, 국회 제출시기와 시행예정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 (부처입법계획의 수립시 유의사항) ①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기간을 두도록 하고 법제처 및 국회의 충분한 법령안 심의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률안의 국회제출은 연중 고루 안배되도록 하고, 「국회법」 제93조의2제2항 본문 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정기국회에서, 그밖의 법률안의 경우에는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9, 2005.6.13>

제8조 (정부입법계획의 수립등) ①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입법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은 그 소속 부처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4.1.9>

②법제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종합하여 당해연도에 정부에서 추진할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되, 정부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입법계획중 입법추진일정, 중복·상충되는 사항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법제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4.1.9>

제9조 (정부입법계획의 시행·수정) ①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정부입법계획에 따라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법제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의 입법추진을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정부입법계획상 임시국회 제출예정 법률안을 정기국회 제출예정 법률안으로 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법제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정요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하고 그 결과를 당해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내용중 법률안의 국회제출시기를 정기국회로 변경하거나 추가되는 법률안의 국회제출시기를 정기국회로 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법률안의 입법추진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9>

제10조 (정부입법추진상황의 국무회의 보고등) ①법제처장은 정부입법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한 때에는 수정된 정부입법계획의 내용 또는 정부입법추진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②법제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된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4.1.9>

제10조의2 (중·장기 입법계획) 법제처장은 국가정책의 중·장기 예측가능성의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중·장기 입법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9]

제3장 입법과정에서의 협조

제11조 (입법과정에서의 기관간 협조) ①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안의 입안초기단계부터 관계기관의 장(법령에 의한 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법령안을 입안한 때에는 당해 법령안의 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을 입안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법령안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재정소요비용에 관한 추계서를 작성하여 이를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10.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령안에 대한 의견회신기간은 10일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견회신기간을 10일미만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의견회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은 법령안의 입안과 심사 및 공포 등 입법과정 전반에 걸쳐 정부입법에 관한 협의·의견조정 기타 정부기관간에 효율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법률안 국회심의과정의 협조등) ①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은 법률안의 국회심의시 그 심의과정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상호협조하여 정부의 입법정책이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국회에서 심의중인 법률안의 충분한 검토와 효율적인 입법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자료를 제공하는 등 법률안의 국회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이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수정·변경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4.1.9>

제13조 (정부이송 법률안의 통보 등) 법제처장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관계 부처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고,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장 국민의 입법 의견 수렴

제14조 (법령안 입법예고) ①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에 관하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며,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은 그 소속 부처의 장의 승인을 얻어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법령안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4.1.9]

제15조 (예고방법) ①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관보 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9>

②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당해법령안의 내용에 관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및 도를 말한다)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기타의 자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5.6.13>

③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법령안의 주요내용,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4.1.9>

④법제처장은 법령안의 내용이 국가의 중요정책사항이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에게 이를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터넷, 일간신문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04.1.9>

제16조 삭제 <2004.1.9>

제17조 (법령안의 복사비용) 「행정절차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령안 복사에 따른 비용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7.29, 2005.6.13>

제18조 (제출의견의 처리) ①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법령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등을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입법예고제도 운영의 확인·점검 등) ①법제처장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입법예고제도의 운영실적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법제처장은 법령안 심사시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법령안에 반영하지 아니한 의견중 법리적인 사항, 입법체계적인 사항으로서 입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이를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1.9]

제20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①제18조제1항의 규정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1.9>

②제1항에 규정한 것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제5장 법령안등의 심사

제21조 (법령안등의 심사요청) ① 각부장관 및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입법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장에게 그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제11조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

2.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른 입법예고

3.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조약안에 관하여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당해조약안의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③법제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령안 또는 조약안이 심사요청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9>

1.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 입법예고절차 또는 규제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법령안 또는 조약안

2.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법령안

3.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거나 법리적으로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령안 또는 조약안

4. 정부정책의 변경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심사요청된 법령안의 내용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령안

5. 그 밖에 입법추진일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법령안 또는 조약안

④ 각부장관 및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법제처장이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⑤ 삭제 <2004.1.9>

제22조 (하위법령의 제때 마련)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총리령 또는 부령(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의 제정·개정·폐지가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후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하위법령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을 입안할 때에는 부처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공포절차 등의 입법절차를 고려하여 해당 법률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위법령안을 입안하여야 한다.

③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제정·개정·폐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법률의 시행일 45일 전까지 법제처장에게 해당 하위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법제처장은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하위법령의 마련 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3조 (대통령훈령안등의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훈령 또는 국무총리훈령의 발령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처장에게 당해훈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훈령안 또는 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훈령안이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훈령의 발령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게재를 의뢰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통보한 심사결과공문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8.12.31>

제6장 법제의 정비·개선 등 <개정 2007.2.2>

제24조 (법제정비의 추진 <개정 2007.2.2>) ① 법제처장은 현행 법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검토·정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오랜 기간동안 법령의 주요 부분이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해당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영업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내외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중요한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의 검토·정비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현행법령에 대한 검토·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제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령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령정비의 대상·기준·절차·방법 그 밖의 협조사항 등을 마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상법령을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관법령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법제처장에게 통보하고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④법제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령정비를 위하여 일반 국민,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법령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법제처장은 법령등의 정비·개선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계·민간단체, 그 밖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07.2.2, 2008.10.20>

[전문개정 2004.1.9]

제25조 (훈령·예규등의 적법성 확보) ①각급 행정기관의 훈령·예규·고시(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령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규칙·지시·지침·통첩 등을 포함하며, 이하 "훈령·예규등"이라 한다)는 그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적합하게 발령·유지·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07.2.2>

②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에 준하는 위원회 등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훈령·예규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해당 훈령·예규등을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부입법 관련 전산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전산시스템에 등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당해 훈령·예규등의 제명과 비공개사유를 통보하되, 법제처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훈령·예규등을 문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

③법제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재된 훈령·예규등을 수시로 심사·검토하고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훈령·예규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한 훈령·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견을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견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관련 법령 또는 당해 훈령·예규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

⑤제3항에 따라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련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훈령·예규등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 등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

1. 심사의견을 반영한 경우에는 그 내용
2. 정비할 계획인 경우에는 그 정비계획
3. 심사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⑥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훈령·예규등의 적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훈령·예규등을 발령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4.1.9, 2007.2.2>

제7장 법령해석

제26조 (법령해석의 요청) ①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질의를 받는 등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운영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관계법령 및 법무부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별칭조항에 대한 해석인 경우에는 법무부를, 그 밖의 모든 행정관계법령의 해석인 경우에는 법제처를 말한다. 이하 "법령해석기관"이라 한다)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법령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석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려면 그 법

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그 회신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회신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회신 내용을 첨부하여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받고도 1개월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연사유를 통보함으로써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에 회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내용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⑥민원인은 법제처가 법령해석기관이 되는 법령에 대하여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⑦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으면 민원인에게 회신한 내용(민원인의 법령질의 사항을 포함한다)에 추가할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1.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2.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절차가 완료된 경우
 4.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서 명백히 법령해석기관에 대한 해석요청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문개정 2005.6.13]

제27조 (법령해석시 유의사항) ①법령해석기관은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법령해석에 관한 정부견해의 통일을 기하고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법령해석을 하여야 한다.

1. 당해 법령의 입법배경·취지 및 운영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것
2. 문제가 제기된 구체적 배경과 이유를 조사·확인할 것
3.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

②법령해석기관중 법제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해석을 하는 때에는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법령해석기관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해석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법령의 운영·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회신하여야 하며, 법령해석 결과를 회신할 때에는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④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6조제7항에 따라 민원인이 요청을 의뢰한 법령해석사안에 대하여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안에 대한 당해 기관의 의견을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전문개정 2005.6.13]

제27조의2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법령해석기관중 법제처에 요청된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제처장소속하에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 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 "지명위원"이라 한다) 및 제5항에 따른 50명 내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2.31>

③위원장은 법제처 차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지명위원은 국무총리실을 포함하는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⑤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6.12>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법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있었던 자
 4.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6.13]

제27조의3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9인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직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6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법령해석사안에 대한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당초 회신내용(법령해석이 불명확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해석을 하려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12.31>
- ⑥ 위원회는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5.6.13]

제27조의4 (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의 대

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31]

[중전 제27조의4는 제27조의5로 이동 <2008.12.31>]

제27조의5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법제처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법제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국가
기관·지방자치단체·관련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6.13]

[제27조의4에서 이동, 중전 제27조의5는 제27조의6으로 이동<2008.12.31>]

제27조의6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5.6.13]

[제27조의5에서 이동, 중전 제27조의6은 제27조의7로 이동 <2008.12.31>]

제27조의7 (운영세칙)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6.13]

[제27조의6에서 이동 <2008.12.31>]

제8장 법령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지원

제28조 (법제업무의 전문성 확보 <개정 2004.1.9>)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령의 입법·집행등 법령운영에 있어서의 적법·타당성을 확보하고 법
제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제업무담

당 조직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소속 법무담당 공무원의 보직기준등 필요한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9>

제29조 (법제업무 지원) ①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법령의 운영에 필요한 법제정보를 제공하거나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입법을 추진하려는 법령안의 사전 검토 및 자문에 응하는 등 필요한 법제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법제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법제교육 등 필요한 법제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법제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제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법제교육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0조 (법제업무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활용 등) ① 법제처장은 정부의 효율적인 입법추진과 법령정보의 종합관리 등을 위하여 법제업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정보시스템 및 법령정보가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부칙 <제15602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92호,1999.10.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법제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각 부·처의 요청에 의한 법령해석"을 "법제업무운영 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해석"으로 한다.

부칙 <제18218호,2004.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493호,2004.7.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법제업무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⑤생략

부칙 <제18864호,2005.6.13>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법령해석에 대한 회신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8>생략

<99>법제업무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4항중 "중앙행정기관 소속 1급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3호중 "공무원"을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100>내지 <241>생략

부칙 <제19867호,2007.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21239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위법령의 제때 마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하는 법률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령집편찬및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제처직제 제2조제11호 및 제7조제5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제처 직제」 제2조제13호 및 제10조제3항제12호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②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체육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4.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5.2 총리령 제88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령입안시 유의사항) 법령안의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령의 입안시 법령안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가. 새로운 입법조치를 요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검토를 기초로 할 것

나. 입법내용이 그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 국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제적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질 것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헌법이념을 구체화하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지위존중과 공공복리의 요청이 조화를 이루고,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국민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회질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것

나. 헌법과 상위법에 모순·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하위법령과 관련하여 위임근거를 명확히 할 것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법령과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법령상호간에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나. 입법내용이 당해법령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일 것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표현할 것

나. 적용대상이 되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할 것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 (입법계획의 수립·시행)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추진에 관한 충분한 검토와 사전준비를 통하여 당해입법이 법제업무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정기국회처리예정 법률안의 제출) ①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법률안을 9월 15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입법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한 후에 정기국회처리예정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법률안의 내용을 미리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법령안 재정소요추계제도의 운영

제5조 (재정소요추계서의 작성) ①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법령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입안하는 때에는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안 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부담이 연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성 경비로서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2.13>

1.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지출증가
2. 기금관리기본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증가

②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안을 입안하는 경우. 다만, 법률에서의 재정소요추계 규모보다 재정부담이 현저히 증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안에 재정소요추계의 내역을 첨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 법령안의 성격상 재정소요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 ③재정소요추계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안명 및 관련조문
 2. 재정소요추계의 내역
 - 가. 추계의 전제
 - 나. 추계의 결과
 - 다. 재원조달의 방법
 3. 작성자
 4. 기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6조 (재정소요추계의 방법 및 기간)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소요추계는 재정의 직접적인 부담에 한정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 및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소요추계는 법령안의 내용중 재정부담증가 사항에 대하여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재정부담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재정부담의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소요추계의 대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직접적인 재정부담이 연간 50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대상기간을 10년으로 한다.

④재정소요추계서에는 연도별 재정부담의 규모를 표시하되, 추계의 성질상 연도별 재정부담의 규모를 산정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표시할 수 있다.

제7조 (재원조달의 방법표시) ①재정소요추계서에는 추계된 재정부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의 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조달의 방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부문 또는 해외부문등 부문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부처와의 협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재정소요추계서 작성 대상 법령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에는 법령안에 재정소요추계서를 첨부하여 협의요청하여야 한다.

제3장의2 입법과정에서의 협조 <신설 2004.2.13>

제8조의2 (국회심의과정의 대책 마련) 영 제12조제3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헌법 위반 또는 법령 상호간의 체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2. 정부의 중요 정책사항과 서로 배치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3. 부처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당초 법률안에서 제외된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4.2.13]

제4장 국민의 입법의견수렴

제9조 (입법예고의 예외사유)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에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 함은 일상적인 행정운영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돌발사태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발생으로 긴급한 입법적 대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4.2.13]

제10조 (제출의견의 반영)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된 법령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중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5장 법령안등의 심사

제11조 (법령안의 심사) ①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2.13>

1. 정부입법계획과의 합치여부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과의 협의결과공문 사본 1부
3.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중 중요한 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에 관한 사항
4. 재정소요추계서(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령안을 심사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법령안에 대한 규제심사 여부와 규제의 신설·강화 및 폐지 건수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와 관련된 사항
6. 조문별 법령 제·개정이유서
7. 그 밖에 법령안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법령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 ②법제처장은 법령안을 심사하는 때에는 당해법령안이 입법내용 및 형식에 있어서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 있어서는 공정성·객관성·논리성 및 신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법제처장은 법률안을 심사하는 때에는 당해법률안이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후 3월이상의 시행유예기간을 두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④법제처장은 법령안 심사시 필요한 경우에는 하위법령과 관련법령의 개요를 미리 제출받아 일괄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하위법령의 동시검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국가정책을 적기에 실현하고 법령단계별로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률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안·총리령안 및 부령안 등 하위법령안이 가능한 당해법률안의 입안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하위법령안의 사전준비)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공포와 동시 또는 공포후 1월이내에 시행되어야 할 법률의 하위법령에 대하여는 당해 법률안의 국회심의기간중에 필요한 입법준비절차를 완료하는 등 하위법령이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국무회의 등 상정을 위한 조치) ①법제처장은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의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안을 작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안에는 법제처의 심사를 마쳤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2.13]

제6장 법제의 정비·개선 등 <개정 2007.2.2>

제14조 (정부입법 자문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24조제6항에 따라 법제처장 소속으로 정부입법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된다.

1. 위원장 : 위원 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하는 자
2. 부위원장 : 위원 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하는 자 1명과 법제처 차장
3. 위원 : 정부입법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하는 자

④위원(법제처 차장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제처장이 법제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⑥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제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5.2]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제처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정부 입법정책 방향의 설정과 법제화에 관한 사항
2. 법제정비의 방향 및 정비기준에 관한 사항
3.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및 영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정부입법 및 의원발의 법률안의 법리상 쟁점에 대한 부처간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요 법제 현안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5.2]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법제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부위원장 등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5.2]

제17조 (법제정비실무협의회 및 실무작업반의 설치) ①법제처장은 효율적인 법제정비를 위하여 행정기관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 관계공무원 및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법제정비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정비를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분석, 정비대상법령의 정비안 마련과 법제정비실무협의회와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본부·실·국의 주무과 또는 팀의 장 및 법무·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과 또는 팀의 장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2.2]

제18조 (법령정비의 추진절차) ①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정비의 추진에 관한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법령을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법령에 대한 정비계획을, 타부처 소관법령중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타부처 소관법령중 정비희망법령을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

②법제처장은 자체적으로 법령정비대상을 조사·발굴하고 당해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정비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법령정비계획과 자체적으로 발굴한 법령정비안 및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국민으로부터 제출받은 입법의견을 취합하여 전체 법령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4.2.13, 2007.2.2>

④ 삭제 <2007.2.2>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기별 법령정비실적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2.13>

제19조 (훈령·예규등의 심사대상 위원회) 영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관 훈령·예규 등에 대하여 법제처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
2. 「한국은행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
3.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게임물등급위원회
[전문개정 2007.2.2]

제20조 삭제 <2007.2.2>

제7장 법령해석

제21조 삭제 <2005.7.1>

제22조 (법령해석의 요청방법)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제처에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하는 때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질의의 요지
 2.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당해법령의 조문 및 관련법령
 3.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4. 법령해석요청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 및 이유
- [전문개정 2005.7.1]

제8장 법령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지원

제23조 (법무담당공무원의 인사관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담당공무원의 인사관리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법무담당공무원에 보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 (법제업무지원) ①법제처장은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제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법제처장은 자치법규의 법적합성 확보를 위하여 자치입법에 필요한 법률교육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703호,1999.11.30>

-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재정소요추계서에 관한 적용례) 재정소요추계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법령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48호,2004.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2호,2005.7.1>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5호,200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2호,2008.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국무회의의 규정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9.18>

제2조 (회의운영) ①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정책이 전정부적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②국무회의는 정례국무회의와 임시국무회의로 구분하되, 정례국무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개정 1994.2.19, 1995.2.8>

③삭제 <2003.4.17>[전문개정 1982.9.18]

제3조 (의안제출) ①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은 헌법 제89조 및 법령에 규정된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개정 1990.9.10>

②중요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안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그 정책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거나 그 정책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의안을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무회의에서 중점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당해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차관회의의 개최일 3일전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공포안, 헌법 제89조제16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의안과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9.10, 1998.3.16, 2008.2.29>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안을 국무회의의 개최일 2일전까지 의사일정과 함께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석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국무회의에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3.16, 2008.2.29>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중요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이를 국무회의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중요정보 분석상황
2. 정부의 역점사업 추진현황
3.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시책의 추진현황
4.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행하여야 할 중요사항
5. 부처간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
6.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지시사항[전문개정 1982.9.18]

제4조 (합의) 국무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의안은 사전에 관계 부·처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개정 1998.3.16>

제5조 (의안의 심의) ①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은 먼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무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차관회의로 하여금 특정사항을 지시하여 심의·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등)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국무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0.6.27>

제7조 (대리출석) ①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각 부의 차관(특임장관실의 차관을 포함한다)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개정 1998.3.16, 1999.5.24, 2006.6.5, 2008.2.29>
 ② 대리 출석한 차관은 관계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8조 (배석 등) 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실장·국무총리실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위원회위원장 및 서울특별시장의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직위에 있

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1990.9.10, 2003.4.17>

제9조 (보충설명) 의안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2.9.18, 1998.3.16, 2006.6.12>

제10조 (간사) ①국무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된다. <개정 1992.12.12, 1998.3.16, 1999.5.24, 2004.6.11, 2005.3.24, 2008.2.29>

제11조 (국무회의록) ①간사는 국무회의록을 작성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국무회의록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석자에게 송부한다.<개정 1998.3.16>

부칙 <제4321호,1969.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중 략 -

부칙 <제14524호,1995.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차관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매주 목요일에 정례적으로 소집하고"를 "매주 1회 소집하고"로 한다.

부칙 <제15741호,1998.3.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63호,2000.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65호,2003.4.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99호,2006.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46> 생략

<47> 국무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48> 내지 <241>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국무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본문 및 제1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제5항 본문 및 제11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그 부·처의 차관(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혁신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을 "각 부의 차관(특임장관실의 차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실장·국무총리실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공정

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위원회위원장 및 서울특별시장의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32> 부터 <105> 까지 생략

6. 차관회의의 규정

[일부개정 2008.5.14 대통령령 제20781호]

제1조 (설치 및 기능) ①행정 각 부·처·청간의 협조를 긴밀하게 하며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차관회의를 둔다. <개정 1998.3.16>

②차관회의는 국무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건의할 수 있다.

제2조 (구성) 차관회의는 국무총리실장과 각 부의 차관(특임장관실의 차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2인의 차관을 둔 부의 경우에는 그 중 1인이 구성원이 된다. <개정 1982.9.18, 1994.12.23, 1998.3.16, 1999.5.24, 2005.8.5, 2008.2.29>[전문개정 1972.6.8]

제3조 (의장) ①차관회의에 의장 1인을 둔다.

②의장은 국무총리실장이 된다. <개정 1994.12.23, 1998.3.16, 2008.2.29>

③의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차관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개정 1982.9.18>

④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조직법」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르는 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82.9.18, 1994.2.19, 1994.12.23, 1998.3.16, 2005.8.5, 2008.2.29>

제4조 (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차관회의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중요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8.3.16>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차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1972.6.8>

③법제처 차장은 법령안 및 조약안이 상정되는 차관회의에 배석한다. <신설 1998.3.16>

제5조 (회의 소집) 차관회의는 정례차관회의와 임시차관회의로 구분하되, 정례차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차관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 그때 소집한다. <개정 1982.9.18, 1994.2.19, 1995.2.8>

제6조 (의안의 처리) ①차관회의에서 중점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차관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은 그 의결 결과를 첨부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고부결된 의안은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결 이유를 명시한심의의견을 의안에 첨부할 경우에는 이를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1982.9.18]

제7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등) ①차관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차관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차관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0.6.27>

제8조 (대리출석) ①차관이 차관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직위에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한다.
②대리하여 출석한 자는 관계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전문개정 1972.6.8]

제9조 (의안배부) 행정안전부는 차관회의의 개최일 2일전까지 의안을 의사 일정과 함께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석자에게 배부한다.다만, 임시차관회의에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2.9.18, 1998.3.16, 2008.2.29>

제10조 (보충설명) 의안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부·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3.16, 2006.6.12>

제11조 (간사) ①차관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실 의정담당관이 된다. <개정 1992.12.12, 1998.3.16, 1998.8.31, 1999.5.24, 2004.6.11, 2005.3.24, 2008.2.29, 2008.5.14>

제12조 (회의록) ①간사는 차관회의록을 작성한다.

②행정안전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차관회의록을 제2조의 규정에 의한구성원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석자에게 송부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81호, 2008.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의정팀장"을 "의정담당관"으로 한다.

7.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8.7.10 국무총리훈령 제516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부입법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부처간 및 정부·국회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법률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하여 국회심의 과정에서 주요내용이 수정된 법률안(이하 "적용대상법률안"이라 한다)의 심의·의결 및 공포 등 입법절차의 모든 과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의원발의법률안의 통보 등) ①법제처장은 의원발의법률안이 제안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법률안 소관부처(이하 "소관부처"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소관부처의 장은 당해 법률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소관부처의 장은 정부제출 법률안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법리적 쟁점 소지, 다른 법률과의 충돌, 조세의 감면, 재정지출의 증가, 조직의 신설·폐지·변경, 인원의 소요, 규제 신설·강화, 정부정책의 변경 등 그 주요내용의 수정에 관한 논의가 있거나 수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예상되는 쟁점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0>

제4조 (적용대상법률안의 검토 및 의견통보) ①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용대상법률안을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을 소관부처의 장 및 국무총리실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8.7.10>

1. 법리적 쟁점의 유무 여부
2.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
3. 조세의 감면 여부
4. 재정지출의 증가 여부
5. 정부조직의 신설·폐지·변경 및 인원의 소요 여부

6. 규제의 신설·강화 여부

7. 입법정책상 부처간 이견 및 그 밖에 집행상 문제점 유무 여부

②제1항제4호에서 "재정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7.10>

1. 국가의 일반회계의 증가 또는 특별회계의 신설·증가

2. 기금의 신설 및 「국가재정법」 별표 2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 증가

3. 부담금의 신설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에 의하여 설치된 부담금의 증가

③법제처장은 적용대상법률안을 검토한 결과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1항제5호에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그 검토의견을 통보한다. <개정 2008.7.10>

④법제처장은 제1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그 밖에 적용대상법률안에 대한 소관부처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관부처에 대하여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검토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관련부처의 장의 의견 청취 등) ①소관부처의 장은 적용대상법률안에 조세의 감면, 재정지출의 증가, 조직의 신설·폐지·변경, 인원의 소요, 규제의 신설·강화, 정부정책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처(이하 "관련부처"라 한다)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7.10>

②관련부처의 장은 적용대상법률안 중 그 관장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처의 장에게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 (의견의 사전조정 등) ①적용대상법률안에 대하여 소관부처의 장의 의견과 관련부처의 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 소관부처의 장은 관련부처의 장과 그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에 불구하고 의견조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부처의 장 또는 관련부처의 장은 제7조에 의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에게 부처간 협의를 위한 협의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③소관부처의 장은 법제처장으로부터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의견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소관부처의 의견에 반영하거나 반영여부에 관하여 법제처장과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법제처장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 소관부처가 이견을 제시하는 때에는 협의회에 이를 상정하여 협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설치) ①적용대상법률안에 대한 부처간 의견의 협의를 위하여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둔다.

②협의회는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상정안건 담당 법제처 법제국장, 상정안건의 소관부처 및 관련 부처의 기획조정실장(기획조정실장이 없는 부처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의장은 법제처 차장이 된다. <개정 2008.7.10>

③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7.10>

1. 적용대상법률안의 법리적 쟁점에 대한 대응방안의 협의
2. 적용대상법률안에 조세감면의 필요, 재정지출의 증가, 정부조직의 신설·폐지·변경, 규제의 신설·강화 또는 그 밖에 집행상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대응방안 협의
3. 의원발의법률안의 소관부처가 불분명한 경우 그 소관부처 협의
4. 그 밖에 적용대상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의 통일을 위한 협의

제8조 (협의회의 소집) 협의회는 필요할 때마다 협의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제9조 (전담인력) 법제처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업무와 제7조에 의한 협의회의 사무처리 등 이 훈령의 시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둔다.

제10조 (협의결과의 보고) 법제처장은 제7조에 의한 협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무총리에게 그 협의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제11조 (소관부처의 장의 국회의견제출 등) ①적용대상법률안의 소관부처의 장은 당해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출하거나 발언함으로써 당해 법률안에 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법제처장은 제13조에 의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제14조에 의하여 기관평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처의 장 및 관련부처의 장이 제1항에 의하여 국회에 제출하거나 발언한 내용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고위당정협의회의 회의 보고 <개정 2008.3.18>) 법제처장은 적용대상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의 입법반영을 위하여 여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 제7조에 따른 고위당정협의회의 회의에 이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8.3.18>

제13조 (국무회의 보고) 법제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용대상법률안의 입법추진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제14조 (기관평가 자료 활용) 국무총리는 적용대상법률안에 대한 소관부처 및 관련부처의 대응노력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평가 실시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7.10>

부칙 <제477호, 2006.3.10>

이 훈령은 발령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 <제506호,2008.3.1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국무총리훈령 제477호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 보고)"를 "(고위당정협의회의 회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중 "「당정협조업무 운영규정」 제7조에 의한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 제7조에 따른 고위당정협의회의 회의"로 한다.

부칙 <제516호,2008.7.1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2

참 고 서 식

부 록 2 - 참 고 서 식

1. 법령정비협의회 안건 예시문	189
2. 관계부처 의견조회 시행 예시문	200
3.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양식	201
4.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 사유서 양식	203
5. 입법예고안 관보게재 의뢰 시행 예시문	206
6. 입법예고 공고안 예시문	207
7. 규제심사 안건 작성양식	208
8. 시행규칙 관보게재 의뢰 시행 예시문	216
9. 관보게재 정정 의뢰 시행 예시문	217
10. 국무회의 안건, 보고, 토론 예시문	218
11. 상임위 처리법안 설명자료 작성 예시문 ①정부안	279
12. 상임위 처리법안 설명자료 작성 예시문 ②의원발의안	284
13. 상임위 소위심사자료 작성 예시문	290
14. 상임위 수정안 예시문	296
15. 상임위 대안 예시문	309
16. 법사위 상정안건의 주서본 예시문	321
17. 의원발의안 관련 : 법제처에 부처간 의견협의 결과 통보서	333
18. 의원발의안 관련 : 법제처에 의견협의 신청서 제출양식	334
19.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법률 현황	335
20. 법령개정 소요일수(정부내 입법절차)	336
21. 농림수산식품 법령정보관련 사이트 안내	337

<1. 법령정비협의회 안건 예시문>

법령정비협의회 안건

심의번호	제2008- 호
심의일시	2008. 2. 17.

안건명 :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채소특작팀장
-------	--------

1. 제안이유

인삼류는 지정검사기관의 검사 또는 자체검사를 받아 유통되고 있는데 최근 검사기준 부적합 제품의 유통 증가로 자체검사업체가 지정취소되는 등 검사제도 운영·관리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및 취소요건을 법률에 규정하여 재량권 행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인삼제품류의 신고 등 관리조항 삭제(안 제12조 및 제14조)

(1) '99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삼산업법”에서 “식품위생법”을 준용하여 제품류까지 관리하기 위하여 인삼산업법에 의한 제조업 신고(시장·군수)업체가 인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제조업 신고(시장·군수)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인삼산업법을 개정('01.1.26), 운용하고 있으나, '02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시장·군수 신고사항이 식약청장 허가사항으로 변경되어 법률적인 흠결이 발생함.

(2) 현재 시·군의 인삼제조관련 신고업무는 홍삼·백삼 등 원료삼은 농업분야, 홍삼캔디·음료는 위생분야, 농축인삼류등 제품류는 식약청에서 각각 관리·운용되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하여 식품위생법 준용조항을 삭제하도록 함.

- (3) 인삼제품류의 제조업 신고·허가제를 실제 운용실태와 일치시켜 법률적 흠결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자체검사업체의 관리강화(안 제15조·제16조·제17조 및 제33조)

- (1) 최근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은 증가하고 있으나, 자체검사업체에서 검사한 유통제품의 위격비율 증가로 소비자의 신뢰제고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자체검사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2) 홍삼·태극삼·백삼의 삼종별 자체검사업체 지정 및 검사기록서 보존을 의무화하고, 검사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함.
- (3) 인삼제품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하여 소비자의 신뢰제고 및 인삼경작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규제사항 정비 및 재량권 행사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17조의2·제17조의3 및 제19조)

내수용 인삼류의 포장규격 완화에 따라 포장을 임의 해장 판매하는 등 유통시장 교란에 대비하여 제재규정을 신설하고,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및 취소요건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함.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물로”를 “물 또는 기타 방법으로”로 하고, 동조에 제7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8호의2중 ““인삼류제품”라”를 ““인삼류제품”이라”로, “식품등의 공전”을 “식품등의 공전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공전”으로 한다.

7의2. “원산지”라 함은 인삼이 생산된 국가 또는 지역(시·도, 시·군·구)을 말한다.

제3조제1항중 “인삼류의 생산성향상·수출촉진·유통개선·가격안정 및 연구개발등”을 “인삼류(제품을 포함한다)의 생산성향상·수출촉진·유통개선·품질검사·가격안정 및 연구개발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경작기술의 개발”을 “경작 및 검사기술의 개발”로 한다.

제12조의 제목“(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제조신고 등)”을“(인삼류제조업의 신고 등)”으로 하고,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후단 및 동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중 “해당 연근을”을 “해당 연근 및 원산지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중 “연근을”을 “연근 또는 원산지를”로 하고, 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한 때

- 중 략 -

제33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5호중 “제17조 제6항”을 “제17조제4항”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제17조제7항”을 “제17조 제5항”으로 하고, 동항에 제6호의2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록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17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 교육을 받지 않은 검사원이
 검사를 한 경우

7. 제17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체검사업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된 자는 이 법 개정규정에 의해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이후 3년 이내에 이 법 개정규정에 의해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아야 한다.

③(검사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검사원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해 검사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태극삼”이라 함은 수삼을 물로 익혀서 말린 것을 말한다.</p> <p>5. ~ 7. (생략)</p> <p><u>< 신 설 ></u></p> <p>8의2. “인삼류제품”라 함은 식품위생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공전에 수록된 인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p> <p>제3조(인삼산업진흥시책의 강구) ①농림부장관은 인삼 및 인삼류의 생산성향상·수출촉진·유통개선·가격안정 및 연구개발등 인삼산업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농림부장관은 생산자단체 및 농림부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인삼의 우량 종묘, 경작기술의 개발·보급, 재배적지조사 및</p>	<p>제2조(정의)-----</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물 또는 기타 방법으로-----.</p> <p>5. ~ 7. (현행과 같음)</p> <p>7의2. “원산지”라 함은 인삼이 생산된 국가 또는 지역(시·도, 시·군·구)을 말한다.</p> <p>8의2. “인삼류제품”이라-----식품등의 공전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공전-----.</p> <p>제3조(인삼산업진흥시책의 강구) ①-----인삼류(제품을 포함한다)의 생산성향상·수출촉진·유통개선·품질검사·가격안정 및 연구개발등-----.</p> <p>②-----경작 및 검사기술의 개발-----</p>			

인삼제품의 개발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2조(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제조의 신고 등) ① ~ ③ (생략)

④인삼류제조업자는 인삼류를 제조하고 남은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인삼제품류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제조·가공에 관한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하고자 하는 인삼류제조업자는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⑥시장·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제조·가공에 관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의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인삼류제조업의 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 중 략 -

제3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검사필증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쇄하지 아니하고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판매한자

6.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신 설>

8. (생 략)

- 중 략 -

제33조(과태료) ①-----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록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제4항-----

6. 제17조제5항-----

6의2. 제17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 교육을 받지 않은 검사원이 검사를 한 경우

7. 제17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 부서명>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단 채소특작팀	
연 락 처	(02) 500-2045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별 개정사유

2008. 2.

유통정책재단
채소특작팀

인삼산업법 개정법률안 조문별 개정사유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2조(정의) (생략)</p> <p>1~3. (생략)</p> <p>4. “태극삼”이라 함은 수삼을 물로 익혀서 말린 것을 말한다.</p> <p>5~7. (생략)</p> <p>< 신설 ></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3. (현행과 같음)</p> <p>4.물 또는 기타 방법으로.....</p> <p>5~7 (현행과 같음)</p> <p>7의2. “<u>원산지</u>”라함은 인삼이 생산된 국가 또는 지역(시·도, 시·군·구)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3. (현행과 같음)</p> <p>4.물 또는 기타 방법으로.....</p> <p>5~7 (현행과 같음)</p> <p>7의2. “<u>원산지</u>”라함은 인삼이 생산된 국가 또는 지역(시·도, 시·군·구)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3. (현행과 같음)</p> <p>4.물 또는 기타 방법으로.....</p> <p>5~7 (현행과 같음)</p> <p>7의2. “<u>원산지</u>”라함은 인삼이 생산된 국가 또는 지역(시·도, 시·군·구)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3. (현행과 같음)</p> <p>4.물 또는 기타 방법으로.....</p> <p>5~7 (현행과 같음)</p> <p>7의2. “<u>원산지</u>”라함은 인삼이 생산된 국가 또는 지역(시·도, 시·군·구)을 말한다.</p>	<p>○ 대부분 태극삼 제조업체의 제조 방식(증기 등) 변경에 따라 개정</p>	<p>○ 대부분 태극삼 제조업체의 제조 방식(증기 등) 변경에 따라 개정</p>
<p>8의2. “인삼류제품”라 함은 식품위생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공전에 수록된 인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p>	<p>8의2. “인삼류제품”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공전에 수록된 인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p>	<p>8의2. “<u>인삼류제품</u>”이라 함은 식품등의 공전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공전에</p>	<p>8의2. “<u>인삼류제품</u>”이라 함은 식품등의 공전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공전에</p>	<p>○ 식품위생법의 인삼제품류의 제조 기준 및 규격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02.8.26) 제정으로 이원화 되어 관련법령 추가</p>	<p>○ 식품위생법의 인삼제품류의 제조 기준 및 규격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02.8.26) 제정으로 이원화 되어 관련법령 추가</p>	<p>○ 식품위생법의 인삼제품류의 제조 기준 및 규격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02.8.26) 제정으로 이원화 되어 관련법령 추가</p>
<p>제3조 (인삼산업진흥시책의 강구)①농림부장관은 인삼 및 인삼류의 생산성향상·수출촉진·유통개선·가격안정 및 연구개발등 인삼산업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 이하생략 -</p>	<p>제3조 (인삼산업진흥시책의 강구)①농림부장관은 인삼 및 인삼류의 생산성향상·수출촉진·유통개선·가격안정 및 연구개발등 인삼산업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 이하생략 -</p>	<p>제3조 (인삼산업진흥시책의 강구)①농림부장관은 인삼 및 인삼류(제품포함)의 생산성향상 수출촉진·유통개선·품질검사·가격안정 및 연구개발등</p> <p style="text-align: right;">- 이하생략 -</p>	<p>제3조 (인삼산업진흥시책의 강구)①농림부장관은 인삼 및 인삼류(제품포함)의 생산성향상 수출촉진·유통개선·품질검사·가격안정 및 연구개발등</p> <p style="text-align: right;">- 이하생략 -</p>	<p>○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품질검사에 대한 정책수립 근거 마련</p>	<p>○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품질검사에 대한 정책수립 근거 마련</p>	<p>○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품질검사에 대한 정책수립 근거 마련</p> <p style="text-align: right;">- 이하생략 -</p>

<2. 관계부처 의견조치 시행 예시문>

농림수산식품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치

농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을 '00.00.00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붙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신자

협조자

시행 접수 2008.00.00 ()

우 427-71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중앙동1) / www.mifaff.go.kr
전화 (02)500- 전승 (02) /

<3.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양식 >

※관리번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표지)							
법령(등) 명	(제도명 :)							
구 분	제정			개정			현행	
형 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교육규칙	행정규칙
관련 행정규칙 명 (고시, 훈령, 예규, 규정, 지침 등)	상위 법령 시행과 관련하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행정규칙명을 기재(제·개정조항에 한정하지 말 것)							
소관기관	기관명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담당자 직·성명/전화번호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담당자 직·성명/전화번호								
입법일정(예정) ※제·개정의 경우 에만 기재	관계기관 협 의	대상기관						
		협의기간	200 . . . 부터 200 . . . 까지(일간)					
	입법예고	200 . . .부터 200 . . .까지(일간)						
의견수렴절차	1. 법령총괄부서 경우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우 여부							
첨부자료	1. 법령안(신·구 조문 비교표 포함) 2.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가급적 5급이 상 기재					

□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

평가영역	질문내용	응답내용
I. 준수의 용이성	문1. 준수부담의 적정성	① 적정
		② 다소 높은 수준
		③ 높은 수준
	문2. 제재규정의 적정성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문3. 특혜발생 가능성	① 전혀 없음
		② 가능하나 무시가능
		③ 다소 있음
④ 상당히 높음		
II. 재량의 적정성	문4. 재량규정의 명확성	① 모두 명확
		② 일부는 불명확
		③ 대체적으로 불명확
	문5. 재량범위의 적정성	① 적정
		② 다소 과도
		③ 다소 부족
		④ 잘 모름
	문6.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① 모두 구체적·객관적
		② 다소 추상적·주관적
③ 대체로 추상적·주관적		
III. 행정절차의 투명성	문7. 접근성과 공개성	① 있음
		② 없음
	문8. 예측가능성	① 대체로 예측가능
		② 대체로 예측곤란
	문9. 부패통제장치	① 있음
		② 없음

※ 법령안 내용에 대한 평가항목별 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첨부

<4.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 사유서 양식>

○○○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예 시>

구 분		연 도					합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지 출	○						
	○						
	소 계 (a)						
수 입	○						
	○						
	소 계 (b)						
<input type="checkbox"/> 총 비용 (a-b)							

4. 부대의견
5. 작성자

<예 시>

작성자 이름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팀 홍길동 분석관
연락처	2070-0000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안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예 시>

구 분 \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합 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단체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공공단체						
<input type="checkbox"/> 민 간						
<input type="checkbox"/> 합 계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조세수입, 세외수입, 국채발행, 일반회계 ·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차입, 예비비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 작성)

3. 부대의견

4. 협의사항

5. 작성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제시)

4. 작성자

<5. 입법예고안 관보게재 의뢰 시행 예시문>

농림수산식품부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입법예고안 관보게재 의뢰

농지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불
임 공고를 관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보게재구분 :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2. 관보게재건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 게재근거 :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

붙임 농림부공고 제2008-000호.1부. 끝.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협조자

시행 접수 ()

우 427-71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중앙동1) / www.mifaff.go.kr
전화 (02) 전승 (02) /

※ 참고 : 행안부 규제개혁법무담당 관보계 전화 : 02-2100-2564

<6. 입법예고 공고안 예시문>

● 농림수산물식품부 공고 제2008-187호

「양곡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8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양곡관리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과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곡류·서류의 종류에 소비자 관심이 높은 율무쌀, 기장, 기장쌀을 추가(영안 제2조제1호)

- (1) 중국산 등 수입량이 증대되는 추세에서 소비자 관심이 높은 품목인 율무쌀, 기장, 기장쌀을 양곡의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하고자 함
- (2)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품목인 율무쌀, 기장, 기장쌀을 곡류의 종류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 (3) 소비자가 구매정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18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식량정책팀, 전화 02-500-1755, 모사전송 02-507-2306, E-mail: 0000@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물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7. 규제심사 안건 작성양식>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안건 (휴먼명조 13)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07. . . (제 회)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휴먼명조 16, 강조)

「000법률 개정안」(휴먼명조 20 강조)
신설 · 강화규제 심사안
 (휴먼명조 30, 강조)

제 출 자	000부 장관 000
제출연월일	2007. . .

(휴먼명조 16, 강조)

목 차

I. 규제심사(안) 개요 210

II. 규제사무명 211

< 참고자료 >

1. 자체심사결과
2.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결과
3. 개정법령(안)

I. 규제심사(안) 개요

규제 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변경(또는 신설) 규제내용
1. 규제사무명 * 구분(신설,강화, 내용심사 등) * 조문번호	○ - * 현행 규제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기재	○ - * 변경 (또는 신설) 규제내용을 간략히 기재
2. 규제사무명 * 구분(신설,강화, 내용심사 등) * 조문번호		
3.		

II. 규제사무명

II-1. 규제 내용

□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유사입법(예) : 필요시 작성

II-2. 규제영향분석서

I.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행정적 규제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 소관 부처·부서명 및 작성자 직위·성명 기재 ○○○부 ○○○국 □□□과 국장 ◇◇◇, 과장 △△△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5. 규제존속기한	○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종전규제 ○ 변경규제										
7. 규제체계도	○ 양식에 넣기 힘든 경우 별지로 가능										

II-3.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자유로운 형식으로 상술)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

○

-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

-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

○

-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

-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

-

3-2. 이해관계자 협의

.....

○

-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

-

<참고자료>

1. 자체심사결과
2.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결과
3. 개정법령(안)

※ < 안건 작성양식 >

- * 문서여백 : 위·아래·머리말·꼬리말 15, 왼쪽·오른쪽 20
- * 글자모양 : 휴먼명조 16pt를 기본으로 자유롭게 작성
- * 문단간격 : 160%
- * 그러나, 표지는 반드시 정해진 서식(용지규격 및 글자체 등)을 사용하여야 함

<규제등록서 예시문>

		규제등록번호	
등록변경사유	강화	단순내용수정여부	
소관부처 및 담당부서	농림부 축산국 축산경영과		
처리기관명	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		
규제사무명	초지전용허가 및 취소		
규제요약	○조성된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초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초지전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함		
법 적 근 거	법률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의2, 제27조제1항	
	대통령령		
	총리, 부령		
	고시 등		
유형별	허가		
성격별	경제적규제, 거래규제		
입법유형	정부입법		
최초시행일 또는 법령공포일	1980/01/04		
변경(현행) 규제시행/폐지일	2007/03/27		
존속기한			
규제내용	○조성된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30년이 경과된 초지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함 ○초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초지전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등록이후 변동경과	'98.8.31 행정규제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98 자체규제정비계획에 따라 '99.2.5 초지법 개정으로 규제완화 - 조성후 30년이 경과된 초지는 신고만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완화		
비고			
관련사이트	관련 첨부파일		

<8. 시행규칙 관보게재 의뢰 시행 예시문>

농림수산식품부

수신자 행정안전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농지법 시행규칙 관보게재 의뢰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관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보게재구분 : 농림수산식품부령
2. 관보게재건명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3. 게재근거 : 관보규정 제12조

- 붙임 1.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2. 법제처 부령안심사확인증 1부. 끝.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신자

협조자

시행 접수 ()

우 427-71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중앙동1) / www.mifaff.go.kr
전화 (02) 전송 (02) /

<9. 관보게재 정정 의뢰 시행 예시문>

농림수산식품부

수신자 행정안전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관보게재 정정 의뢰

관보 ○○○○호('08.○.○)에 게재된 농림수산식품부령 제○○○○호 중 오류사항이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관보게재를 의뢰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보게재구분 : 관보게재사항 정정
2. 관보게재건명 : 농림수산식품부령 제○○호 중 정정
3. 게재근거 : 관보규정 제12조

붙임 농림부령 제○○호 중 정정 1부. 끝.

※ 시행규칙을 관보게재(관보게재 정정의뢰)의뢰하고 이를 법제처에도 통보하여 주도록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신자

협조자

시행

접수

()

<10. 국무회의 안건 예시문>

《 신규제정 》 : 타 부처와 공동소관 법률인 경우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향
의 결 연 월 일	2008. . . (제 회)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무위원 ○ ○ ○ (국토해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8.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주 5일 근무제의 시행 등으로 도시민들의 농어촌체험·관광과 1사1촌운동 등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와 관련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제도,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제도, 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제도 등 도농교류활동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지원·육성방안의 마련(안 제4조 및 제5조)

- (1)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마을 단위 체험·휴양마을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육성이 필요함.

- (2) 마을 단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 주민은 마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정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 등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을 받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3) 마을 단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육성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 근거의 마련(안 제13조)

- (1) 초·중등학생이 농어촌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중등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프로그램 등을 교육감에게 추천하고 추천을 받은 교육감은 관할 지역의 초·중등학교에 그 활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
- (3) 건전한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초·중등학생의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도농교류확인서 발급제도의 도입(안 제14조)

- (1) 도농교류자매결연, 농어촌마을에 대한 지원 및 농어촌체험·봉사활동 등을 통한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하여는 농어촌마을에 기부금품을 제공한 자 또는 농어촌체험·봉사활동을 한 자 등에게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시장·군수 등은 농어촌마을·농어촌단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에 기부를 한 자에게 도농교류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체험·봉사활동이 행하여진 마을의 이장·통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는 농어촌체험·봉사활동을 한 자에게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3) 도농교류를 하였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농어촌마을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농어촌체험·봉사활동이 활발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07년도 기정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
관광부, 보건복지부 및 기획예산처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7. 4. 6. ~ 4.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 : 2건

(3) 비용소요추계서, 별첨(23쪽 ~ 29쪽)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어촌”이란 「어촌·어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농촌과 어촌을 말한다.
4. “마을”이란 농촌 또는 어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리(里) 또는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리를 말한다.
5.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란 마을 주민이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6.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란 제4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지정을 받은 마을협의회를 말한다.
7.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의 업을 말한다.
8. “도농교류”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품, 생활체험·휴양서비스, 정보 또는 문화 등의 교환·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 중 략 -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한 경우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받은 내용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제4항에 따른 안전·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③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농촌지역에 있는 농어촌체험·휴양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부로부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준농촌 지역의 농어촌 체험 또는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 있는 농어촌 체험 또는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보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별첨]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안 비용 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중 략 -
2. 비용 추계의 전제
 - 중 략 -
3. 비용 추계의 결과
 - 중 략 -

< 연도별 재정소요 추계표 >

(단위 : 억원)

구 분 \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지 출						
<input type="checkbox"/>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 활성화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어촌체험마을						
어촌휴양마을조성사업(시범·조성)						
체험·휴양마을 운영지원						
<input type="checkbox"/> 도농교류활동 활성화						
1사1촌운동 등 지원						
도시민 농촌정주공간 조성						
도시민정주지원 토탈서비스						
지자체 도시민유치 지원						
<input type="checkbox"/>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및 지원						
시스템운영						
교육 및 컨설팅 지원						
<input type="checkbox"/> 보 칙						
농업·농촌관련 홍보지원						

4. 부대의견 : 없음

5. 작성자 : 농림수산식부 농촌정책과 사무관 ○○○(02-500-0000)
 국토해양부 000과 사무관 ○○○(02-0004-0000)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2008~2012년 기간동안 기존 및 신규사업을 포함 총 00억원 소요

- 중 략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안 자원 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자원 분담계획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단체						
<input type="checkbox"/> 자부담(민간)						
<input type="checkbox"/> 합 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정부 예산과 지방비를 재원으로 함

2. 부대 의견 : 없음

3. 협의 사항 : 기획예산처와 합의됨

4. 작성자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과 사무관 ○○○(02-500-0000)

국토해양부 000과 사무관 ○○○(02-3674-0000)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도농교류과	
연 락 처	(02) 500 - 0000
국토해양부 000국 000과	
연 락 처	(02) 000 - 0000

《 전부개정 》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09. . . (제 회)	

사료관리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제출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사료관리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료의 안전성확보와 체계적 품질관리 등의 내용으로 「사료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931호, 2008. 3. 21. 공포, 2009. 3. 22. 시행)됨에 따라, 사료공장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위해요소중점관리를 위하여 특수법인이면서 사료의 원료관리, 제조 및 유통과정의 위해요소중점관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과징금의 금액 및 부과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9. 1. 15. ~ 2.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사료관리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사료관리법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료관리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의 지원 대상, 지원 비율, 지원 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 및 재정자금융자 조건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사료안전관리인) 법 제10조제1항에서 “미량광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료”란 단미사료 중 미량광물질사료 및 남은음식물사료를 말한다.

제4조(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이하 “담당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1. 「민법」·「상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사료의 원료관리, 제조 및 유통과정의 위해요소중점관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제정 및 운용에 관한 조사·연구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 업무의 지원
3. 법 제16조제10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부대 업무

제5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위반행위의 정도·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사실과 부과금액 등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이를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줘야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권한의 위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사료 수입신고의 수리 및 검정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사료관련 단체에 위탁한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제조업 생산능력(1일 8시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수입사료의 경우에는 해당 수입사료와 같은 날 같은 선박 등으로 수입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 다. 같은 날 제조한 같은 사료가 지역별 검사일시의 차이로 같은 위반 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최초로 적발된 것에만 과징금을 부과한다.
- 라. 과징금 하한은 50만원으로 하고, 그 상한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구 분	영업의 전부 정지			영업의 일부 정지		
	배합사료	단미사료	보조사료	배합사료	단미사료	보조사료
과징금 금 액	1일 과징금 금액: 생산 능력(수입 량) 1톤당 500원	1일 과징금 금액: 생산 능력(수입량) 1톤당 5,000 원. 다만, 곡 물류·곡물 부산물류· 박류·섬유 질류·면실 ·인산염류 및 칼슘염류 의 경우에는 1톤당 500원	1일 과징금 금액: 생산 능력(수입량) 1톤당 10,000 원. 다만, 규 산염제 및 요소제·완 충제의 경우 에는 1톤당 500원	1일 과징금 금액: 생산 능력(수입 량) 1톤당 250원	1일 과징금 금액: 생산능 력(수입량) 1 톤당 2,500 원. 다만, 곡 물류·곡물 부산물류· 박류·섬유 질류·면실 ·인산염류 및 칼슘염류 의 경우에는 1톤당 250원	1일 과징금 금액: 생산능 력(수입량) 1 톤당 5,000원. 다만, 규산염 제 및 요소 제·완충제 의 경우에는 1톤당 250원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제조업자에게 시정을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1호	500만원
나. 법 제16조제8항을 위반하여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2호	300만원
다.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료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3호	500만원
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4호	30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 자원순환팀	
연 락 처	(02) 500 - 0000

《 일부개정 》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08. . . (제 회)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제출연월일	2008.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부분의 농업인이 농작물재해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에 감자·콩·양파·고추 및 수박을 추가하고,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에 감자·콩·양파·고추 및 수박 추가(안 제6조)

(1) 감자·콩·양파·고추 및 수박은 재배농가수, 전업화 수준 및 보험가입 의사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손해평가 및 보험요율 산정에 있어 다른 품목에 비하여 보험화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2)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에 감자·콩·양파·고추 및 수박을 추가함.

(3) 이에 따라 자연재해에 대비한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농작물재해보험의 추가 대상농작물에 대하여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 규정(안 제7조)

- (1) 농작물재해보험에 추가되는 감자·콩·양파·고추 및 수박에 대하여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를 농업인의 대상재해 확대 요구와 보험상품 다양화에 대한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 (2) 감자·콩·양파·고추 및 수박에 대하여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를 밤·참다래·자두와 같이 호우피해·태풍피해·우박피해·동상해·강풍피해·한해(旱害)·냉해(冷害)·조해(潮害) 및 설해와 그 밖에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등 가능한 모든 자연재해로 규정함.
- (3) 이와 같이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상품 개선을 통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한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3. 17. ~ 4.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폐지 등 : 없음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참다래 및 자두를”을 “참다래·자두·감자·콩·양파·고추 및 수박을”로 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밤·참다래·자두·감자·콩·양파·고추·수박: 호우피해·태풍 피해·우박피해·동상해·강풍피해·한해(旱害)·냉해(冷害)·조해(潮害)·설해와 그 밖에 「농어업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 되는 피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재해보험 대상농작물)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작물” 이란 <u>밤 · 참다래 및 자두</u>를 말한다.</p>	<p>제6조(재해보험 대상농작물) --- ----- -----<u>참다래 · 자두 · 감자 · 콩 · 양파 · 고추 및 수박</u>을 -----.</p>
<p>제7조(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 이라 한다)에서 보상하는 농작물의 자연재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u>밤 · 참다래 · 자두</u> : 호우피해 · 태풍피해 · 우박피해 · 동상해 · 강풍피해 · 한해(旱害) · 냉해(冷害) · 조해(潮害) · 설해와 그 밖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p>	<p>제7조(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밤 · 참다래 · 자두 · 감자 · 콩 · 양파 · 고추 · 수박</u>: 호우피해 · 태풍피해 · 우박피해 · 동상해 · 강풍피해 · 한해(旱害) · 냉해(冷害) · 조해(潮害) · 설해와 그 밖에 「농어업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p>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업금융과	
연 락 처	(02) 500 - 0000

《 폐지법령 》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08. . . (제 회)	

선원보험법 폐지법률안

제출자	국무위원 ○ ○ ○ (국토해양부장관)
제출연월일	2008.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선원보험법 폐지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률은 선원에 대한 보험제도를 실시하여 선원 및 그 가족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62. 1. 10. 제정되었으나, 별도의 국가재원 등의 집행수단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시행되지 아니하였으며,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선원법」과 통합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8. 5. 6. ~ 5.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船員保險法 폐지법률안

船員保險法을 폐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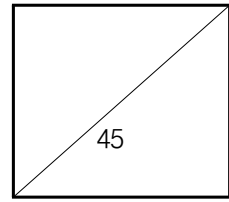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선원노정과	
연 락 처	(02)2110 - 0000

《 일반안건 》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8. . . . (제 회)	

2008년산 공공비축제 시행방안(안) 및
2009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8. . . .

1. 의결주문

2008년산 공공비축제 시행방안(안) 및 2009 양곡연도 정부관리 양곡 수급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양곡관리법 제3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산 공공비축제 시행방안(안) 및 2009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에 대하여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2008년산 공공비축제 시행방안(안)

- (1) 매입물량 : 40만톤(포대벼 35, 산물벼 5)
- (2) 매입가격 : 10~12월 전국평균 산지쌀값(80kg)을 조곡(40kg)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매입(전국 단일가격 적용)
 - 다만, 산물벼는 포장 제비용(670원/조곡 40kg)을 차감한 가격으로 매입
 - 우선지급금으로 포대벼 50,050원/조곡40kg(특등급), 산물벼 49,380원/조곡 40kg(특등급)을 지급하고 사후 정산

나. 2009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1) 쌀 수급

- 공급량 : 1,317천톤
 - 이월량 630천톤, 2008년산 공공비축 매입량 400천톤, 수입 쌀 의무수입물량 287천톤

- 수요량 : 608천톤
 - 관수용 78천톤, 민수용 163천톤(수입쌀 소비자시판량 63천톤),
가공용 225천톤, 공공용 131천톤, 기타 11천톤
- 양곡연도말 재고량 : 709천톤

(2) 보리쌀 수급

- 공급량 : 74천톤
 - 이월량 42천톤, 2009년산 매입량 32천톤
- 수요량 : 32천톤
 - 관수용 1천톤, 민수용 30천톤, 기타 1천톤
- 양곡연도말 재고량 : 42천톤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양곡관리법 제3조(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하 “양곡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정부관리양곡의 수요량 및 공급량
 3. 공공비축미곡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수급계획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곡정책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 양곡관리법 제10조(공공비축미곡의 비축·운용)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공공비축미곡을 비축·운용하여야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공비축미곡을 비축·운용함에 있어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의한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공공비축미곡의 매입·판매가격은 매입·판매지역에서의 그 당시 시장가격으로 한다.

나. 예산조치

○ 공공비축 매입물량(40만톤)은 2008년도 양곡관리특별회계에 계상된 예산으로 매입

다. 합 의

○ 기획재정부와 합의하였음

라. 별 지

○ 2008년산 공공비축제 시행방안(안) 및 2009 양곡연도 정부관리 양곡 수급계획(안)

< 별지 >

2008년산 공공비축제 시행방안(안) 및 2009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1. 기본목표

- 2005년 쌀 협상 결과 및 DDA협상에 따른 시장개방폭의 확대에 대비하여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확보와 국내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

2. 추진방향

- (1) 공공비축 규모 : 72만톤 수준을 비축·운용
 - 향후 쌀 소비량 등을 고려하여 3년 뒤('11년) 재검토
- (2) 공공비축 연간 매입량 : 36만톤 수준 매입을 원칙으로 운용
 - 금년도는 40만톤을 매입하고 연차별 감축

3. 2008년산 공공비축제 시행방안(안)

가. 매입기간

- 산물벼 : '08. 9. 22 ~ 11. 7(47일간)
- 포대벼 : '08. 10. 27 ~ 12. 31(66일간)

나. 매입물량 및 매입방법

- 매입물량 : 40만톤(포대벼 35, 산물벼 5)

※ 금년 작황 감안 필요시 별도 수확기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 매입방법 : 포대벼는 농가로부터 직접 매입하고, 산물벼는 농가 편의를 위하여 RPC를 통해 매입
- 매입대금 : 매입물량은 2008년도 양곡관리특별회계에 계상된 예산으로 매입

다. 매입가격

- 포대벼 : 10~12월 전국평균 산지쌀값(80kg)을 조곡(40kg)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매입(전국 단일가격 적용)
- 산물벼 : 포대벼 매입가격과 동일하게 하되, WTO의 허용 보조요건 등을 감안 포장 제비용 670원/40kg(포장재 480원, 포장임 190)을 차감한 가격으로 매입

라. 우선지급금 지급 및 정산

- 우선지급금 수준 : '07년 포대벼 우선지급금 기준
 - 포대벼 : 50,050원/조곡 40kg(특등급 기준)
 - 산물벼 : 포대벼 우선지급금-포장 제비용(670원)=49,380원(특등급)

< 등급별 우선지급금 >

(단위 : 원/조곡 40kg)

	특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포대벼(A) (가격지수)	50,050 (103.30)	48,450 (100.00)	46,300 (95.56)	41,210 (85.06)
산물벼(B)	49,380	47,780	45,630	40,540
차이(A-B)	670	670	670	670

- 매입시 우선지급금을 지급하고, 산지쌀값 조사결과에 따라 '09. 1월 중 사후 정산

- 정산식(포대벼) : [10~12월 전국평균 산지쌀값(80kg 기준)-가공임 5,656원]÷111.11111kg(80kg÷0.72)×40kg-우선지급금(A)
- 산물벼 : 포대벼 매입가격-포장 제비용(670원)-우선지급금(B)

마. 산물벼 매입곡 판매

- RPC사업체(DSC 포함)에 단계적으로 판매를 추진하되 잔여 물량은 정부가 보관 관리
- 1단계 : 산물벼를 매입한 당해 RPC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자체 인수여부를 자율 결정토록 함
- 2단계 : 산물벼를 매입한 RPC가 자체 인수를 포기한 물량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조곡 판매
- 3단계 : 판매 잔여물량은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로 이고

바. 보관료 등 비용 부담

- 산물벼 매입시점부터 RPC 자체 인수도, 정부의 조곡판매 및 정부양곡보관창고 이고 시 까지 보관료(을지 1급 기준)와 추가 비용(판매수수료, 운송비 등)은 정부가 부담

4. 2009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단위 : 천톤)

구 분		쌀	보 리 쌀	합 계
공급	전년이월	630	42	672
	매 입	400	32	432
	수 입	287	-	287
	계	1,317	74	1,391
수요	관 수 용	78	1	79
	민 수 용	163	30	193
	가 공 용	225	-	225
	공 공 용	131	-	131
	기 타	11	1	12
	계	608	32	640
연말재고량		709	42	751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단 식량정책팀	
연 락 처	(02) 500 - 0000

《 부처보고 》

국무/차관회의 보고자료

제13회 농업인의 날 행사계획

2008. 11. 2

농 립 수 산 식 품 부

“펼쳐요! 미래농업, 열어요! 희망농촌”

□ 농업인의 날은,

- 농업·농촌의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농업인의 공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11월 11일을 정부 기념일인 농업인의 날로 지정, 매년 기념식을 개최
 -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1996.5.30, 대통령령 제15005호)
- 1996년 제1회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고 금년은 제11주년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농업인의 날을 11월 11일로 정한 이유

- 11월 11일은 한자로 土(토)월 土(토)일이 되며, 흙은 농업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시기적으로도 농업인들이 농사를 마치고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때임
- 또한 흙(土)이 세 번 겹치는 11월 11일 11시는 흙의 진리를 탐구하여 ‘흙을 벗삼아 흙과 살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농사철학 이념을 담고 있음

목 차

1. 행사목적 및 방향	261
2. 기념식 행사계획	261
3. 부대행사 계획	262
4. 관계기관 협조사항	262

1. 행사 목적 및 방향

- 제11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한·미 FTA 등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 노력하는 농업인을 격려하고,
 - 농업·농촌의 가치를 국민에게 알려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려는 것임
- 행사는 33개 농업인단체로 구성된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자율적인 행사로 추진하되, 농업인과 소비자·정부가 함께 참여하고
 - 농업·농촌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부각시키는 한편, 농업인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함

2. 기념식 행사계획

- 기념식
 - 일 시 : 2008.11.10(금) 11:00~12:00
 - * 11.11이 토요일인 관계로 11.10로 앞당겨 개최
 - 장 소 : 농촌진흥청 대강당
 - 초청규모 : 750여명
 - 농림해양위원, 농업인, 경제·소비자·농업인단체장 등 초청
- 농업발전 유공자 63명에게 훈장 9점, 산업포장 11점, 대통령표창 18점, 국무총리표창 25점을 수여할 계획

3. 부대행사 계획

□ 부대행사 개막식

- 일시 및 장소 : 11.10(금) 12:00, 농촌진흥청 운동장
 - 부대행사는 11.10~11.12까지 3일간 실시
- 초청인사 : 기념식에 참석하는 주요 인사 30여명

□ 부대행사 내용

- 농촌사랑 한마당잔치(11.10~11.12, 3일간)
 - 우수농산물전시·판매, 농업박물관 관람, 농촌사진전, 밤까기·아기동물과 놀기 등 농촌체험과 전통문화공연 등 실시
- 도·농 녹색교류 심포지움(11.10, 농업기술자협회 주관)

□ 홍보계획

- “빠빠로데이를 가래떡날로”라는 슬로건으로 우리쌀 소비 촉진을 위한 이벤트 홍보 행사 개최(11.8, 부천 도당초교)
 - 세계에서 가장 긴 1111m 가래떡을 만들어 청소년에게 홍보효과 극대화
- TV, 일간지, 전문지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 농업인의 날 행사 VNR(영상보도자료) 작성·배포
 - 농업인의 날 특집 대담프로 장관님 출연(K-TV)
- 홍보탑, 육교현판, 현수막 등 옥외 홍보물 설치

4. 관계기관 협조사항

- 부대행사에 많은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처 홈페이지, 유관기관 등에 적극적인 홍보 요망(각 부처)
- 행사기간 중 교통정리 등 질서 유지 협조 요망(행정자치부)

<보고자료 소관부처명>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업정책과	
연 락 처	02)500-0000

국무회의 토론회자료

원화약세기조의 적극적 활용방안

2009. 3. 10

기 획 재 정 부

목 차

I. 검토 배경	266
II. 원화약세기조의 적극적 활용방안	267
III. 중점 토론과제	270
< 참고 > 환율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271

I. 검토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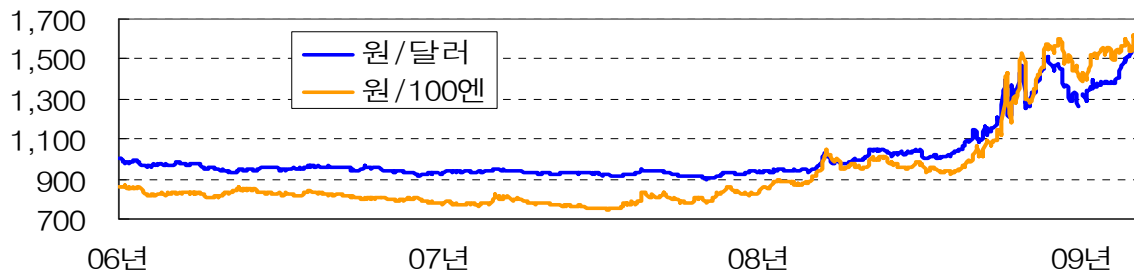
1. 환율 동향

□ 최근 환율은 국제금융시장 불안 재연 등으로 1,500원대/\$를 크게 상회하였으나, 시장안정대책 등에 따라 다소 진정되는 모습

○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적인 요인이 단기에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 원화약세가 지속될 가능성

최근 환율 동향

	08년말	09.1월말	2월말	3.6	3.9	1월말대비	08말대비
원/달러	1,260	1,380	1,534	1,550	1,549	+169	+289
원/100엔	1,397	1,543	1,571	1,578	1,577	+34	+180



2. 원화약세의 경제적 영향

- (긍정적) 국내 생산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 증가, 서비스 수지 개선, 對한국 직접투자 증가
- (부정적) 수입원재료 가격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 설비 투자 부진,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외화차입자 부담 증가

◇ 최근 환율상승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나, 한편으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 위기요인을 관리해나가면서 기회요인을 극대화

II. 원화약세기조의 적극적 활용방안

- ◇ (단기) 원화약세 기조를 활용한 수출촉진, 관광 등 서비스수지 개선,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 강화
- ◇ (중장기) 원화약세가 강세로 반전되어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경제체질 개선 노력을 지속

1. 원화약세를 활용한 수출촉진

- 1] 농축수산물 등 그간 세계화·수출상품화에 미흡했던 품목들의 발전계기로 활용
 - 멜라민 파동 등에 따른 중국제품 수출둔화를 우리의 해외시장 개척기회로 활용
 - 농수축산업의 세계진출 및 농어촌 구조개혁의 기회로 활용
- 2] 개선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글로벌 마케팅 강화
 - 자동차 부품 등 국내 부품소재기업의 미국 등글로벌 기업과의 기술제휴, 아웃소싱 등 비즈니스 협력확대 지원
 - 기업간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상담회 개최 등
 - 중국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주요 지역·기업별 수요에 따라 국내 유망 부품·소재기업을 매칭·지원
- 3] 수출보험·보증 공급지원
 - 수출보험 지원규모를 확대('08: 130조원 → '09: 170조원)하여 중점시장 개척에 집중 배분
 - 중소기업 수출신용보증의 규모 및 한도를 확대하고, 심사절차를 간소화

* 수출신용보증 지원총액 : (08년 1.5조원→09년 6조원)

2. 관광 등 서비스수지 개선

- ① 전략적이고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외국인의 방한수요 다각화
 - 의료관광 및 맞춤형 미용관광 활성화
 - 한옥체험 상품 등 특화상품 및 백제·가야문화 체험, 사찰순례 등 한일 비교문화상품 개발
- ② 관광객 쇼핑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 개발
 - 주요 카드사와의 공동 캠페인 및 카드가맹점 대상 할인
 - '쇼핑'과 '공연'을 핵심 테마로 결합하고 차세대 공연 콘텐츠 육성
 - 한류스타를 활용한 한국관광 특별 광고 등 스타 마케팅 강화

3.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활성화

- ① 부품소재 전용공단(구미, 포항, 익산, 부산 경제자유구역) 등을 활용, 엔고로 해외에 진출하는 일본기업을 유치
 - 입지, 금융, 세제 등 추가 인센티브 부여 검토
 - 일본기업의 핵심요구사항인 노사관계 선진화 대책 수립
- ② 원화약세로 국내 생산비와 자산가격이 저렴해진 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직접투자 촉진방안 마련
 - 투자규모와 사업성격을 감안, 개별 프로젝트별로 환경영향평가·입지규제 등 핵심애로 사항을 맞춤형으로 해소

4. 경제체질 개선 노력 지속

- ① 수입의존도가 높은 기계류, 부품·소재 등 자본재 산업분야를 육성
 - 수입유발형 수출구조를 완화하고 내수로의 환류를 강화
- ② 교육, 의료 등 서비스산업 규제개혁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수요를 흡수
 - 산업적 측면에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쟁원리를 제고
 - 영리 외국교육기관 유치, 영리 의료법인 도입 등
- ③ 향후 원화가 강세로 전환하더라도 수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비
 - 고부가가치 상품 및 브랜드 개발 등 산업의 경쟁력 제고
 - 녹색기술, 신성장동력 등 미래선도산업에 대한 R&D 투자확대,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생산성 향상노력 강화

Ⅲ. 중점 토론과제

- ① 세계경기 부진에 따른 수출감소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환율을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개선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한 방안은? (예 : 수출지원시책이 효과적 인지?)

- ② 엔고로 인해 우리 수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부품소재산업이 일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그 효과가 제한적임. 80년대 이후부터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아직 미흡한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 ③ 원화약세기를 활용한 경상수지 개선이 근본적인 환율 안정 방안임. 경상수지의 주요 적자(또는 흑자 감소) 요인이 되어 왔던 서비스수지 적자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 ④ 엔고를 활용한 일본 관광객 유치에 위한 방안(예 : 교통, 숙박, 마케팅)은? 내국인의 해외관광을 국내 지역관광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 ① (대외거래) 환율상승은 국산품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여 수출을 촉진하고, 해외여행 축소 등을 통해 경상수지 개선
 - 원/달러환율 10% 상승시 수출 증가 및 수입 감소로 수출입차가 50억달러 정도 개선
 - 경상수지는 50~70억달러 정도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
- ② (경제성장) 수출 및 소비 등 총수요 증가로 환율 10% 상승시 GDP는 0.3~0.8%p 증가
 - 투자의 감소를 초래하나, 민간소비 및 수출 확대 및 서비스 수지 개선 등을 통해 총수요 증가
- ③ (소비자물가) 수입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환율 10% 상승시 물가는 0.5~0.8%p 상승

원/달러환율 10% 상승의 효과(%p)

	GDP	수출	수입	경상수지	물가
KDI(08.4)	0.3	2.6	△1.9	56억불	0.5
한은(09.2)	0.8	1.5	△1.3	70억불	0.8

- ④ (기업채산성) 원화표시 수출대금 증가 등으로 환율 10% 상승시 매출액영업이익률을 1.5%p 정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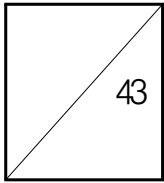
원/달러환율 10% 상승시 기업 채산성에 미치는 영향

(매출액영업이익률 기준)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1.5%p	2.4%p	0.7%p	0.03%p

* 자료 : 한국은행(09.2)

< 별지 서식 제1호 >



※ 비밀 : 43으로 표기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보고사항)
의(접수)결 연월일	2007. . . (제 회)	

(중고딕15Point)

※ () : 보고안의 경우

제 목

(신명 태고딕 17Point)

제 출 자	국무위원 ○ ○ ○ (○ ○ 부 장 관)
제출연월일	2008. . .

(중고딕 15Point)

<별지 서식 제2호>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보고이유)

3. 주요내용

4. 주요토의과제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라. 기 타

<별지 서식 제3호>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과	
연 락 처	(02) 500-○○○○

<별지 서식 4호>

국무(차관)회의 의안작성 요령

구 분 체 제	국무(차관)회의 의안	부처보고·토의안건
지 질	- 표지 : 백상지(80g/m ²) - 내용 : 중질지(신문용지)	
규 격	A4(210mm×297mm)	
인쇄·제본	경인쇄, 양면 · 상철	
워드프로세스	한글기준	
활자의 크기	- 제목 : 17Point (신명 태고딕) - 항목 : 16Point (고딕) - 내용 : 기본15point (신명조)	- 제목 : 26point (신명 태고딕) - 항목 : 16Point (고딕) - 내용 : 기본15point (신명조)
1행의 길이	16cm	적 의
행수(페이지당)	21행	적 의
문서작성방법	한글로 작성하되, 올바른 뜻의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안에 한자 기타 외국어를 넣을 수 있음.	
항목구분방법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10조(항목의 구분) 준용	

〈참 고〉

구 분	제 출 부 수	비 고
법 령 안	-	온라인국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일반 · 보고안	-	상 동
비밀 · 대외비안	43부	백상지 5부 포함
보고(토의)자료	-	온라인국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 일반·보고안건 및 보고(토의)자료가 비밀·대외비안인 경우에는 43부를 인쇄하여 제출 함. 단, 법령안은 법제처에서 제출(법령안은 백상지 3부, 일반·보고안은 백상지 5부 포함)

<별지 서식 6호>

보고자료 00회의 토의안건 참고자료

제 목

2008. 8.

보 고 부 처 명

<별지 서식 7호>

- ◇ 2005. 2. 15. 제7회 국무회의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현황 및 방제대책 추진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음
- ◇ 그러나 소나무재선충병이 경남 함양, 대구, 경북 안동 등에서 신규발생하고 있는 등 확산 추세에 있음
- ◇ 확산저지대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제정('05. 5. 31)하여 9. 1일부터 시행 계획임
- ◇ 산림청 및 피해지역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방제대책 현황과 관계부처에 대한 협조사항을 보고드릴

<11. 상임위 처리법안 설명자료 작성 예시문 ①정부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08. 9. 4, 정부제출)

I. 개정안 요지

- 동물의 등록제 도입
- 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 강화
- 금지 되는 동물 학대행위의 범위 구체화 등
- 동물 운송에 따른 보호규정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보호시설 설치 의무화
- 동물보호 감시관 및 명예 감시관제 도입

II. 개정안 주요내용

1. 동물의 등록제 도입(안 제4조의2 신설)

- 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유기 또는 유실된 동물 발견시 소유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동물 등록제 시행근거 마련
 -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도 현재 애완동물 등록제 실시

<외국의 애완동물 관리체계>

구 분	일 본	미 국	호 주	뉴질랜드	프랑스	독 일
동물등록제	○	○	○	○	○	○
위험개 별도 등록	○	○	○	○	○	○
광견병 예방접종 의무화	○	○	○	○	○	○
사육자 비용부담	초기등록비	매년등록비	매년등록비	매년등록비	매년등록비	매년등록비
유기동물반환/입양비 청구	○	○	○	○	○	○

2. 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 강화(안 제5조 제4항 내지 6항 신설)

□ 안전사고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소유자의 관리의무 강화 및 구체화

○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날 경우 인식표 부착, 안전조치 등

※ 애완동물 사육 및 유기동물 발생현황 <참고 1>

3. 금지 되는 동물 학대행위의 범위 구체화 등(안 제6조 개정)

□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지되는 동물학대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범위도 확대

4. 동물 운송에 따른 보호규정 신설(안 제6조의 2 신설)

□ 동물을 차량으로 운송하는 도중 상해를 입거나 질식사하는 등 보호가 미흡함에 따라 동물의 운송시 적합한 사료의 공급, 난폭운전의 금지 및 상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차량의 사용 등 준수사항 신설

5.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보호시설 설치 의무화(안 제7조의 2 신설)

□ 유기동물에 의한 쓰레기 봉투 훼손 등 생활불편 및 질병전파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적합한 기준의 보호시설을 갖추도록 함으로서 유기동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6. 동물보호 감시관 및 명예 감시관제 도입(안 제12조 신설)

□ 동물 학대행위 근절을 위하여는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외에도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감시 근거규정 마련

Ⅲ. 전문위원 지적사항 및 우리부 검토의견

지 적 사 항	검 토 의 견
<p>○ 동물정의를 소, 말, 돼지, 개 등 기타 <u>농림부령</u>으로 정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 (안 제2조제1호 관련)</p>	<p>○ 수용</p> <p>- 부처간 의견조율 및 국민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 보다 신중한 판단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p>
<p>○ 인식표를 부착시키는 등의 대상 동물을 등록대상 동물에 한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안 제5조제6항 관련)</p>	<p>○ 수용</p> <p>- 소유자 등에 대한 책임 관계를 분명히 하도록 등록대상 동물을 별도로 정의 필요</p>

IV. 예상쟁점 및 답변방향

○ 이 법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되어 있는데 동물등록제 시행이 가능한지?

- 등록대상 동물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등록절차, 수수료 등은 시·도 조례로 정할 사항임
- 법시행과 동시에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시·도를 배려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 과정에서 지자체 조례 준비작업도 동시에 진행하고자 함

<참고 1>

애완동물 사육 및 유기동물 발생현황

(단위 : 두)

시·도	년도별	사 육 현 황					유 기 동 물 발 생			
		가구수	사 육 두 수				계	개	고양이	기타
			계	개	고양이	기타				
서울	2002	143,442	223,356	166,356	57,000	-	3,404	2,154	1,242	8
	2003	149,425	234,334	174,334	60,000	-	7,389	5,085	2,292	12
	2004	143,919		166,400			15,678	12,827	2,851	-
	2005	141,128		163,878			17,577	14,679	2,822	76
부산	2002	26,445	40,978	36,363	4,420	1,377	531	435	95	1
	2003	28,929	49,103	43,238	5,240	1,325	908	754	139	5
	2004	26,436		43,655			2,261	2,443	112	-
	2005	27,969		46,027			3,785	3,633	148	4
대구	2002	38,382	52,092	48,983	2,909	200	1,201	1,053	138	10
	2003	41,518	55,070	51,801	3,019	250	1,696	1,496	190	10
	2004	15,340		32,199			1,750	1,637	113	-
	2005	15,389		30,207			2,766	2,396	353	17
인천	2002	32,864	45,661	43,916	1,715	30	273	250	23	-
	2003	38,966	56,848	54,951	1,857	40	787	735	52	-
	2004	55,916		94,944			2,555	2,443	112	-
	2005	52,056		86,751			4,666	4,417	249	-
광주	2002	17,000	21,100	21,000	100	-	615	604	237	74
	2003	18,000	23,100	23,000	100	-	767	601	106	60
	2004	18,052		29,082			1,264	1,119	145	-
	2005	16,887		27,708			1,566	1,441	125	-
대전	2002	9,990	19,217	18,657	510	50	220	208	10	2
	2003	10,447	19,145	18,375	700	70	477	454	21	2
	2004	10,597		29,266			696	689	7	-
	2005	14,397		28,438			987	954	30	3
울산	2002	6,010	26,869	-	-	-	92	90	2	-
	2003	6,485	26,062	-	-	-	466	444	21	1
	2004	7,125		30,156			1,560	1,477	83	-
	2005	6,897		26,561			2,275	2,105	6,817	-

<12. 상임위 처리법안 설명자료 작성 예시문 ②의원발의안>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08.6.14 김명주의원 발의)

I. 개정안 요지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설치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 유효기간제의 도입
- 재량행위 투명화 계획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 관련 조문 삭제
- 정기심사 수수료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II 개정안 주요내용 검토

1.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HACCP기준원)의 설치(안 제9조의2)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을 법에 명시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로 담당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나, 공익적 국가 위탁업무를 정부 감독하에 일관되게 관리하는 법적인 조직으로 설치하기 위함

☞ 검토의견 : 수용

- 사단법인으로는 공신력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국가 예산의 지속적 지원과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특수법인화 필요
- ※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참고 1>

2. HACCP적용작업장등 지정시 유효기간제 도입 (안 제9조의3)

- 현재는 HACCP적용작업장으로 지정시 그 지정효력이 계속되나,
 - HACCP제도의 지속적인 발전과 식품안전 수준 향상 등에 따라 관리기준이 변경되어야 하므로 HACCP지정시 그 유효기간을 도입하기 위함

☞ 검토의견 : 수용

- HACCP 제도의 질적 향상과 식품환경 및 소비자 의식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HACCP 지정 유효기간제 도입 필요
 - ※ 타 인증제도의 인증 유효기간제 운용 사례 <참고 2>

3. 조건부 허가 및 조건이행의 신고 조문 삭제(안 제23조)

- 재량행위 투명화 계획 등에 따라 영업장 조건부 허가 조문 삭제
 - 법 제22조에 영업의 허가 요건이 투명하게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건부 허가의 필요성이 없음

☞ 검토의견 : 수용

- 법 제22조에서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01~'06년간 조건부 영업허가 실적이 매우 미미(영업허가 건수 2,300여 건 중 4건)하며, 조건부 허가의 경우에도 그 목적이 당초 취지와는 다른 용도(자금대출 등)로 이용되는 등 조문 존치의 실익이 없음
 - * 식품위생법에서도 조건부 허가 조문을 '00.1월에 삭제하였음
- 지자체 의견조회 결과 동 조문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4. HACCP적용작업장등의 정기심사 수수료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41조)

□ 정기심사에 대한 수수료 규정 없음

- 정기심사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여 소요경비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검토의견 : 수용

- HACCP 지정·관리 비용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필요가 있음
- HACCP 지정업무 확대 및 정기심사 업무 증대로 동 업무 수행을 위한 소요인력 및 비용이 크게 증가
- 정부지원이 연차적으로 감축될 예정이며, 최초 HACCP 지정 시 수수료만으로 관리비용을 충당할 경우 신규 지정신청자에게 과도한 비용부담 불가피 및 HACCP 적용 기피 우려

※ 국내외 축산물HACCP운영 현황 <참고 3>

※ 자립울별 소요예산 및 예상 지정수수료 <참고 4>

Ⅲ. 전문위원 지적사항 및 우리부 검토의견

지 적 사 항	검 토 의 견
<p>○ 기준원의 종전의 행위 등에 대한 경과규정 신설 필요 (안 제9조의2에 따른 경과규정)</p> <p>- 사단법인의 해산 및 재산 등의 승계에 관한 사항</p> <p>○ 지정 및 정기심사 수수료 금액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안 제41조 관련)</p>	<p>○ 수용</p> <p>○ 수용</p> <p>- 현재, HACCP 지정 수수료는 축산물 HACCP기준원장이 정하고 있음 (시행규칙 제58조제2항)</p>

IV. 예상쟁점 및 답변방향

○ 당초 HACCP기준원 설립시 왜 특수법인으로 추진하지 않았나?

- HACCP기준원 설립시 “특수법인”으로 추진(정부안 ‘05.11.8 국회 제출)하였으나, 상임위 일부 위원의 이견으로 인해 지정제로 수정의결됨

※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에서는 특수법인 필요성 인정

※ 당시 이견을 제기한 위원님은 지금 특수법인화 필요성 인정

○ 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차이점은?

- 국가예산의 안정적 지원으로 영업자 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 기관의 공공성 제고로 HACCP 지정 및 정기심사시 대외 신뢰성 제고

<참고 1>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HACCP 개요

- 개념 : 최종제품검사에 의존하던 기존 위생관리방식과는 달리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는 선진 위생관리 제도
 - ※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 축산물을 처리·가공하는 작업장에서 작업과정 중 발생되어 공중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인을 사전에 미리 파악하여 중점관리하는 제도
- 기대효과 : 축산물 유래질병 위험 감소 및 기본적인 위생사항에 대한 인식제고와 공중위생 향상으로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 증가

□ HACCP제도 도입 과정

- 도축장, 축산물 가공장 HACCP적용('97. 12)
 - '03. 7. 1 : 전국 도축장에 대해 HACCP 의무적용 실시
- 운반·보관·집유·판매에 대한 HACCP 도입 근거 마련('04. 1)
 - 운반·보관·집유업 HACCP 지침 및 모델개발 및 배포('07. 3)
- 사료 업체에서 운용할 HACCP 도입 근거 마련('01.3), '05년 적용
- 사육단계에 운용할 HACCP 도입 근거 마련('06.3)
 - 지침 및 모델개발 추진
 - 돼지 사육단계 HACCP 지침 및 모델 개발 완료('06.6)
 - 젓소·비육우('07) → 산란계·육계('08)
- * HACCP 지정 현황(가공·판매·농장, '07. 9. 7현재) : 589개 소

<13. 상임위 소위심사자료 작성 예시문>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

소위원회 심사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2008. 11. 00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목 차

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욱의원 대표발의)----- 292
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호의원 대표발의)----- 293
- 3~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6건)----- 294

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 대표발의)

구 분	개 정 내 용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	정부측 의견
<p>○ 수정사 자격 결격사유 (안 제11조제2 항제2호)</p>	<p>○ 현행 : “정신병자 또는 마 약류중독자” ○ 개정안 : “<u>수정사 업무수 행이 곤란한 정신질환자</u> 또는 마약 그 밖의 향정신 성의약품중독자로서 농림 부령으로 정하는 자”</p>	<p>○ <u>마약류중독자의 경우</u> : 수정사보다 업무수행 이 포괄적인 수의사의 경우에도 “직무수행의 적합성” 여부를 기준으로 자격결격사유를 정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u>개정안 타당</u> ○ <u>정신질환자의 경우</u> : 개정안은 운전면허 결 격사유의 예를 준용하고 있으나, 비교적 단순 한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운전면허자격과 달 리 수정사의 업무는 생명체에 대한 상당한 전 문지식을 요하고,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경우에도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범위를 한정 하지 않고 자격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u>현행 유지 필요</u></p>	<p>○ 검토의견 수용</p>

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호의원 대표발의)

구 분	개 정 내 용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	정부측 의견
<p>○ 동물의 정의 (안 제2조제2호)</p>	<p>○ 현행 : “어패류” 포함 ○ 개정안 : “어패류” 삭제</p>	<p>○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수의사와 수산질병관리사간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수산질병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p> <p>○ 다만, 국제관례나 이해관계인 간의 공감대 형성 및 관계 부처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p>	<p>○ 개정안 수용 곤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패류진료는 1974년부터 수의사의 업무영역이었으며, - 농림부에서는 수산질병관리의 질적 향상 도모와 수요자 선택권 확대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02년 수산질병관리제도 어패류를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 개정안에 대하여 우려부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사유를 관계부처에 적극 설명하고자 함

3~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6건)
(이명규의원 · 이계경의원 · 이영호의원 · 심재철의원 · 공성진의원 · 정부)

구 분	개 정 안	대체토론 및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정부측 의견
<p>1. “동물”의 정의 (공성진의원안 제2조제1호)</p>	<p>○ <u>현행</u></p> <p>- 소·말·돼지·개·고양이·토끼·닭·오리·산양·면양·사슴·여우·밍크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동물</p> <p>○ 개정안(공성진의원안)</p> <p>-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가축·개·고양이를 포함한 <u>모든 척추동물</u>과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p>	<p>○ 축산법 등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u>현행 방식</u>을 유지하되, 기타 동물의 포함 여부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기 위해 현행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변경할 필요</p> <p>○ “<u>등록대상동물</u>” 정의규정 추가 필요 :</p> <p>- 개정안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율대상이 각 조항별로 모든 동물에 대한 사항과 등록대상 동물에 대한 사항으로 구분되므로,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별도 정의규정을 추가할 필요</p>	<p>○ 검토의견 수용</p> <p>※ 대통령령에서 척추동물 중 포유류·조류·파충류를 대상으로 정의하고, 어류·양서류는 부처간 협의를 거쳐 범위를 결정</p>

구 분	개 정 안	대체토론 및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정부추 의견
<p>2. 동물 등록제 도입 (이영호의원안 제4조의2, 공성진의원안 제4조의3, 정부안 제4조의2 신설)</p>	<p>가. 등록의 절차와 방법 ○(이영호의원안) :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하도록 함. ○(공성진의원안·정부안) :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p> <p>나. 등록의 관할 ○(이영호의원안, 공성진의원안) : 소유자가 거주하는 시군에 등록 ○(정부안) : 동물소제지 시·군에 등록</p>	<p>○ 동물의 등록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되, 전국적으로 일정한 통일성도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본적인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세부사항은 자치단체가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p> <p>○ 소유자의 거주지와 동물소제지가 다를 경우에는 동물소제지에 등록하게 할 필요성도 있으나, 동물소제지를 특정하기 곤란하여 등록 및 수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거주지 시·군에 등록하게 하되, 농림부령이 정하는 일정시설을 갖추고, 소유자의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군에서 사육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설이 위치한 곳을 관할하는 시·군에 등록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p>	<p>○ 검토의견 수용</p> <p>○ 검토의견 수용</p>

<14. 상임위 수정안 예시문>

糧穀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8. 6. .

제안자 : 농림수산물위원회

수정이유 및 수정 주요내용

개정안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현행법 제12조의 위반사항 중 제1항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곡을 수입한 경우만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추천을 받지 않고 양곡을 수입한 경우도 양곡관리법상 의무위반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수정함.

糧穀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糧穀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1조 제1항 제1호 중 “허가”를 “허가 또는 추천”로 한다.

<u><신 설></u>	<u>가</u> 를 받지 아니	<u>가</u> 또는 추천을
	<u>하</u> 고 양곡을 수	-----
	<u>입·보관</u> 또는	-----
	<u>가공한</u> 경우	-----
	<u>2. ~ 10. (생략)</u>	2 ~ 10. (개정안과 같음)

糧穀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한광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883
----------	------

발의연월일 : 2008. 12. 28.

발 의 자 : 한광원 · 노웅래 · 김명주
김교홍 · 조일현 · 이시종
신중식 · 박찬석 · 장복심
이영호 · 신학용 · 김영덕
의원(12인)

제안이유

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허가대상 미곡 등의 수입시 사용용도 등을 명시하여 허가를 받도록 명확히 하며,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의 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기타 법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관리양곡의 판매용도를 관수용, 가공용, 공공용, 민수용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현실에 맞게 조정함(안 제9조제1항).

나. 허가대상 미곡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대상미곡등의 사용용도 등을 명시하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명확히 함(안 제12조 제1항).

다. 영업의 정지 또는 등록 취소 사유를 명확히 하고,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1조).

糧穀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糧穀管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糧穀管理法”을 “양곡관리법”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 중 “穀價調節用”을 “민수용”으로 한다.

1. 관수용
2. 가공용
3. 공공용
4. 민수용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제12조제1항 중 “米穀이나”를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이하 “양허세율”이라 한다)로 미곡이나”로, “農林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대상미곡등의 사용용도등을 명시하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중 “世界貿易機構(WTO)設立을위한마라케쉬協定에 따른 大韓民國 讓許表상의 市場接近物量에 적용되는 讓許稅率”을 “제1항의 양허세율”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登録을”을 “등록 또는 신고를”로,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동항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1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양곡을 수입·보관 또는 가공한 경우
2.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과대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6.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8.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9.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영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함에 있어 따로 주무관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주무관청에 대하여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의 요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第9條(政府管理糧穀의 販賣) ①農林部長官은 政府管理糧穀을 다음各號의 用途에 따라 販賣한다. 이 경우 農林部長官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用途에 대하여는 그 代金을 收納하기 전에 糧穀을 引渡할 수 있다.</p> <p>1. <u>官需用</u></p> <p>2. <u>救護用</u></p> <p>3. <u>穀價調節用</u></p> <p>4. <u>加工用</u></p> <p>5. <u>輸出用</u></p> <p>6. 第1號 내지 第5號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p> <p>② (생략)</p> <p>③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政府管理糧穀을 <u>穀價調節用</u>으로 販賣하는 경우로서 政府管理糧穀의 流通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公開入札의 方法에 의하여 販賣할 수 있다.</p> <p>④ · ⑤ (생략)</p>	<p>第9條(政府管理糧穀의 販賣) ①-----</p> <p>-----</p> <p>-----</p> <p>-----</p> <p>-----</p> <p>-----</p> <p>-----</p> <p>1. <u>관수용</u></p> <p>2. <u>가공용</u></p> <p>3. <u>공공용</u></p> <p>4. <u>민수용</u></p> <p>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용도</p> <p>② (현행과 같음)</p> <p>③-----</p> <p>----- <u>민수용</u></p> <p>-----</p> <p>-----</p> <p>-----</p> <p>-----</p> <p>-----</p> <p>-----</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第12條(米穀등의 輸入許可등) ①
 米穀이나 이를 原料로 한 粉碎物·粉末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糧穀(이하 "許可對象米穀등"이라 한다)을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 世界貿易機構(WTO)設立을 위한 大韓民國 讓許表상의 市場接近物量에 적용되는 讓許稅率로 許可對象米穀등이 아닌 糧穀을 輸入하거나 農林部令이 정하는 糧穀을 輸出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長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④ (생략)

第21條(營業停止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糧穀加工業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營業을 정지

第12條(米穀등의 輸入許可등) ①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이하 "양허세율"이라 한다)로 미곡이나 -----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대상미곡등의 사용용도 등을 명시하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양허세율 -----

③·④ (현행과 같음)

第21條(營業停止등) ① -----
 ----- 등록 또는 신고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하거나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따로 主務官廳이 있
을 때에는 당해 主務官廳에 대
하여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 다
만,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
가 또는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양곡을 수입·보관 또는 가공
한 경우

2.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
반하여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
반하여 거짓·과대의 표시 또
는 광고를 한 경우

6.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
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8.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신 설>

<신 설>

②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처분의 요청을 받은 主務官廳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 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9.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영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함에 있어 따로 주무관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주무관청에 대하여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의 요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15. 상임위 대안 예시문>

種子産業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08. 6. .

제안자 : 농림수산물위원회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5년 7월 19일 최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2006년 10월 23일 정부가 제출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 수산위원회(2007. 4. 17)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2007. 4. 19) 및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2007. 6. 7)에 서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중 일부사항을 수정 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26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2007. 6. 15)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국·공립학교의 품종보호권 소유와 그 활용에 따른 수익금 창출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교직원이 직무상 육성한 품종에 대하여는 국·공립학교가 품종보호권을 승계하도록 하고, 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 작물에서 사료용은 제외함으로써 다양한 사료용 품종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도록 하며, 자체보증능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농업협동조합 등이 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 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 자체보증을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종자 유통조사시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함으로써 민원 발생 소지 및 행정조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종자위원회에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조정기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공립학교의 품종보호권 승계(안 제24조 및 제25조)

- (1) 국·공립학교 교직원이 직무상 육성한 품종의 경우에도 그 품종 보호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어

국·공립학교의 품종보호권 소유 및 그 활용에 따른 수익금 창출 및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음.

(2) 국·공립학교 교직원이 직무상 육성한 품종의 경우 품종보호권은 당해 국·공립학교가 이를 승계하도록 함.

(3)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품종 연구개발 활성화와 품종보호권의 민간 이전 및 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 작물의 범위 축소(안 제114조)

(1) 국가품종목록의 등재를 위해서는 2년여의 성능검사 소요기간 동안 종자의 판매·보급이 어려우며, 총체보리와 같은 사료용 보리·옥수수 등의 보급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 작물중에서 사료용으로 하는 벼·보리·콩·옥수수·감자의 경우는 등재대상 작물에서 제외함.

(3) 사료용 벼·보리·콩·옥수수·감자는 2년여의 성능검사 소요기간이 필요 없게 됨으로써 품종개발·보급이 촉진되고, 농업인은 다양한 품종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가보증의 대상 축소(안 제125조제1항)

(1) 현재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이 국가품종목록등재 대상 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에도 국가보증을 받도록 하여 자체보증능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농업협동조합 등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국가보증의 대상을 농림부장관이 종자를 생산하거나 농림

부장관의 종자 생산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자체보증능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농업협동조합 등은 국가보증과 자체보증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

- (3) 지방자치단체나 농업협동조합 등이 종자를 생산할 때 자체보증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종자생산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종자유통조사시 조사 절차 개선(안 제145조)

- (1) 종자 유통조사시 단순히 조사원의 이름·소속 등이 기재된 증표만 제시함으로써 민원발생의 소지가 큼.
- (2) 증표제시 이외에도 조사목적, 시간, 조사자 신분 등을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함.
- (3) 조사목적, 시간, 조사자 신분 등을 서면으로 교부함으로써 민원발생의 소지를 예방하고 행정조사의 투명성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단속조사의 취지인 만큼 유통조사 현장에서 교부하도록 운용함이 바람직 함.

種子産業法 일부개정법률안

種子産業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種子産業法”을 “종자산업법”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중 “特許法”을 “「특허법」”으로 하고, 동조 전단중 “特許法”을 “「특허법」”으로,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으로 하며, 동조 후단중 “特許法”을 “「특허법」”으로, “特許法 第17條의 “第132條의3 및 第132條의4”는 “第92條 및 第93條”를 “「특허법」 제17조의 “제132조의3”은 “제93조”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한”을 “육성한”으로,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하게”를 “육성하게”로, “職務에 속하는 경우”를 “직무에 속하는 육성(이하 “직무상육성”이라 한다)일 경우”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國有財産法”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상육성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한다.

제25조의 제목 “(공무원의 職務상 육성등에 대한 보상)”을 “(공무원의 직무상육성에 대한 보상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담조직이”로, “職務상 육성

하거나 발견하여 개발한”을 “직무상 육성한”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중 “住所(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代表者의 姓名 및 營業所 所在地)”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로 하며, 동항제9호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양제 종자인 경우는 종자시료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제6항을 삭제한다.

- 중 략 -

제158조의7(위원회의 구성 등) 종자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67조중 “蠶業法”을 삭제하고, “담배事業法”을 “「담배사업법」”으로, “水産業法”을 “「수산업법」”으로, “人蔘産業法”을 “「인삼산업법」”으로 한다.

제168조의 제목중 “特許法”을 “「특허법」”으로 하고, 동조중 “特許法 第217條 내지 第220條”를 “「특허법」 제217조, 제218조 내지 제220조”로 한다.

제7조제1호중 “特許法”을 “「특허법」”으로 하고, 제74조중 “行政審判法”

을 “『행정심판법』”으로 하며, 제86조제2항중 “特許法”을 “『특허법』”으로 하고, 제105조제6항중 “特許法”을 “『특허법』”으로 하며, 제107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중 “特許法”을 각각 “『특허법』”으로 하고, 제170조제1항중 “特許法”을 “『특허법』”으로 하고, 제176조제3항제4호 내지 제6호중 “特許法”을 각각 “『특허법』”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非訟事件節次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種子産業法</u></p> <p>第10條(特許法 등의 準用) 品種保護에 관한 節次에 관하여는 <u>特許法</u> 第3條·第4條·第7條·第8條·第9條·第10條第1項·第2項 및 第4項·第13條·第14條·第17條 내지 第24條 및 <u>민사소송법</u> 第58條第2項·第59條·第63條·第87條·第88條·第92條·第94條·第9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u>特許法</u> 第13條의 “特許廳 所在地”는 “農林部 所在地”로, <u>特許法</u> 第17條의 “第132條의3 및 第132條의4”는 “第92條 및 第93條”로 본다.</p> <p>第24條(公務員의 職務상 育成등)</p> <p>①公務員이 <u>育成하거나 발견하여 개발한 品種이 성질상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業務範圍에 속하고, 그 品種을 育成하거나 발견하여 개발하게 된 행위가 公務員의 현재 또는 과거의 職務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品種에 대한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당해 公務員의 權利는 國家 또는 地方</u></p>	<p><u>종자산업법</u></p> <p>第10條(「<u>특허법</u>」 등의 準用) ----- -----<u>「특허법」</u>----- ----- ----- -----<u>「민사소송법」</u>----- ----- -----<u>「특허법」</u>----- ----- -----<u>「특허법」 제17조의 “제132조의3”은 “제93조”</u>-----.</p> <p>第24條(公務員의 職務상 育成등)</p> <p>①----- <u>육성한</u>----- ----- ----- -----<u>육성하게</u>----- ----- -----<u>직무에 속하는 육성(이하 “직무상육성”이라 한다)일 경우</u>----- -----</p>

1. 品種保護出願人の 姓名 및 住所
(法人인 경우에는 그 명칭, 代表
者の 姓名 및 營業所 所在地)

2. ~ 8. (생 략)

9. 品種의 사진 및 試料

10. (생 략)
②·③ (생 략)

第27條(優先權의 主張) ① ~ ⑤
(생 략)
⑥第5項 但書의 경우에는 農林
部長官은 優先權을 主張한 者에
게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
여 出願된 品種(이하 “出願品種”
이라 한다)의 審査에 필요한 資料
를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을 주어야 한다.

- 中 략 -

<신 설>

第164條(書類의 보관 등) ①·②

1.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 8. (현행과 같음)

9. 품종의 사진 및 시료. 다만,
영양체 종자인 경우는 종자
시료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0.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第27條(優先權의 主張) ①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 中 략 -

제158조의7(위원회의 구성 등) 종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64條(書類의 보관 등) ①·②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국가보증의 대상을 농림부장관이 종자를 생산하거나 농림부장관의 종자 생산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증과 자체보증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 및 제3호의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1) 개정안은 지자체가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생산할 경우 국가보증 또는 자체보증을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음. 국가보증을 받을 것인가 자체보증을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지자체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므로 객관적 추정이 어려움
- (2) 현행 국가보증에 소요되는 총 예산규모가 1.3억원 수준에 불과하며, 국가보증 물량 중 지자체 생산분은 총 37,334ton 중 3,800ton에 불과하므로, 이 물량이 모두 자체보증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연평균 1억원 미만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4. 담당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홍성현 입법조사관(02-788-2960)

<16. 법사위 상정안건의 주서본 예시문>

人蔘産業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07. 4. .
제안자 : 농림수산물위원회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5년 7월 14일 김종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人蔘産業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5월 3일 박승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人蔘産業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0월 19일 정부가 제안한 「人蔘産業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2007. 4. 17)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7. 4. 19)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다.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2007. 4. 20)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인삼산업법」에서는 홍삼·백삼·태극삼은 검사를 받은 제품에 한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로 인해 고가의 인삼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인삼류 제조업자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은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및 취소요건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어 법률상 재량권 행사의 근거가 미흡할 뿐 아니라 기업활동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정 및 취소요건을 법률에 명시하여 소비자 피해방지와 행정권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원산지 표시 의무화(안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인삼류 제조업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인삼류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나. 인삼류 제조기준 준수여부 확인방법의 개선(안 제15조제3항, 안 제29조)

인삼류 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조사요건을 “인삼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정토록 하므로써,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행정조사에 대한 기업부담을 경감함.

다.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요건 강화(안 제17조의2제1항 신설)

인삼의 종류별 자가제조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하여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므로써, 유통되는 인삼류의 품질향상으로 소비자의 만족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함.

라. 인삼류 자체검사대상 확대(안 제17조의2제2항 단서 신설)

수출용인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제조하지 아니한 인삼류에 대하여도 자가상표를 부착하고 자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인삼류의 수출 확대를 도모함.

마. 검사원에 대한 교육의 의무화(안 제17조의5제3항 및 제4항 신설)
검사원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인삼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 검사원의 검사능력 향상을 도모함.

人蔘産業法 일부개정법률안

人蔘産業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人蔘産業法”을 “인삼산업법”으로 한다.

제2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8호의2중 “食品衛生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食品등의 公典”을 “「식품위생법」 제12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公典)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공전”으로 한다.

7의2. “원산지”라 함은 인삼이 생산된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耕作技術”을 “경작 및 검사기술”로, “人蔘製品”을 “인삼제품류”로 한다.

①농림부장관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성향상·수출촉진·유통개선·가격안정 및 품질검사와 연구개발 등 인삼산업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시장”을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인삼류를 제조하는 자는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연근별로 구분하여 제조하고 당해 제품이나 그 용기·포장 등에 해당 연근 및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산지의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농림부장관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인삼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준수에 관한 자료를 제출·보고하게 하거나 관계직원을 제조업소에 출입시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단서를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로 신설하며, 동항제2호중 “연근을 허위로 표시한 때”를 “연근 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때”로 하며,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4. 이 조에 ~~의한~~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

- 중 략 -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거나 인쇄한 검사품의 포장을 뜯어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거나 그 내용물이나 포장단위를 변경한 자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제17조제9항”을 “제17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5호중 “제17조제6항”을 “제17조제4항”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제17조제7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하며, 동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록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인삼류검사기관과 자체검사업체

7.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17조의5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검사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검사원이 검사한~~ 자체검사업체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체검사업체에 ~~관한~~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2조(人蔘類製造業 및 人蔘製品類製造의 신고 등) ①人蔘類製造를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製造場을 管轄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人蔘耕作者가 자가 生産한 水蔘을 原料로 하여 自家製造한 紅蔘·太極蔘 또는 白蔘을 輸出 또는 都賣의 目的으로 蒐集하는 者(이하 “蒐集者”라 한다)에게 販賣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⑥ (생략)

第15條(人蔘類의 製造基準등) ①人蔘類를 제조하는 자는 紅蔘·太極蔘 또는 白蔘을 年根별로 구분하여 製造하고, 당해 製品이나 그 容器·포장 등에 해당年根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人蔘類製造業 및 人蔘製品類製造의 신고 등) ①-----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② ~ ⑥ (현행과 같음)

第15條(人蔘類의 製造基準등) ①인삼류를 제조하는 자는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연근별로 구분하여 제조하고 당해 제품이나 그 용기·포장 등에 해당 연근 및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산지의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3. (생략)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③ (생략)

- 중략 -

第31條(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 3. (생략)

<신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 3. (생략)

4. 제1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압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이 조에 ^{따른} ~~의한~~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

②·③ (현행과 같음)

- 중략 -

第31條(罰則)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체 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거나 인쇄한 검사품의 포장을 뜯어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거나 그 내용물이나 포장단위를 변경한 자

②---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7조의4제2항-----

-----.

5. (현행과 같음)

第33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 4. (생략)

<신설>

5. 제17조제6항의 規定에 위반하
여 自體檢査畢證을 붙이지 아
니하거나 印刷하지 아니하고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販賣
한 者

6. 제17조제7항의 規定에 위반하
여 自體檢査成績書 등을 제출
하지 아니한 者

<신설>

<신설>

8. (생략)

第33條(過怠料) ①----각 호의 어

느 하나-----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
기록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인삼
류검사기관과 자체검사업체

5. 제17조제4항-----

6. 제17조제5항-----

7.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17조의5제3항에 따른 교육
받지 아니한 검사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을 받지 아니한 검사원이 검사
한 자체검사업체

9. (현행 제8호와 같음)

<17. 의원발의안 관련 : 법제처에 부처간 의견협의 결과 통보서>

부처간 의견협의 결과

제출부처 :

법률안명			
의안번호		발의일자	
발의자		국회 심사 진행 상황	
소관위원회 (소관부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정부제출 법률수정안인 경우 원안 및 수정안 별첨		
주요 쟁점사항	○		
소관부처 검토의견	○ 검토의견 ※ 세부검토의견 : 별첨		
	(소관부처명 기재)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관련부처 검토의견	○ 검토의견 ※ 세부검토의견 : 별첨		
	(관련부처명 기재)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의견협의 결과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협의결과 기재)		

<18. 의원발의안 관련 : 법제처에 의견협의 신청서 제출양식>

의견협의 신청서

신청부처:

법률안명			
의안번호		발의일자	
발의자		국회 심사 진행 상황	
소관위원회 (소관부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주요 쟁점사항	○ (협의를 필요한 사항을 기재)		
협의 필요사항	신청부처 검토의견	○	
		※ 세부검토의견 : 별첨	
		신청부처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관련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	
※ 세부검토의견 : 별첨			
	관련부처(소관부처)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19.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법률 현황>

실·국·청별 법률 현황(87개)

구분	법률	구분	법률
기획조정실 (1)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 낙농진흥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 소및쇠고기이력추적에관한법률 ○ 초지법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환경부 공동법률) ○ 가축전염병예방법 ○ 동물보호법 ○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 수의사법 ○ 공익수의사에관한법률 ○ 도축장구조조정법
농업정책국 (10)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 농지법 ○ 농작물재해보험법 ○ 농업협동조합법 ○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수산정책실 - 수산정책관 (8)	○ 수산업협동조합법 ○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 ○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 어선법 ○ 어촌어항법 ○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
농촌정책국 (8)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 농어촌정비법 ○ 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 ○ 방조제관리법 ○ 새만금사업촉진에관한특별법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 어업자원관 (9)	○ 수산업법 ○ 어업자원보호법 ○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오염사고피해주민의지원및환경복원등에관한특별법(국토해양부 공동법률) ○ 기르느어업육성법 ○ 어장관리법 ○ 수산동물질병관리법 ○ 낚시어선업법 ○ 내수면어업법 ○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산업본부 - 식량정책관 (10)	○ 양곡관리법 ○ 양곡증권정리기금법 ○ 종자산업법 ○ 농업유전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 농업기계화촉진법 ○ 농어업재해대책법 ○ 식물방역법 ○ 농약관리법 ○ 비료관리법 ○ 친환경농업육성법	- 국제수산물 (2)	○ 원양산업발전법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유통정책단 (3)	○ 농수산물유통공사법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 인삼산업법	농촌진흥청 (3)	○ 농촌진흥법 ○ 한국농업대학설치법 ○ 한국4에이치활동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 식품산업 정책단(4)	○ 농산물품질관리법 ○ 식품산업진흥법 ○ 염관리법 ○ 염업조합법	산림청 (13)	○ 산림기본법 ○ 사방사업법 ○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 ○ 산림조합법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 산지관리법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 산림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 축산정책단 (16)	○ 축산법 ○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 한국마사회법 ○ 사료관리법 ○ 축산자조금의조성및운용에관한법률		

<20. 법령개정 소요일수(정부내 입법절차)>

필요 절차	내 용	소요기간 및 예외사항
법령안 작성	○ 소관부서의 법령안 작성 ○ 법령정비협의회를 거쳐 우리부안 확정	○ 약 15일 ~ 30일
부처협의 부패영향평가	○ 관련부처와 협의 ○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제도화	○ 10일 이상이 원칙 ※ 법제처와 협의후 단축 또는 생략가능
당정협의	○ 입안완료한 법령안에 대하여는 정당과 협의	○ 7일 ~ 10일
입법예고	○ 관보 등을 이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국민 에게 알림	○ 20일 이상이 원칙 ※ 법제처와 협의후 단축 또는 생략가능
공청회	○ 이해관계자가 많고 중요한 법령 대상	○ 7일 ~ 10일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신설·강화되는 규제심의	○ 약 20일 ~ 30일 ※ 규제신설이 없을 경우 기간단축 가능
법제처 심사	○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 약 30일 ~ 45일 ※ 사전 안전설명 등을 통해 기간단축 가능
차관회의	○ 차관회의 상정·의결	○ 7일 ~ 10일
국무회의	○ 국무회의 상정·의결	○ 5일
대통령재가	○ 대통령 재가·법제처 송부	○ 7일 ~ 10일
최 소 소요기간		○ 3개월 ~ 6개월

<21. 농림수산식품 법령정보 관련 사이트 안내>

- 농림수산식품부(<http://www.mifaff.go.kr>)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 정보광장 → 법령정보”에서 우리부 소관 법률, 최근 제개정 법령, 훈령·예규·고시 등을 확인 가능
- 대한민국국회(<http://www.assembly.go.kr>)
 - 국회 본회의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농림수산식품위원회(<http://agri.na.go.kr>)
 -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의원발의·정부안)현황, 위원회 일정 등을 확인 가능
- 법제사법위원회(<http://legislation.na.go.kr>)
 -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현황, 위원회 일정 등을 확인할 가능
-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 국회에서 처리되었거나 처리중인 의안(법안 등)을 쉽게 검색 가능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및 종합법령정보센터(<http://www.klaw.go.kr>)
 - 우리부 소관·타부처 소관 법령 및 연혁법령 등을 손쉽게 검색 가능
- 법제처(<http://www.moleg.go.kr>)
 - 우리부 소관 훈령·예규·고시를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 가능 (우리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는 법제처 사이트와 링크되어 있음)
- 대한민국영문법령(<http://elaw.klri.re.kr>)
 -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우리부 법령을 포함한 각종 영문법령 검색 가능. 영문법령은 로그인후 검색할 수 있는데 회원ID와 비밀번호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문의 요망
-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 전자관보를 통하여 공포되는 각종 법령·고시·입법예고안 등 확인 가능

부록 3

입안시스템 및 입안편집기 사용자 설명서



Cont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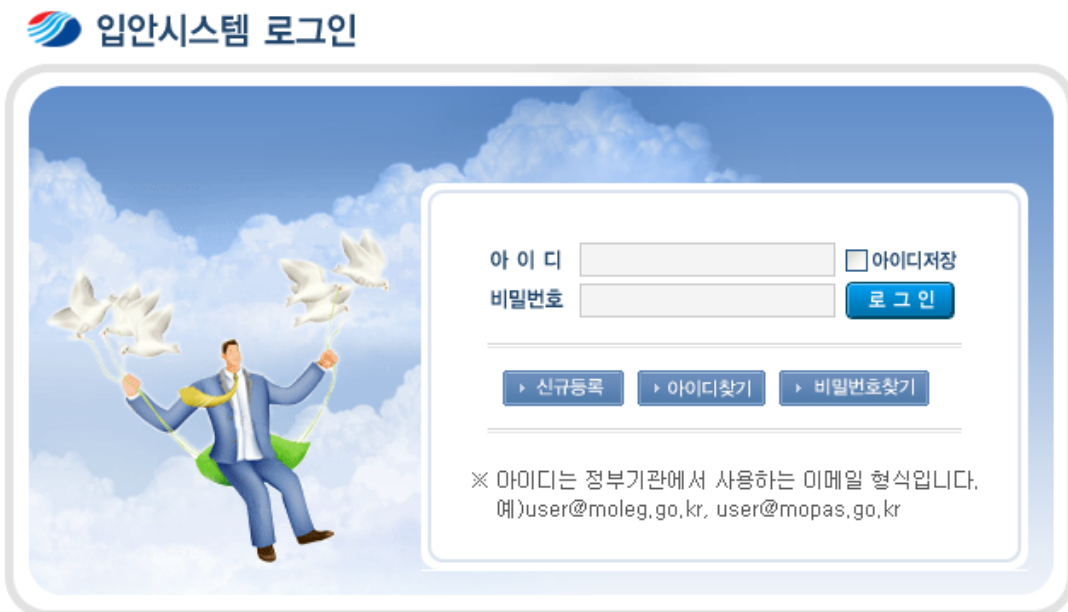
입안시스템 및 입안편집기 사용자 설명서	01	입안편집기 설치	343
	02	입안시스템 사용자 등록	345
	03	입법계획의 수립 및 제출	347
	04	법안정보카드 생성 및 입안 절차	352
	05	법령안 작성	356
	06	부처협의 요청 및 의견 수렴	378
	07	심사의뢰 및 수정·철회	381
	08	문서관리카드 작성 및 결재의 반영 ...	387

01 입안편집기의 설치

법령안 작성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입안편집기 설치과정을 설명합니다

자바가상머신 설치

입안시스템의 법령안 편집기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인터넷 브라우저에 자바가상머신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안시스템 로그인화면 필수 설치 프로그램 목록에서 **자바가상머신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설치합니다.



필수 설치 프로그램

- 자바가상머신 다운로드
- 입안편집기 설치파일 다운로드
- 입안시스템 사용자 메뉴얼 다운로드

문의처 ※ 동영상을도움말 보기

운영총괄	장학기 사무관 / 02-2100-2572 / jd15327@moleg.go.kr
입안시스템	입안시스템 담당 / 02-722-6532
입안편집기	입안편집기 담당 / 02-722-6532

01 입안편집기 설치 이어짐



입안편집기 설치

입안시스템의 법령안 작성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법령안 편집기를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입안시스템 로그인 화면 혹은 메인화면의 좌측 하단에 있는 **입안편집기 설치파일 다운로드** 버튼을 선택하여 입안편집기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입안편집기 설치파일(BillEditorSetup.exe) 파일을 사용자의 PC로 다운 받고 실행하여 입안편집기 설치를 진행합니다.



약관을 살펴보고, 설치순서에 따라 설치를 진행하여 완료합니다

02 | 입안시스템 사용자 등록

입안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등록 절차를 설명합니다

개요

입안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등록과정이 필요합니다. 해당 부처에서 사용하는 이메일을 아이디로 하여 등록하여 온나라시스템과의 사용 승인이 되어야지만 온나라시스템 연계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온나라시스템 인증이 되지 않을 경우 온나라시스템 연계기능만 사용할 수 없으며 입안시스템 사용은 가능합니다.

시스템 접속

1) 입안시스템 (<http://www.eglaw.go.kr>) 으로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사용자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입안시스템 로그인



아이디 아이디저장
비밀번호

※ 아이디는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이메일 형식입니다.
예) user@moleg.go.kr, user@mopas.go.kr

필수 설치 프로그램

-  자바가상머신
다운로드
-  입안편집기 설치파일
다운로드
-  입안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다운로드

문의처

※ 동영상도움말 보기

- 운영총괄 장학기 사무관 / 02-2100-2572 / jd15327@moleg.go.kr
- 입안시스템 입안시스템 담당 / 02-722-6532
- 입안편집기 입안편집기 담당 / 02-722-6532

2) [신규등록] 버튼을 선택하여 사용자등록화면으로 이동합니다

02 입안시스템 사용자 등록 이어짐

○ 사용자등록

소속기관 및 부서 *	<input type="text"/>	기관조회
사용자아이디 * (이메일주소)	<input type="text"/>	아이디인증 ※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형태이어야 하며 메일확인이 가능한 이메일주소를 입력하십시오. 예) abc@moleg.go.kr
성명 *	<input type="text"/>	
비밀번호 *	<input type="text"/>	6~12자의 영문 소문자와 숫자만 사용할수있습니다.
비밀번호 확인 *	<input type="text"/>	비밀번호를 한번 더 입력하십시오. 비밀번호를 잊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위 *	<input type="text"/>	
전화번호	<input type="text"/>	예) 02-2100-0000
팩스번호	<input type="text"/>	예) 02-2100-0000
법제부서여부	<input type="checkbox"/> 소속부서가 법제담당부서인 경우만 체크하십시오.	

[등록요청](#)

[취소](#)

3) 사용자등록화면에서 사용자 정보 입력을 마친 후에 [등록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 등록이 완료되어 [사용자로그인]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용자등록

※ 사용자 등록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이디: **user@mopas.go.kr**

사용자명 : 홍길동

부서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로그인 후 입안시스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로그인](#)

4) 등록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키보드의 엔터를 누르거나 [로그인]을 선택하면 입안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가. * 표시 항목은 필수입력 사항입니다

나. 사용자 아이디는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이메일주소 형식이어야 합니다

예) abc@moleg.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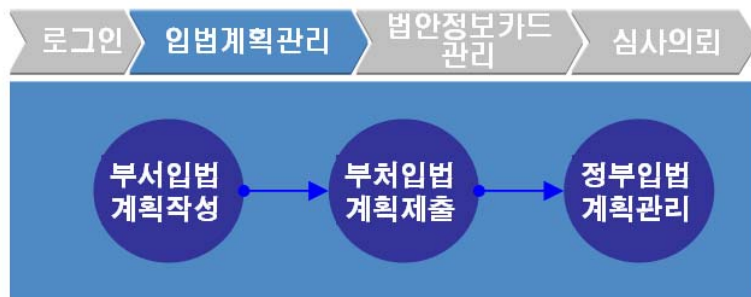
다. 해당기관의 온나라시스템이 있는 경우 이메일주소 인증 작업을 거쳐 사용자임이 확인되면 입안시스템에서 문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해당 온나라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03 입법계획의 수립 및 제출

연초입법계획의 작성 및 제출 과정과 정부입법계획을 조회하고 수정철회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개요

법제처에서 매년 11월 입법계획 수립 지침을 각 부처로 배포하면 각 부처에서는 연간입법계획을 수립하여 법제처로 제출합니다. 입안시스템에서는 각 부처의 입안담당자가 입법계획 작성하고 부처의 법제담당부서는 부처의 입법계획을 취합하여 제출하며 법제처에서 확정된 정부입법계획을 조회하고 그에 대한 수정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부서입법계획 작성

입안시스템의 메뉴의 “입법계획 > 부서입법계획” 메뉴를 선택합니다. 부서입법계획 목록조회 화면의 [등록] 버튼을 선택하여 부서입법계획 등록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1) 입법형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 입법계획년월 등 입법계획에 대한 각 항목을 입력합니다. 입법형식이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인 경우 반드시 [법령명확인] 버튼을 선택하여 나타나는 법령조회화면에서 선택하여 법률명을 입력합니다.
- 2) 입법계획 요약정보 등을 입력한 후 입법계획 파일 정보의 [찾아보기]를 선택하여 사용자 PC의 입법계획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 3) 입법계획이 저장되면 상세조회화면으로 이동되며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소속부처의 법제담당부서로 입법계획을 제출합니다.

03 입법계획의 수립 및 제출 이어짐

[입법계획 등록 화면]

03 입법계획의 수립 및 제출 이어짐

[입법계획 법제부서 제출 화면]

➔ 부서입법계획 상세조회

● 입법계획 개요

입법형식	일부개정	입법계획년월	2008년 02월
법률명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유형	연초계획	입법계획기간유형	연간
알기쉬운법령	해당없음	예산부수여부	해당없음
제안관서	행정안전부	소관부서	행정안전부 국제협력팀
		담당자	김행정 (cns1@mopas.go.kr)
입법계획상태	부서입법계획 수립		

● 입법계획 요약정보

입법추진배경	입법 추진 배경을 입력합니다.
주요내용	주요내용을 입력합니다.
	1. 주요내용 2. 주요내용
비고	

● 입법계획 파일정보

입법계획 문서	문서.hwp (v1.0) ▶ 파일다운로드
----------------	---

▶ 이력조회
▶ 문서관리카드
▶ 온라인 보고
▶ 삭제
▶ 제출
▶ 수정
▶ 목록

부처입법계획 취합 및 제출

부처입법계획 메뉴에서는 각 부처의 법제담당부서에서는 각 입안담당자가 제출한 입법계획을 취합하여 법제처로 제출하는 업무를 지원합니다. 입안시스템의 메뉴에서 “입법계획 > 부처입법계획”을 선택하면 부처입법계획관리 화면이 나타나고 부처입법계획은 법제업무담당권한을 부여받아야 사용가능합니다.

- 1) 부처입법계획 목록의 제출된 입법계획을 조회하여 검토한 후 검토 완료된 항목에 대해서 체크박스를 선택한 후 [확정] 버튼을 선택하여 “취합”상태로 변경합니다.
- 2) 부처입법계획 취합 담당자는 직접 내용을 수정하거나[반려]버튼을 이용하여 입법계획작성 담당자에게 반려할 수 있습니다. 단, 취합상태일 경우는 [확정취소]를 선택하여 확정 상태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 3) 취합 상태인 입법계획을 모두 법제처로 제출하려면 부처입법계획 목록조회에서[법제처제출] 버튼을 선택합니다. 법제처 제출은 부처입법계획이 모두 “취합”상태여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제출되지 않습니다. 부처입법계획이 전부 “취합” 상태인 경우 부처입법계획이 전부 법제처로 전송됩니다.

03 입법계획의 수립 및 제출 이어짐

[입법계획 법제처 제출 화면]

➔ 부처입법계획 목록조회

○ 제안관서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소관부서 전체 계획년도 2008

상태 기간유형 범용명 ▶ 검색

전체계서물 : 1 (1 / 1)

	번호	부서	상태	기간유형	파일
<input type="checkbox"/>	1	[일부개정] 포항조업 및 포항연계조업법	취합	연간	입제... 법무담...

▶ 확정 ▶ 확정취소 ▶ 반려 ▶ 법제처 제출

※ 입법계획의 제출

- 부서입법계획단계 : 부서입법계획 작성(부처의 입안담당부서) -> 법무담당부서로 "제출"
- 부처입법계획단계 : 입법계획 확정(부처의 법제업무담당부서) -> "법제처제출"
- 정부입법계획단계 : 해당 부처를 포함한 전 부처의 확정된 입법계획을 조회하여 추가, 수정, 철회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처제출"은 확정된 입법계획 전부 제출됩니다.

03 입법계획의 수립 및 제출 이어짐

정부입법계획 관리

부처입법계획에서 법제처로 제출하면 정부입법계획목록조회에서 조회할 수 있고 법제처에서 정부입법계획으로 확정정보가 전송되면 제출한 입법계획의 상태가 정부입법계획으로 변경됩니다 정부입법계획으로 확정된 입법계획에 대해 다시 수정 혹은 철회할 수 있습니다

- 1) 정부입법계획 목록조회에서 수정요청할 입법계획의 체크박스에 선택한 [취소요청] 버튼을 선택하면 입법계획 수정화면으로 이동되어 입법계획 내용과 파일을 수정합니다 수정 저장된 입법계획은 부서입법계획 목록조회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초기 부서입법계획 등록 절차와 동일하게 법제부서로 제출취합 상태를 거쳐 다시 법제부서에 의하여 법제처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철회요청 및 추가요청도 동일한 절차에 의해 작성됩니다.

→ 정부입법계획 목록조회

제안관서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소관부서
 전체
 계획년도
 2008
 상태
 기간유형
 법률명
 > 검색

전체개시물 : 9 (1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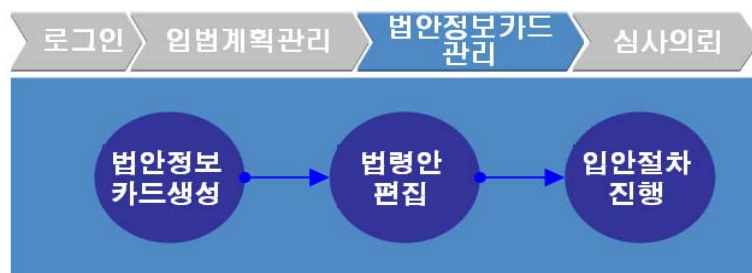
번호	법률안명	제안관서	주요일정			상태	기간유형	파일
			법제처제출	국회제출	시행			
<input type="checkbox"/> 1	[제정] 통합테스트법	경찰청	2008.05	2008.06	2008.09	제출	연간	
<input type="checkbox"/> 2	[일부개정]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	행정안전부	2008.02	2008.02	2008.02	제출	연간	
<input type="checkbox"/> 3	[일부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	행정안전부	2008.02	2008.02	2008.02	제출	연간	
<input type="checkbox"/> 4	[일부개정]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	행정안전부	2008.02	2008.02	2008.02	제출	연간	
<input type="checkbox"/> 5	[일부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	경찰청	2008.02	2008.02	2008.02	제출	연간	
<input type="checkbox"/> 6	[일부개정]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	행정안전부	2008.02	2008.02	2008.02	철회확정	연간	
<input type="checkbox"/> 7	[일부개정] 전자금융거래 수정법	행정안전부	2008.02	2008.02	2008.02	수정확정	연간	
<input type="checkbox"/> 8	[일부개정] 國家地理情報體系의構築...	행정안전부	2008.02	2008.02	2008.02	수정확정	연간	
<input type="checkbox"/> 9	[일부개정] 방위사업법	행정안전부	2008.02	2008.02	2008.02	철회확정	연간	

04 법안정보카드 생성 및 입안 절차

법령안을 작성하기 위한 법안정보카드를 생성하고 입안 절차별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개요

입안시스템에서 법령안을 작성하기 위해 법안정보카드를 생성하여 관리합니다. 법안정보카드가 등록되면 이를 선택하여 편집기를 이용한 법령안 편집 및 입안 절차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안정보카드 생성

1) 입안시스템의 메뉴의 “법령입안 > 법령안관리” 메뉴를 선택하면 같은 부서에서 등록한 법령안 목록 조회화면이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심사의뢰를 등록하지 않은 전체 부처의 법안정보카드가 모두 조회됩니다. 심사의뢰 이후의 법안을 조회하려면 [전체진행상태보기] 에 체크하거나 입안시스템 메뉴의 “법령입안 > 법령안심사의뢰” 에서 해당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안정보카드를 등록하려면 목록조회 하단의 [법안정보카드작성] 버튼을 선택하여 법안정보카드 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법령안 목록조회

전체계시물 : 53 (1/6) 전체진행상태보기

번호	법령명	법종구분	법안진행상태	소관부서	담당자	처리일자
1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법령안입안단계	국제협력팀	김행정	2008.04.28
2	農水産物流通公社法	법률	법령안입안단계	국제협력팀	김행정	2008.04.24
3	사면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령안입안단계	국제협력팀	김행정	2008.04.23
4	공무원연금법	법률	법령안입안단계	국제협력팀	김행정	2008.04.21
5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령안입안단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신법무	2008.04.22
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법령안입안단계	조직제도과	신입안	2008.04.18
7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법령안입안단계	조직제도과	신입안	2008.04.18
8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부처협의단계	정보화팀	신관리	2008.04.16
9	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령안입안단계	성과관리팀	입안관리	2008.04.15
10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령안입안단계	창의혁신담당관	김법제	2008.04.14

1 [2] [3] [4] [5] [6] >>

▶ 법안정보카드 작성 ▶ 맨위로

04 법안정보카드 생성 및 입안 절차 이어짐

2) 법안정보카드 등록화면의 각 항목에 법안정보를 입력합니다

- 법률을 입안하려는 경우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입법계획이 함께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입법계획이 없는 경우 법령안 심사의뢰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먼저 입법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그러나 입법계획이 없더라도 법안정보카드는 등록이 가능하며 심사의뢰 전 입법계획을 정부입법계획으로 확정 받아 등록하여야 심사의뢰가 가능합니다. 입법계획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전부·일부 개정 및 폐지는 법령명을 [법령명확인] 버튼을 선택하여 나타나는 법령목록에서 선택합니다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

● 법안정보

법종구분	법률	입법형식	제정
입법계획			▶ 입법계획확인
법령명			
예산부수	<input checked="" type="radio"/> 해당없음 <input type="radio"/> 예산부수법안	미제출사유	해당사항없음
알기쉬운법령대상	<input checked="" type="radio"/> 해당없음 <input type="radio"/> 해당있음 ※ 알법대상이지만 알법대상목록에 없는 법령인 경우 "해당있음"으로 선택합니다. ※ 알법대상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하십시오.		▶ 알법대상확인
법제정비대상	※ 법제정비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하십시오.		▶ 법제정비확인

[법률 이외의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법종구분	대통령령	입법형식	제정
법령명			
알기쉬운법령대상	<input checked="" type="radio"/> 해당없음 <input type="radio"/> 해당있음 ※ 알법대상이지만 알법대상목록에 없는 법령인 경우 "해당있음"으로 선택합니다. ※ 알법대상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하십시오.		▶ 알법대상확인
법제정비대상	※ 법제정비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하십시오.		▶ 법제정비확인
상위법률	※ 상위법률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하십시오.		▶ 상위법률확인 ▶ 삭제

- 알기쉬운법령대상, 상위법률, 법제정비대상은 각각 법제처에서 별도로 관리되는 법령목록으로 입안하려는 법령이 알기쉬운법령대상인 경우 [알법대상확인] 버튼을 선택하고, 하위법령적이거나 법령 대상인 경우 [상위법률확인] 버튼에서 선택, 법제정비대상인 경우 [법제정비확인] 버튼을 선택하여 해당 목록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이 아니더라도 각각의 목록을 확인해야 법안정보카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제안권서는 각 법령에 해당하는 국무회의의 제출 권한을 가진 국무위원 기관의 장으로 있는 관서를 선택하고 소관부서는 실제 법령안을 작성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기본법의 경우 제안권서는 국무총리, 소관부서 및 담당자는 법안정보카드를 등록하는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작성담당자명이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등록됩니다
- 법안정보카드와 법령안 파일은 기본적으로 공개되어있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공개로 설정하면 법안정보카드와 법령안의 내용은 동일 부서에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는 법안카드 공개여부 및 법령안 공개여부를 변경함으로써 전체 비공개 및 전부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제안권서	행정안전부	소관부서	행정안전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홍길동
법안카드 공개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공개 <input type="radio"/> 비공개	법령안 공개여부	<input type="radio"/> 공개 <input checked="" type="radio"/> 비공개

04 법안정보카드 생성 및 입안 절차 이어짐

3) 법안정보카드가 등록되면 법안정보카드 상세조회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이때 상단의 [법령안작성/제출] 탭을 선택하면 법령안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법령안 작성 화면의 [법령안편집기] 버튼을 선택하면 법령안 편집기가 실행되어 법령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법령안 작성/제출

법안정보카드 **법령안 작성/제출** 부처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 법령안상세

법령명	공무원증규칙		
담당자	장학기	법령안보기	작성되지 않음
법령안처리상태	법령안작성중	법령안작성일자	2008.05.21
법령안편집	법령안이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 법령안편집기		
첨부문서	없음		

▶ 문서관리카드 ▶ 온라인 보고 ▶ 이력보기 ▶ 목록으로

이 때 아래와 같이 법령안 편집기 실행중이라는 화면이 나타나며 **법령안 편집 업무를 마친 후** [편집완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법령안의 작성방법은 "5. 법령안 작성"에서 설명)

관리자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법제정보과)님이 로그인하셨습니다. 사용자정보 Q & A 로그인

법령안입안 법령처 심사후 관리 입법계획 현황및통계 부가정보 운영관리 도움말

법령안관리 - 입안단계별관리 - 법령안사건조회 - 법령안심사의뢰

HOME > 법령안입안 > 법령안관리

법령안입안 ● 법령안 작성/제출

법안정보카드 **법령안 작성/제출** 부처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 법령안상세

법령명 담당자 법령안처리상태 법령안편집 첨부문서

공무원증규칙 장학기 법령안작성중 법령안이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없음

현재 법령안 편집기가 실행중입니다.
입안시스템 화면으로 돌아가시려면 법령안 편집을 마친 후 하단의 "편집완료"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완료

▶ 문서관리카드 ▶ 온라인 보고 ▶ 이력보기 ▶ 목록으로

Copyright©2007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4) 법령안 초안이 작성되면 부처협의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의 입안 절차를 각 탭을 선택하여 관련 업무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각 업무 절차 정보는 해당 탭을 선택하여 각 업무 절차에 대한 상태 정보와 첨부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가) 부처협의

작성된 법령안에 관계된 부처와 협의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부처협의 기간 정보 및 첨부파일을 등록하고, 타 부처에서 등록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부처협의 요청 및 의견 수령 참조)

나) 입법예고

- 입법예고 탭은 입법예고 기간을 입력하고 입법예고문 등의 첨부파일을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04 법안정보카드 생성 및 입안 절차 이어짐

→ 입법예고 등록

법안정보카드
법령안 작성/제출
부처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 입법예고

법령명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담당자	장학기
입법예고기간	2008.06.02 ~ 2008.06.23

● 입법예고 첨부문서

법령안	법령안:법령안.hwp(128.0KB) 파일다운로드
파일첨부	<input type="text"/> 찾아보기...
첨부목록	<div style="border: 1px dashed #ccc; height: 40px; width: 100%; text-align: center; padding-top: 5px;">파일첨부</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5px;"> 파일삭제 파일다운로드 </div>

[저장](#) [취소](#) [맨위로](#)

다) 규제심사 등

규제심사 등 탭에서는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당정협의 등 기타 입안절차에서 진행되는 첨부파일을 저장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규제심사 등 등록

법안정보카드
법령안 작성/제출
부처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 규제심사 등

법령명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담당자	장학기

● 규제심사 등 첨부문서

파일첨부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2px 5px; margin-right: 5px;">규제심사</div> <div style="flex-grow: 1; border-bottom: 1px solid #ccc; margin: 0 5px;"></div> <div style="margin-left: 5px;">찾아보기...</div> </div>
첨부목록	<div style="border: 1px dashed #ccc; height: 40px; width: 100%; text-align: center; padding-top: 5px;">파일첨부</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5px;"> 파일삭제 파일다운로드 </d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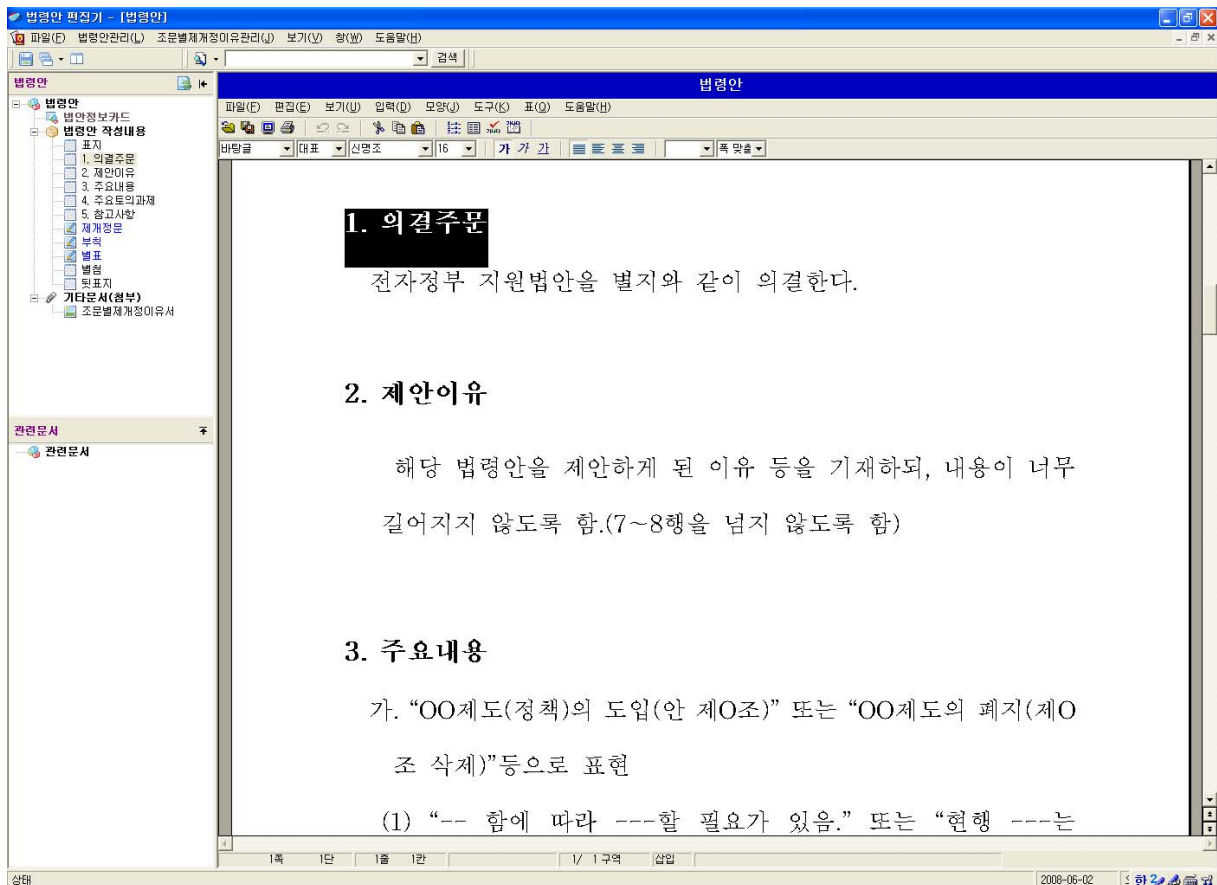
[저장](#) [취소](#) [맨위로](#)

05 [1]법령안 작성


법종구분에 따라 작성하는 의결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별첨과 첨부문서 관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의결서 작성

새 법령안이 생성되면 법종구분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에 따라 기본서식이 달리 제공되어집니다.
법률과 대통령령은 표지를 포함하며 나머지는 표지 없이 서식이 보입니다.
왼쪽에 생성되어지는 트리를 더블클릭 하여 해당되는 위치로 이동하여 내용을 작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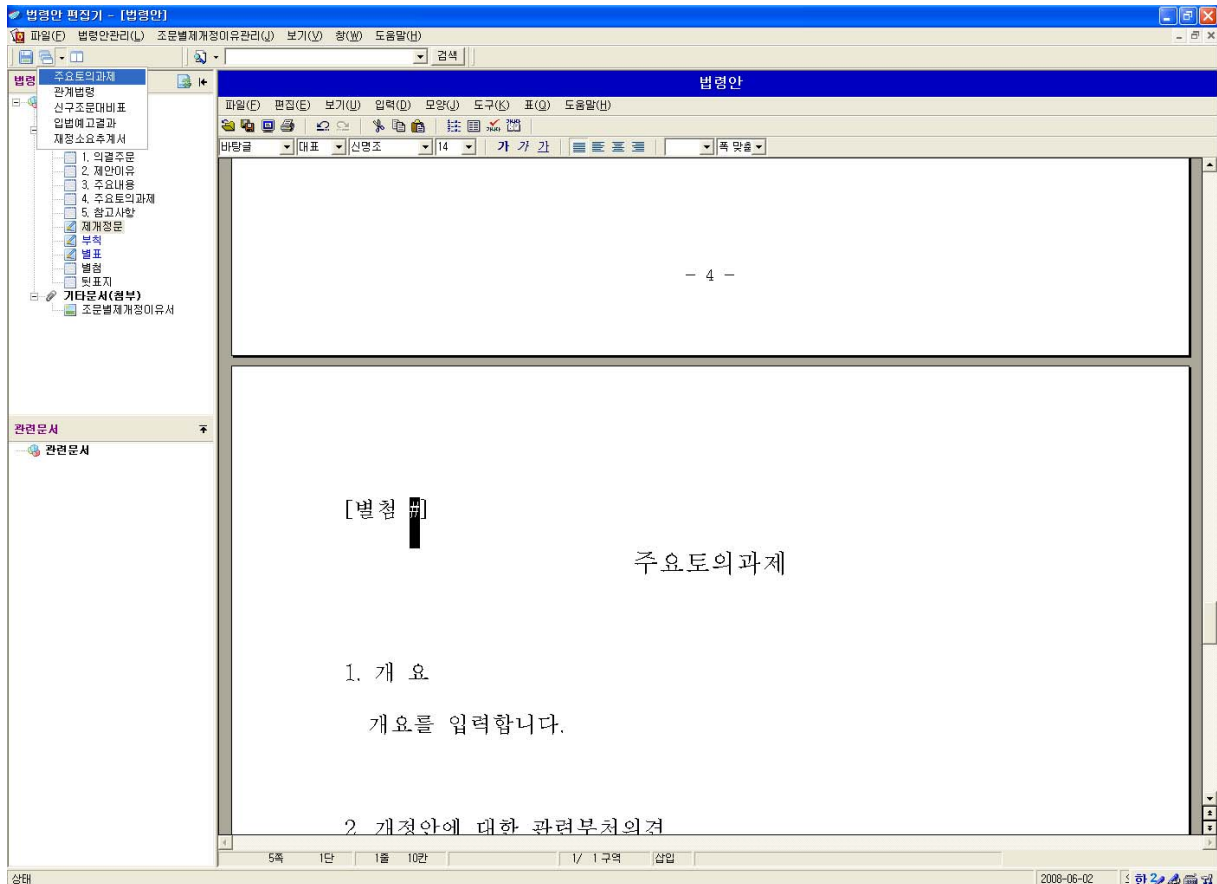
TIP

“1.의결주문”, “2.제안이유” 등의 문서에서의 소제목 이름이 변경이 된 경우(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으로 합쳐지는 경우, 번호가 바뀌는 경우)에는 법령안 트리 타이틀 바의  버튼을 이용하여 목록을 재생해 주시면 왼쪽 법령안 트리 목록이 재생됩니다.

05 법령안 작성 이어짐


별첨문서 관리

오른쪽 법령안에서 별첨을 추가할 위치에 커서를 두고 메인메뉴의 아이콘 중 별첨메뉴관리 아이콘을 클릭하여 해당위치에 삽입할 별첨을 선택합니다



선택을 하시면 해당 커서위치에 기본 서식 내용이 자동으로 삽입이 되어 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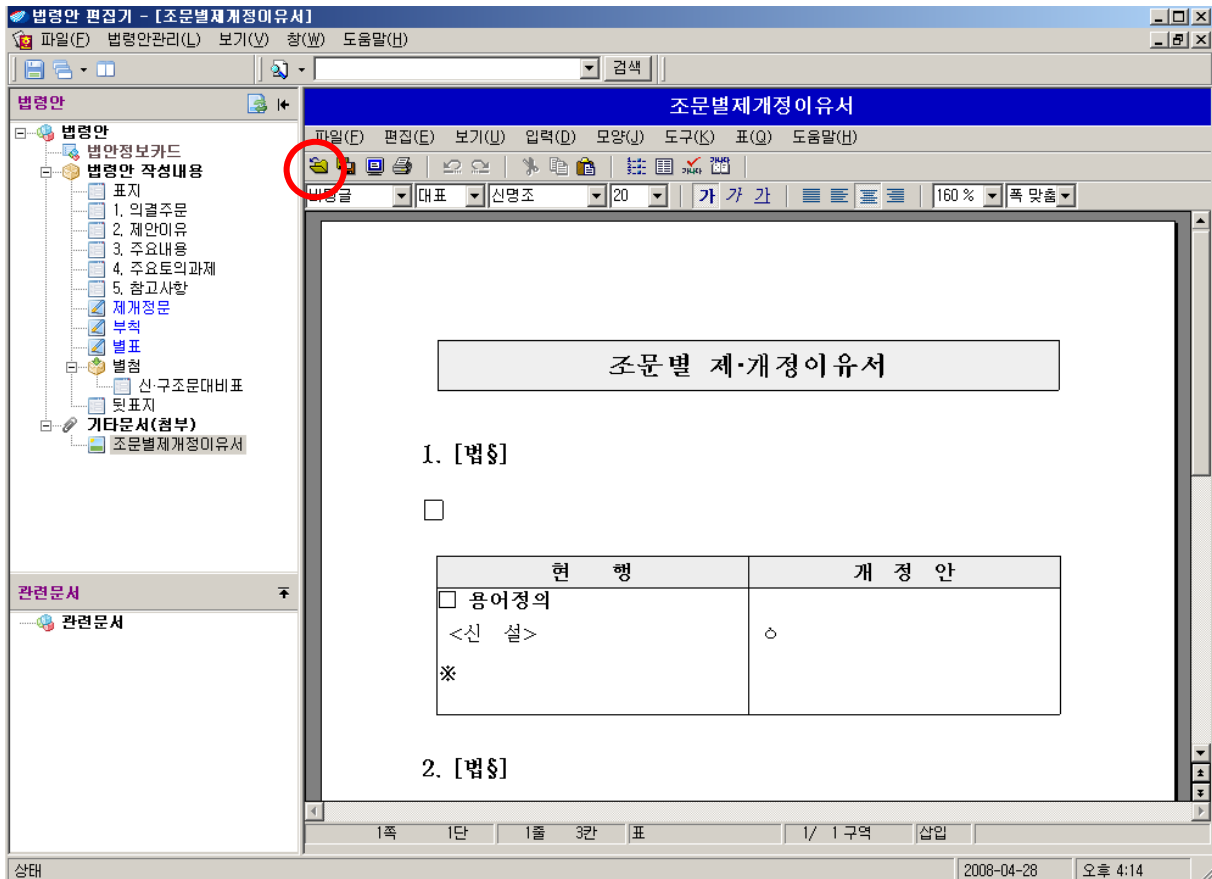
별첨문서의 추가의 경우 별첨문서의 별첨번호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별첨문서 번호 입력**에 주의를 요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만 별첨에 있는 경우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 #번호] 구분을 넣지 않습니다.)

별첨문서를 추가하고 별첨문서 번호를 입력한 후에 메뉴 법령안 트리 타이틀 바의  버튼을 이용하여 목록을 재생해줍니다

05 법령안 작성 이어짐

첨부문서 관리

입안하려는 법령안이 일부개정인 경우 왼쪽 트리 메뉴의 기타문서(첨부)에는 조문별제개정이유서가 기본적으로 첨부되어있습니다 조문별제개정이유서를 더블클릭하면 조문별제개정이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기본 서식이 나타납니다



혹은 이미 작성된 조문별제개정이유서가 있는 경우 열기 버튼을 선택하여 사용자PC의 문서를 선택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05 [2]법령안 작성 - 제정/전부개정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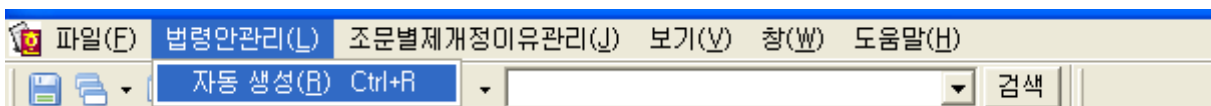
제정/전부개정 법령을 정확하고 편리하게 작성하기 위한 제정/전부개정 관리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05-2장은 작성하는 법령안이 제정/전부개정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일부개정 법령안인 경우는 05-3 법령안 작성 - 일부개정 관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인화면 왼쪽 트리 메뉴에 다른 색깔로 표시되는 제개정문 부칙, 별표는 별도의 자동화 도구를 이용해서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제정관리 자동화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은 아래의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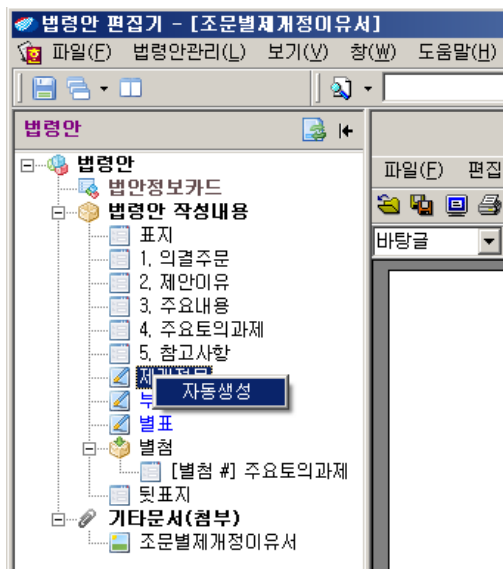
1. 메인화면의 상위 메뉴에서 법령안 관리를 선택 후 자동 생성을 실행합니다.



2. 툴바의  버튼을 이용하여 제정관리 자동생성을 실행합니다



3. 메인화면 왼쪽 법령안 트리에서 제개정문 항목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 자동생성을 실행합니다



05 법령안 작성 - 제정/전부개정 관리 이어짐

제정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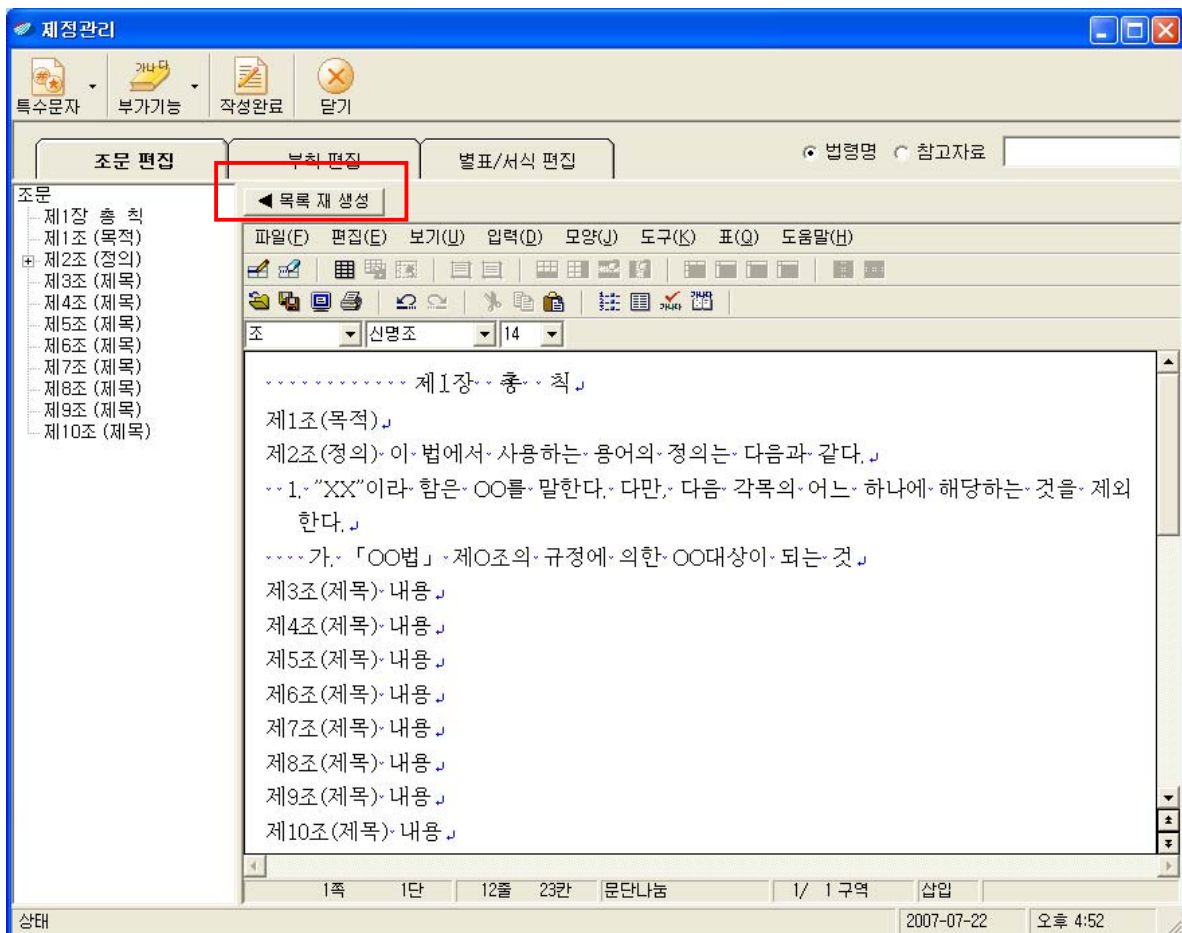
제정관리 자동화 도구는 크게 조문편집 부칙편집, 별표/서식 편집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문편집

법령의 조문내용을 분석해서 트리구조로 구조를 쉽게 파악 할 수 있고트리를 이용해서 조문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조문 내용을 오른쪽 한글 창에서 입력하시고 **목록 재생성** 버튼을 이용하여 목록을 재생성합니다

- 목록 재생성 은 자동으로 법령의 구성요소(조·항·호·목·세목)에 대한 띄워 쓰기 및 형식을 체크하여 **오류 보고**를 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문의 입력과 목록 재생성을 통한 **반복 작업**으로 정확한 법령의 구조로 제정문을 작성합니다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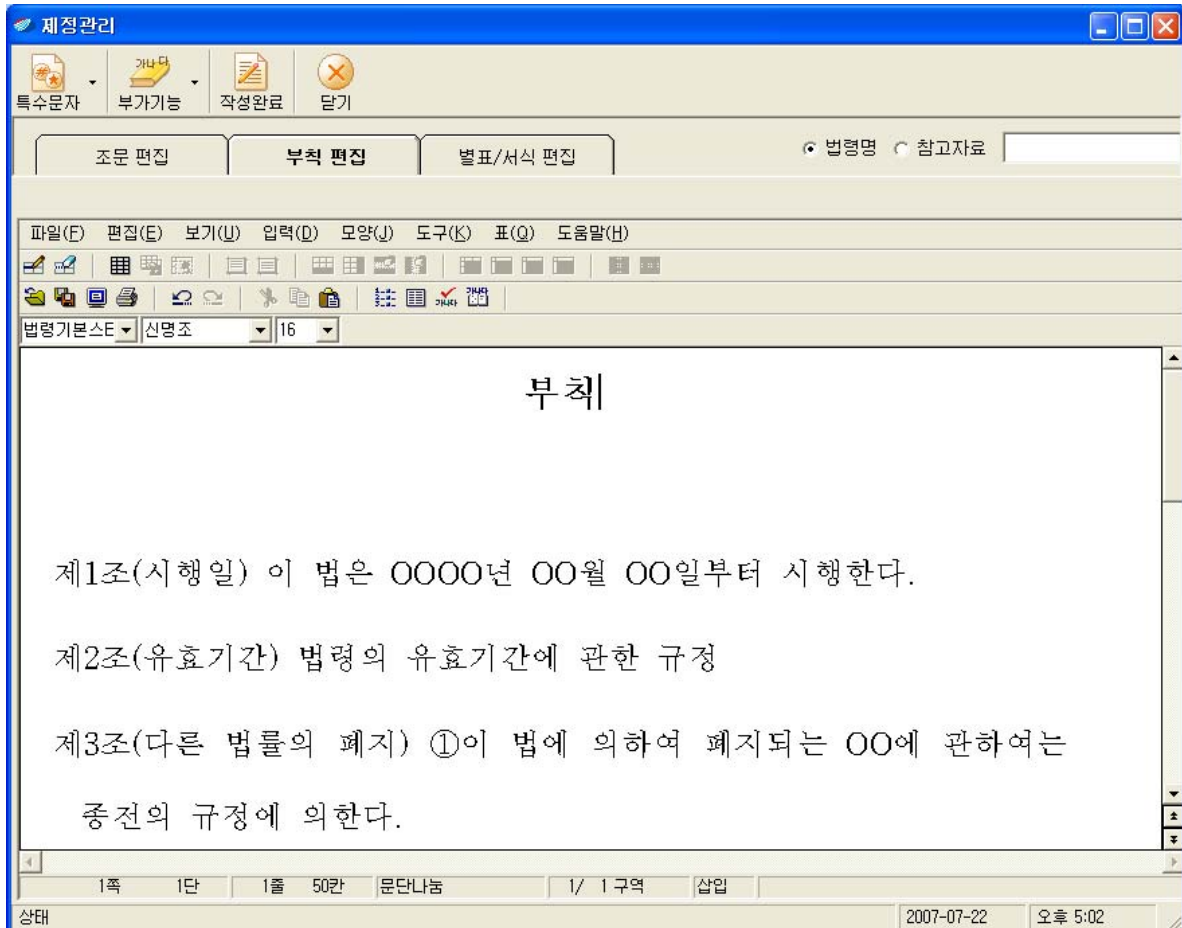
제정관리 자동화 도구도 한글2002를 이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기존에 한글2002 이상으로 작업하신 법령이 있으신 경우 오른쪽 한글창의 불러오기 버튼을 이용해서 파일을 먼저 불러와 목록 재생성을 통해 조문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05 법령안 작성 - 제정/전부개정 관리 이어짐

부칙편집

신설되는 부칙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부칙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기본서식으로 처음 표시되고 원하는 내용으로 바꾸어 입력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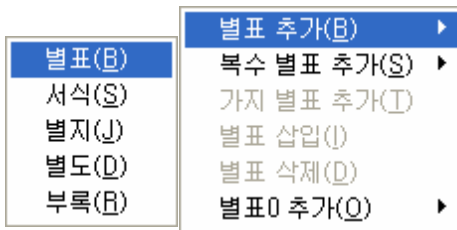


05 법령안 작성 - 제정/전부개정 관리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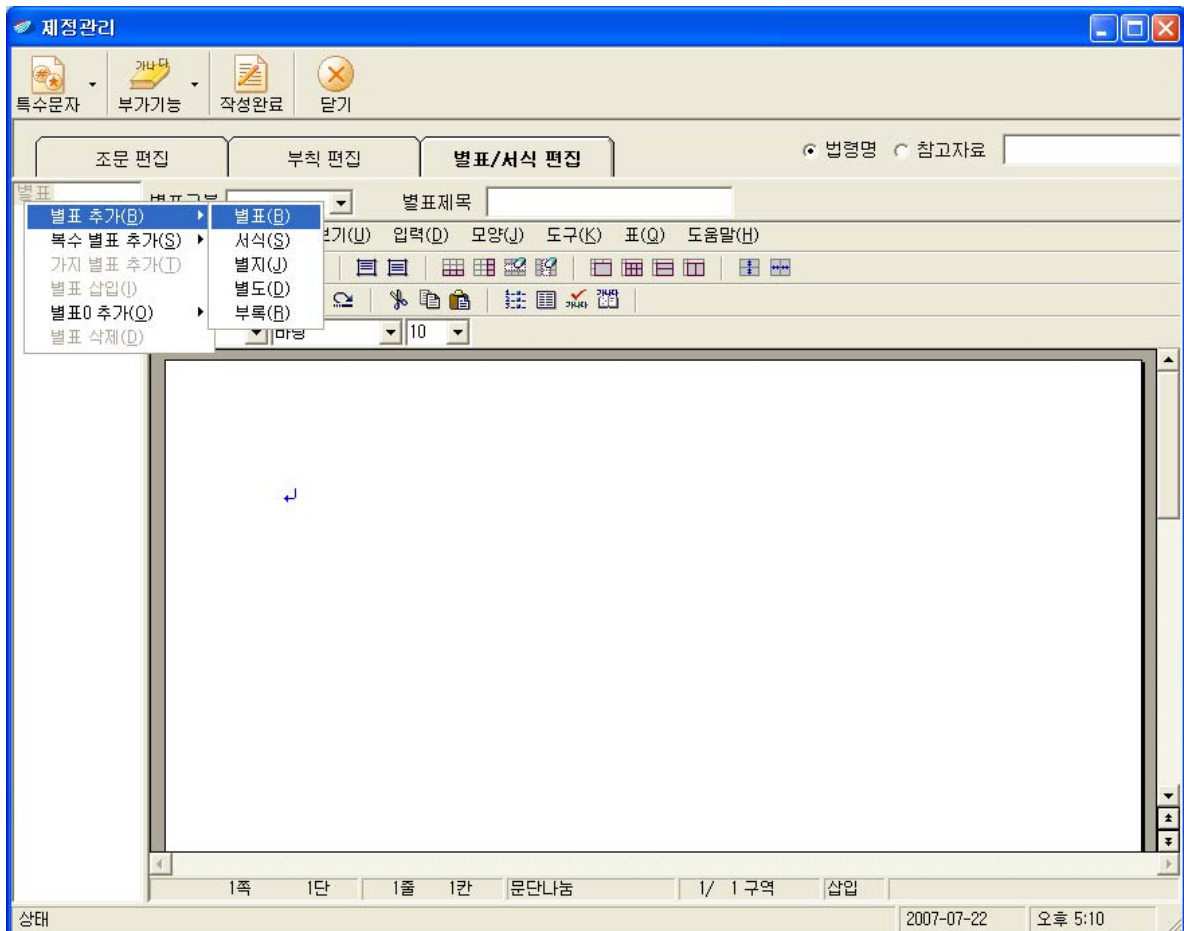
별표편집

신설되는 별표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기본적인 편집방법은 왼쪽 트리메뉴에서 오른쪽 클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편집한 별표의 이동은 왼쪽 트리메뉴의 클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별표추가를 선택하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별표 서식, 별지, 별도, 부록 등 추가하고자 하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 별표를 추가하면 별표트리에 추가하는 별표 서식, 별지, 별도, 부록 등이 순번과 함께 표시됩니다
- 복수 별표 추가를 선택하여 복수개의 별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별표가 추가되었으면 편집창에서 직접 별표를 작성하거나 작성된 별표파일을 불러오기 아이콘을 이용하여 작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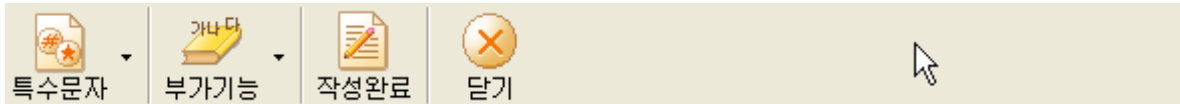


주의사항 : 별표의 표는 별표/서식 입력지침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개체속성에서 “글자로 취급” 이 되어야 합니다

05 법령안 작성 - 제정/전부개정 관리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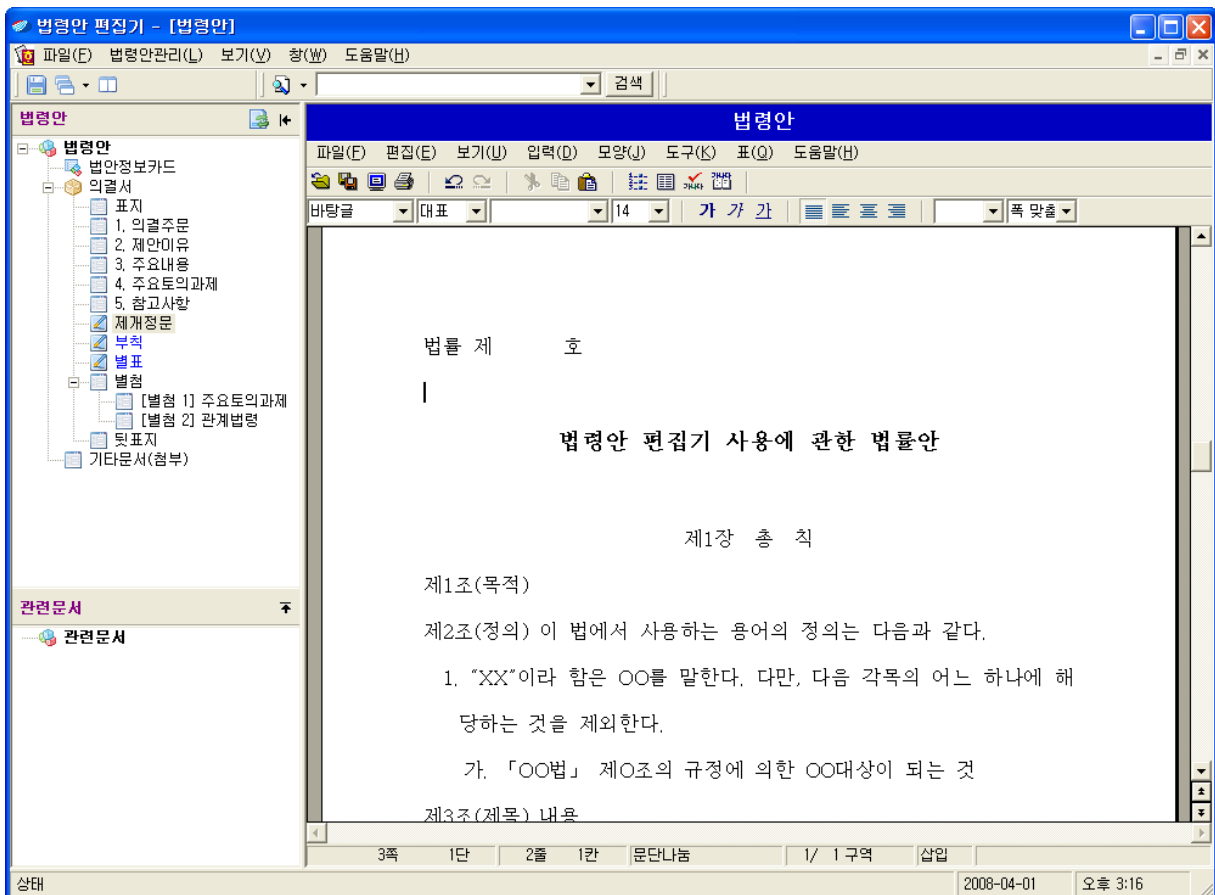
제정/전부개정 관리 작성완료

작업이 끝나면 제정/전부개정 관리 도구의 상위 툴바의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작업을 종료합니다



자동화 도구 창이 닫히면서 각 제정관리 탭에서 작성한 내용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제개정문부칙, 별표 탭으로 나뉘어져 삽입이 진행됩니다.

재작업을 원하시면 처음과 같이 제개정문 메뉴에서 오른쪽 클릭이나 상위메뉴 법령안 관리 자동생성을 통해서 작성했던 문서를 재작업(추가/수정/삭제) 할 수 있습니다.



05 [3]법령안 작성 - 일부개정 관리

개정문(일부개정)을 정확하고, 편리하게 작성하기 위한 개정문 생성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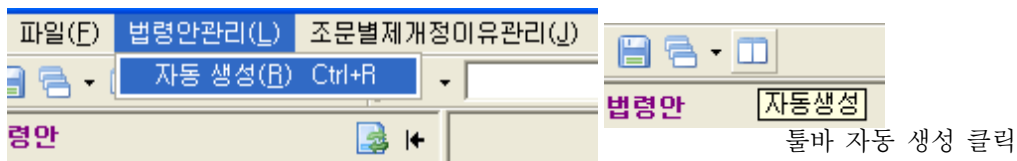
메인화면 왼쪽 트리 메뉴에 다른 색깔로 표시되는 제개정문 부칙, 별표는 별도의 자동화 도구를 이용해서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자동화 도구는 일부개정과 일부개정을 제외한 나머지 제개정구분으로 나뉘어2가지 종류로 제공됩니다.

- 일부개정 자동화 도구: 연혁법령과의 비교를 통한 개정문을 생성하기 위한 도구
- 제정 자동화 도구: 새로운 법령을 생성하기 위한 도구

이 장에서는 일부개정 자동화 도구를 설명하겠습니다. **일부개정을 제외한 개정문 작성**의 경우는 05-2 법령안 작성 - 제정 관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화 도구 실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부개정 자동화 도구(일부개정 관리)는 크게 조문편집/부칙편집/별표편집 기능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의 세부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탭 구분	세 부 내 용
개정 조문 편집	현행 조문과 개정 조문 편집 후 개정문 생성/반영을 통해 조문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를 작성합니다.
개정 부칙 편집	신설되는 부칙의 편집과 연혁 부칙의 개정문을 작성합니다.
개정 별표 편집	별표의 개정문과 법령안에 포함되는 별지를 작성합니다.

05 법령안 작성 - 일부개정 관리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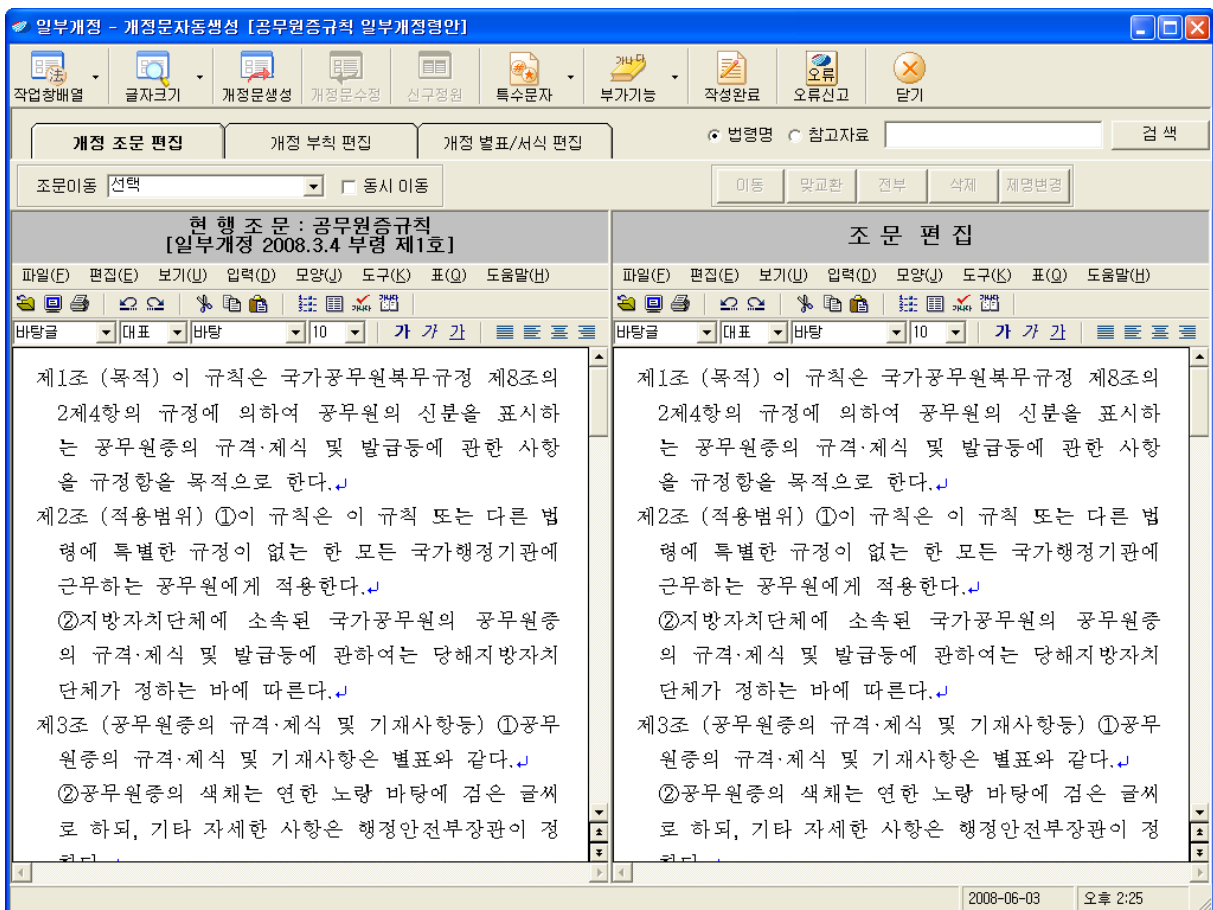
일부개정 관리

일부개정 관리 자동화 도구는 크게 개정조문 편집 개정부칙 편집 개정 별표/서식 편집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 자동화 도구의 탭은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작업이 가능하도록 상위메뉴에**작업창 배열** 버튼을 이용하여, 용도에 맞게 화면을 맞추시어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 조문 편집 - ①

새 법령안 작성 시 입력했던 현행법령의 조문을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와 아래와 같이 복사하여 편집 가능상태로 대기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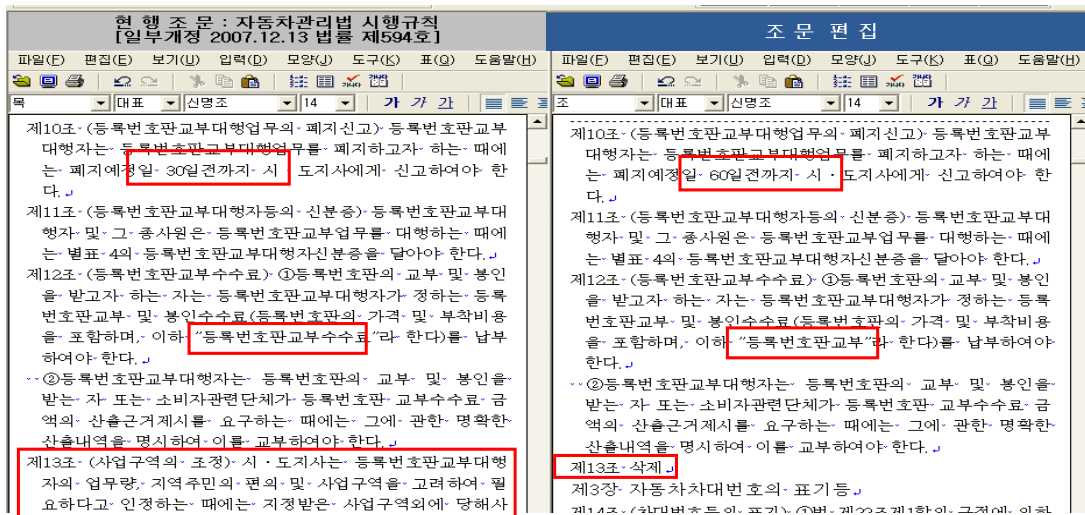
05 법령안 작성 - 일부개정 관리 이어짐

개정 조문 편집 -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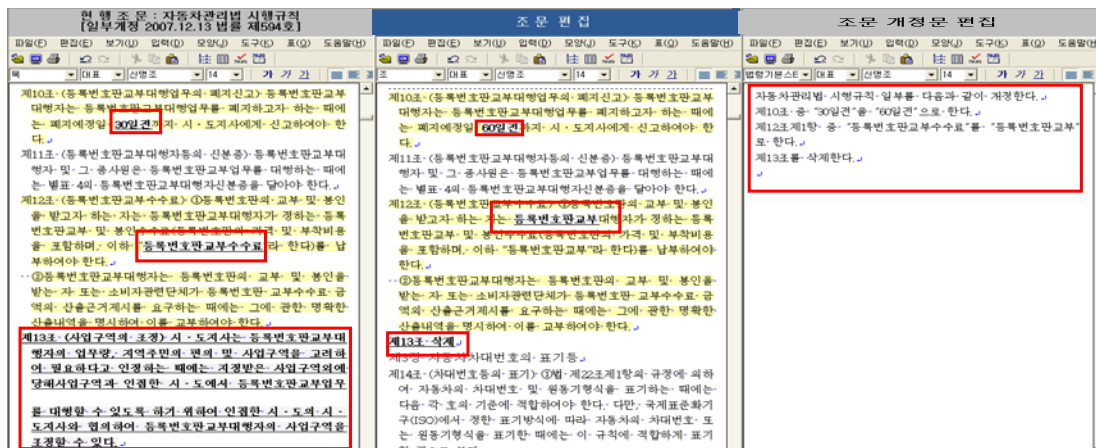
조문에 대한 편집과 개정문의 생성 및 반영을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조문 편집 창에서 조문을 직접 편집하거나 자동화 도구(이동, 맞교환, 전부, 삭제, 제명변경)를 통하여 조문을 편집한 후 개정문생성 기능을 통하여 조문개정의 내용에 대한 개정문이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고 개정문을 먼저 작성한 후 개정문 반영 기능을 통하여 개정조문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가. 개정문 생성/반영

아래와 같이 조문편집의 내용을 편집합니다



조문의 수정을 완료한 후 개정문생성버튼을 클릭하면 조문 개정문 편집창에 개정문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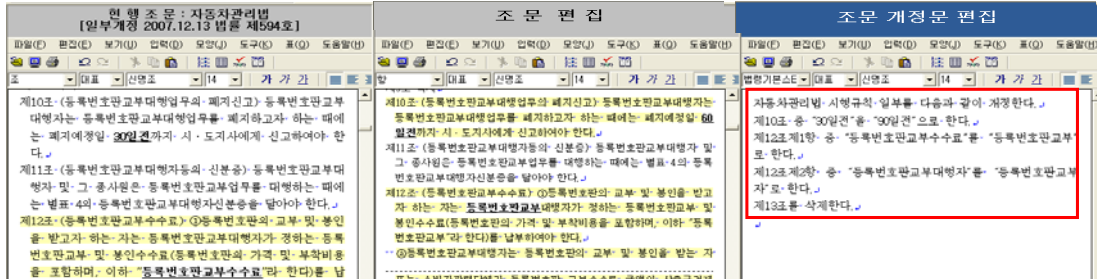


05 법령안 작성 - 일부개정 관리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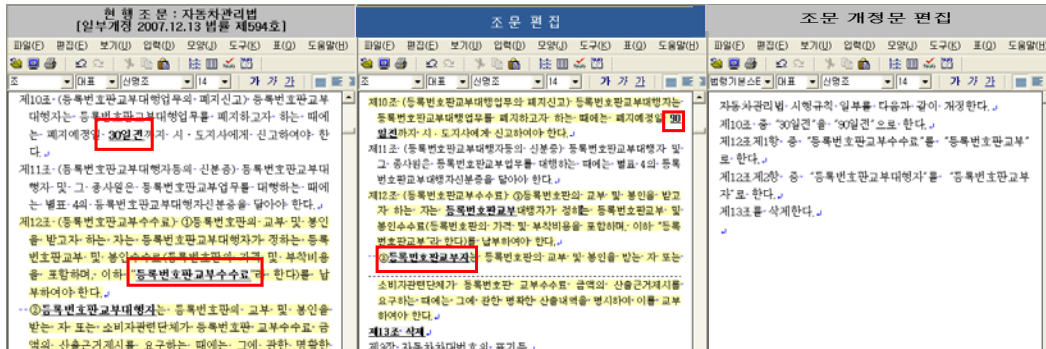
조문을 추가로 편집하고 개정문생성버튼을 클릭하면 이전에 생성된 개정문은 유지되고 수정된 조문에 대한 개정문이 추가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조문을 편집하지 않고 조문 개정문을 작성하고 개정조문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개정문을 작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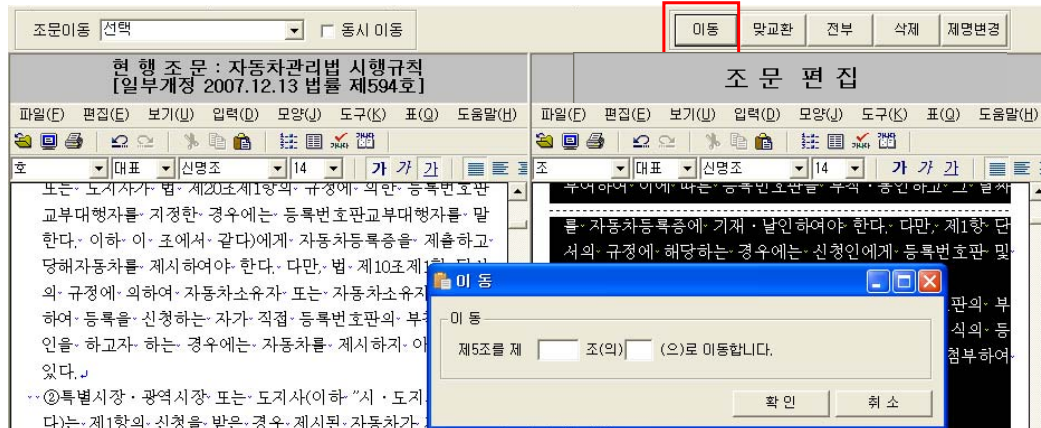
개정문을 작성 후 개정문반영버튼을 클릭하면 개정문에 대한 개정조문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5 법령안 작성 - 일부개정 관리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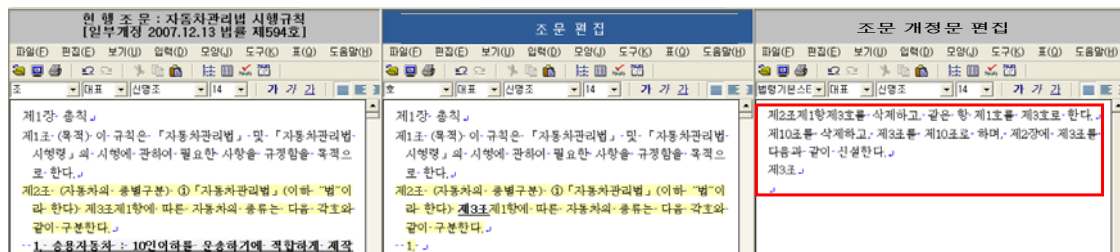
나. 이동 개정

조문이 이동되어 개정되는 경우에 자동으로 개정조문을 작성 해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개정조문 편집 창에서 이동개정이 필요한 조문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이동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이동 개정을 위한 팝업창이 생성됩니다.



이때, 커서의 위치에 따라 조, 항, 호, 목의 이동이 결정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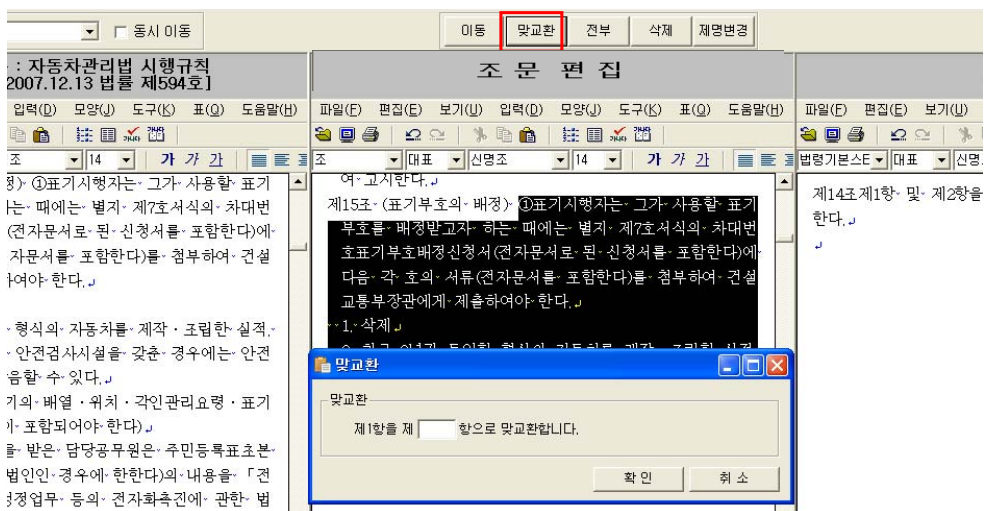
이동할 조문의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한 후 개정문생성버튼을 클릭하면 이동 개정에 대한 개정문이 아래와 같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05 법령안 작성 - 일부개정 관리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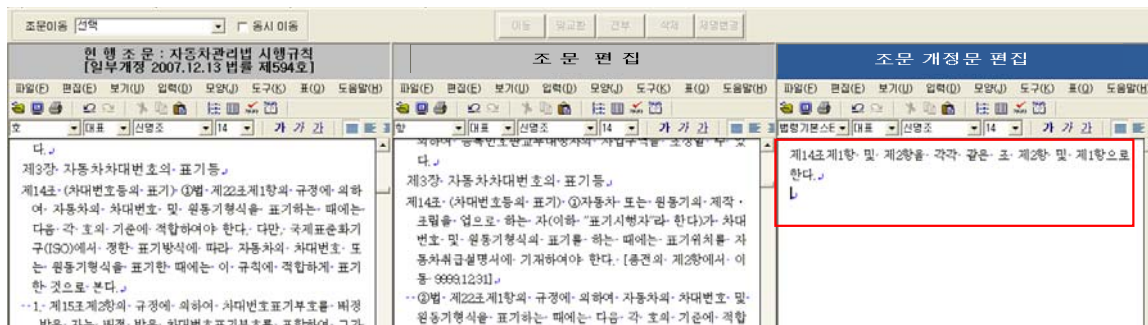
다. 맞교환 개정

두개의 조문이 서로 교환되어 개정되는 경우에 자동으로 개정조문을 작성 해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개정조문 편집 창에서 맞교환이 필요한 조문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맞교환**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맞교환 개정을 위한 팝업창이 생성됩니다



이때, 커서의 위치에 따라 조, 항, 호, 목의 맞교환이 결정되게 됩니다

맞교환할 조문의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한 후 **개정문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맞교환 개정에 대한 개정문이 아래와 같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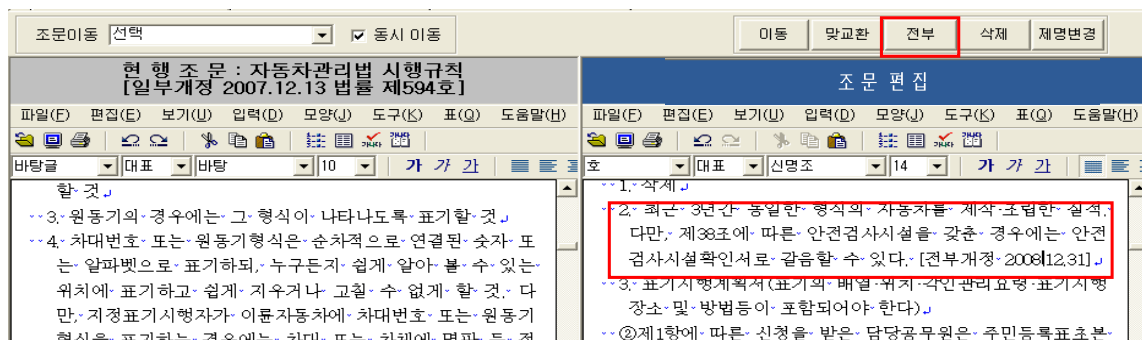
05 법령안 작성 - 일부개정 관리 이어짐

라. 전부 개정

개정하려는 개정단위(조·항·호·목)가 60% 이상 개정된 경우는 개정문 생성 기능은 자동으로 해당 개정단위를 전부 개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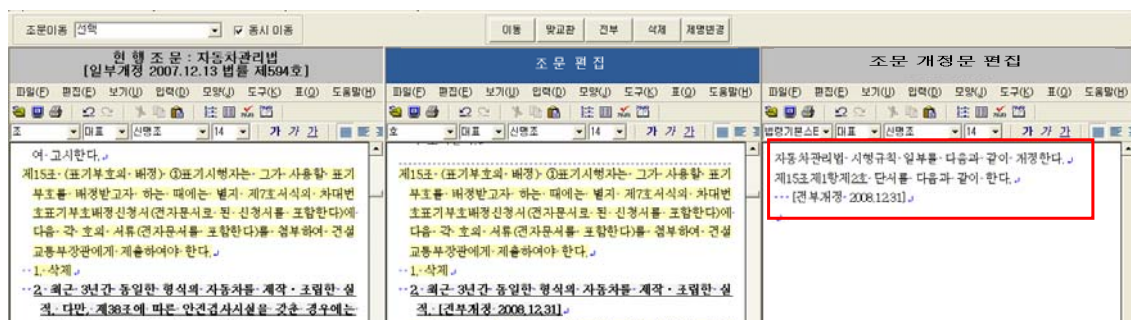
일부개정 관리에서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전부 개정 외에 시스템적으로 강제로 해당 개정단위를 전부 개정 할 수 있습니다

개정조문 편집 창에서 전부개정이 필요한 조문에 커서를 위치시키고**전부**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개정되는 조문의 끝에 전부개정을 의미하는 문구가 입력됩니다



이때, 커서의 위치에 따라 조, 항, 호, 목의 전부개정이 결정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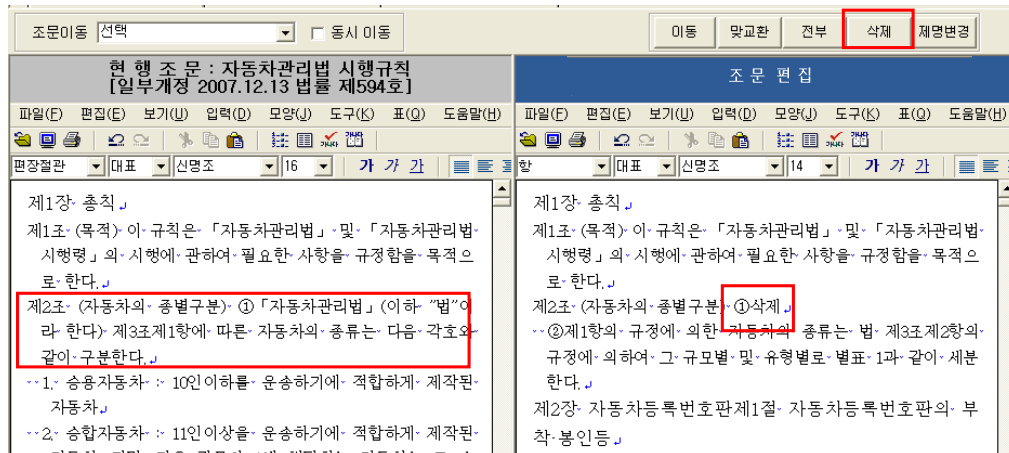
전부 개정이 이루어질 조문의 내용을 수정한 후 **개정문생성**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전부개정에 대한 개정문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05 법령안 작성 - 일부개정 관리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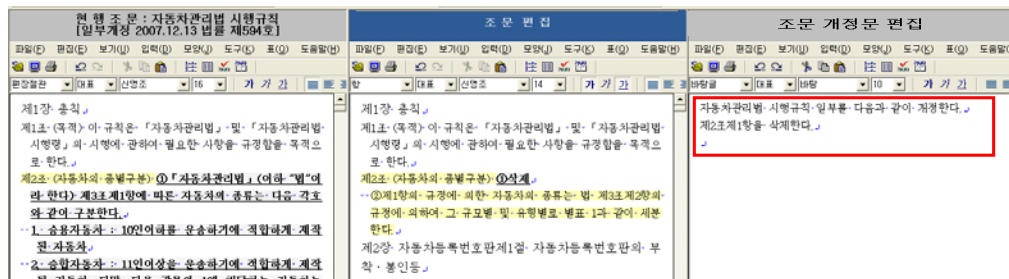
마. 삭제 개정

개정조문 편집 창에서 전부개정이 필요한 조문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조문의 내용이 삭제되고 삭제 개정을 의미하는 문구가 입력됩니다



이때, 커서의 위치에 따라 조, 항, 호, 목의 삭제가 결정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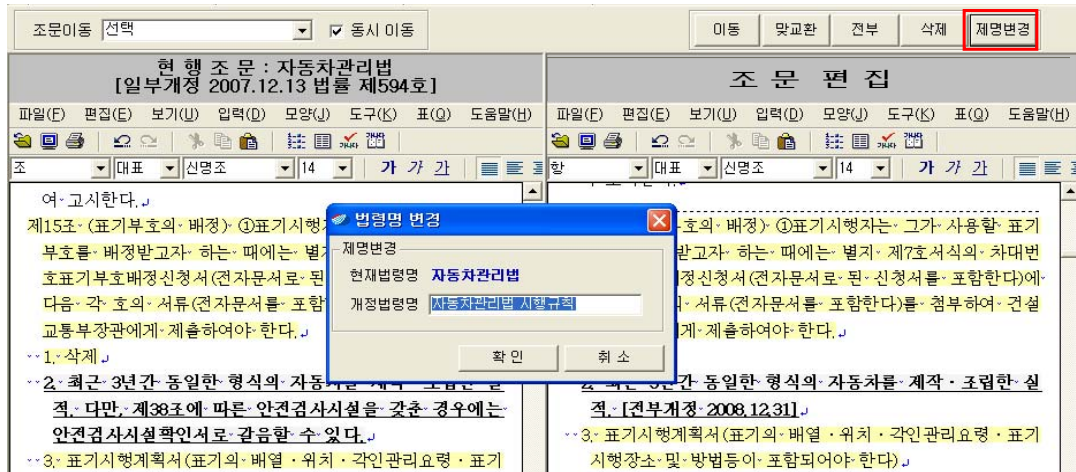
삭제처리 후 **개정문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삭제개정에 대한 개정문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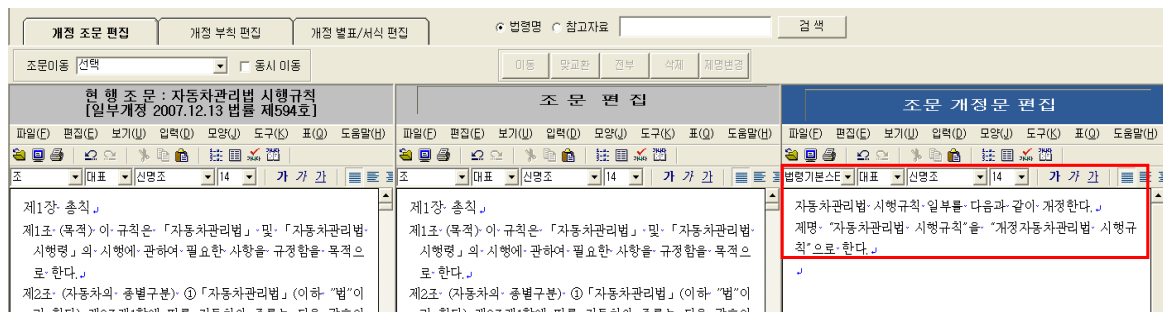
05 법령안 작성 - 일부개정 관리 이어짐

바. 제명 변경 개정

편집 창 상단의 제명변경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개정법령명을 입력하는 팝업창이 생성됩니다



개정법령명을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한 후 개정문생성버튼을 클릭하면 제명 변경에 대한 개정문이 아래와 같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TIP&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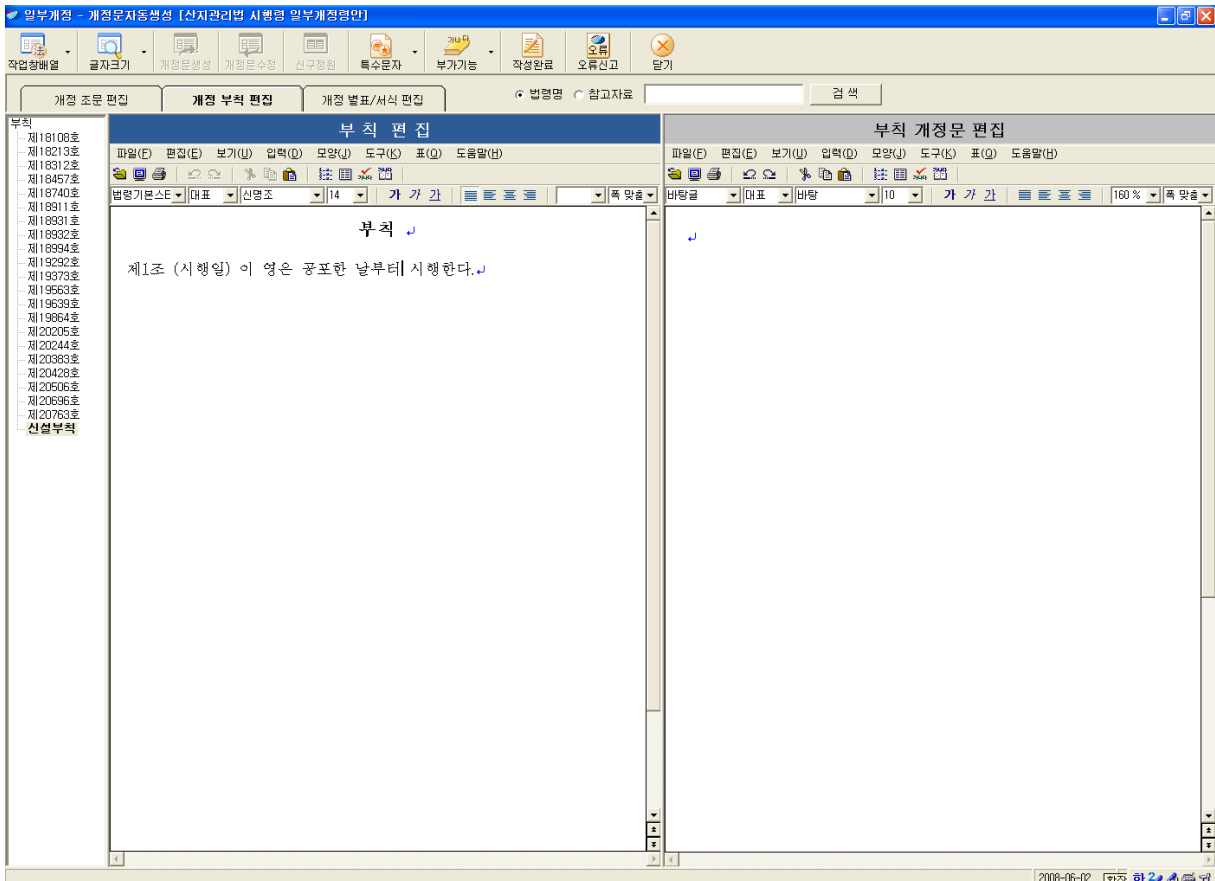
개정문변역 기능은 이미 작성해둔 개정문이 있거나, 생성한 개정문이 작업 진행에 원활하지 않은 경우 개정문생성과 반대로 개정문을 현행 조문과 비교하여 개정 조문을 만들어내는 기능입니다.

05 법령안 작성 - 일부개정 관리 이어짐

개정 부칙 편집

부칙 개정문의 생성은 기본적으로 신설되는 부칙의 편집과 기존 부칙의 개정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가. 신설 부칙 작성



신설부칙의 편집은 개정부칙편집 탭에서 왼쪽 부칙 트리의 맨 마지막 신설부칙을 선택하시어 개정부칙 탭에서 신설부칙을 편집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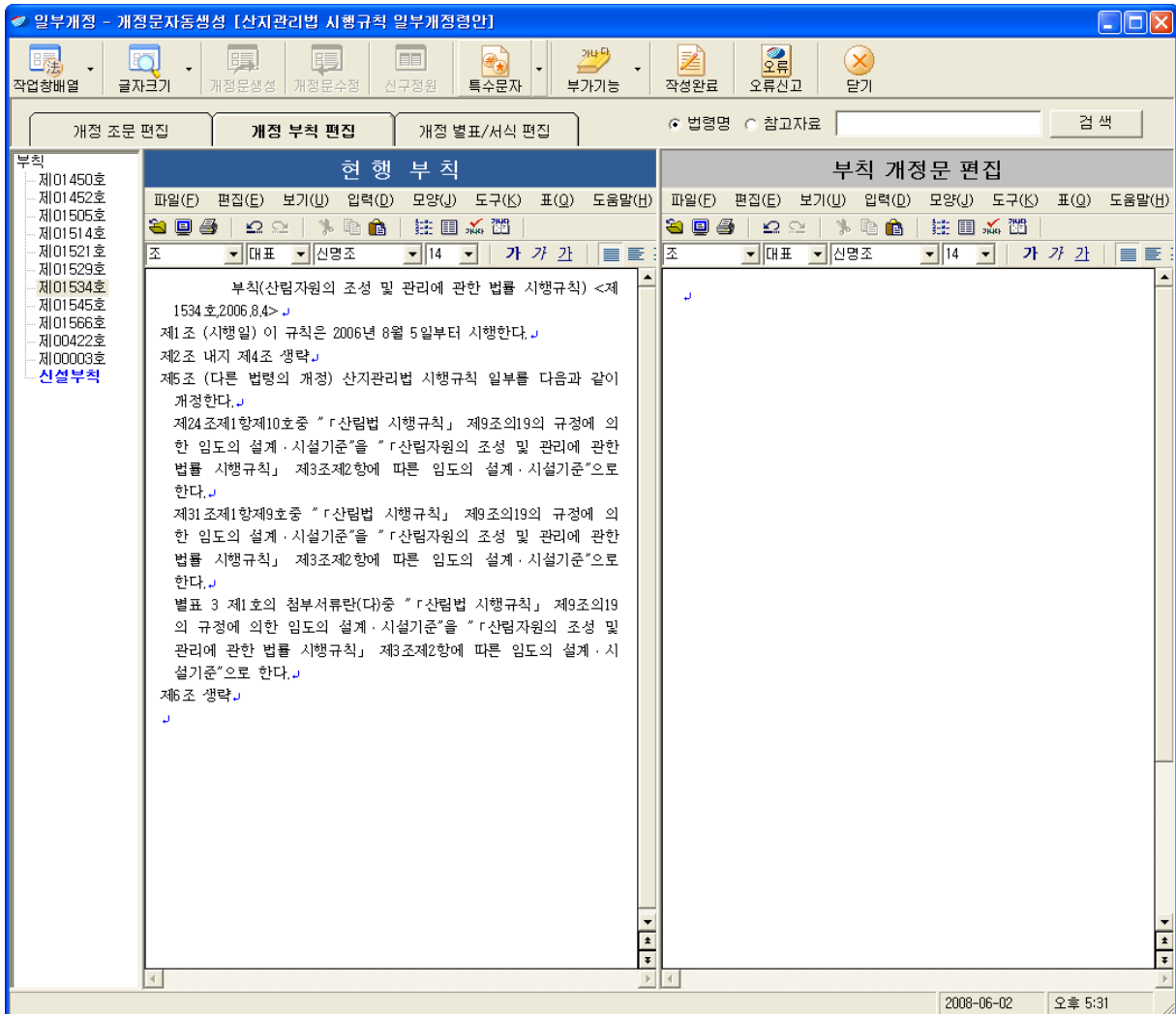
TIP

법령안을 처음 생성하는 경우에는 입안심사기준의 부칙 작성 기준 내용이 기본적으로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부칙 조문 중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하시고 편집하시되 맨 앞줄의 “부칙” 제목란은 삭제가 안 되도록 주의 바랍니다.

나. 연혁 부칙 개정문 작성

기존부칙의 개정은 조문의 개정과 마찬가지로 개정하려는 부칙을 왼쪽 트리에서 클릭 하면 부칙 작성 화면이 아래와 같이 현행부칙 + 부칙개정문으로 전환이 됩니다

부칙 개정문 편집란에서 연혁 부칙에 대한 개정문을 작성합니다



주의사항

부칙 개정문 란에는 연혁 부칙의 개정사항만 기록합니다. 신설되는 부칙의 내용을 부칙 개정문에 넣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법령안 작성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신설되는 부칙은 왼쪽 부칙 트리에서 신설부칙을 클릭 후에 개정부칙에 나온 내용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05 법령안 작성 - 일부개정 관리 이어짐

개정 별표/서식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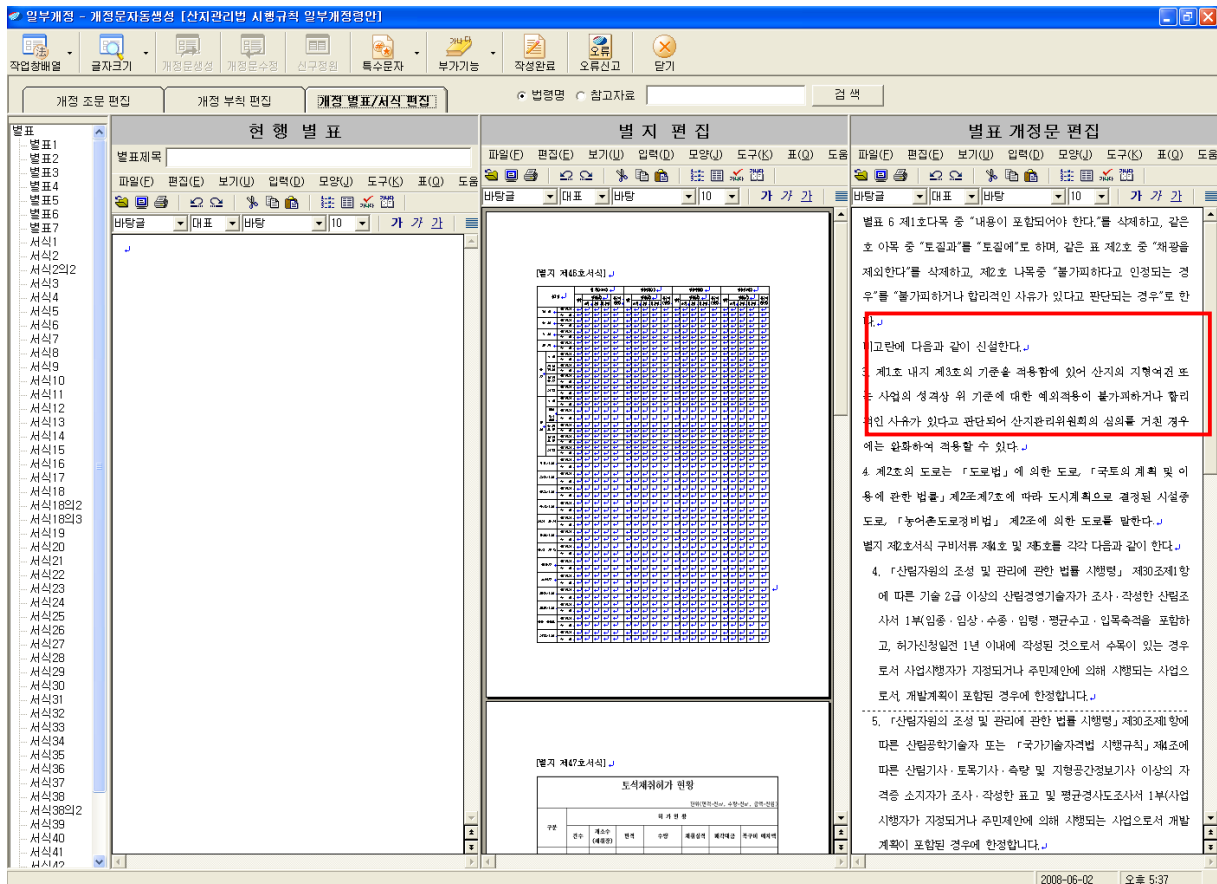
입안편집기는 별표개정에 대하여는 조문부칙과 같은 개정문생성 기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행별표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법령안 작성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별지와 별표개정문 내용을 분리하여 수작업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별지 부분은 전부개정되거나 신설되는 별표가 법령안 별지에 포함되는 경우 **이별표들을 아래의 그림과 같이 별지편집에 추가** 합니다.

별표 개정문 편집에는 실제 작성되는 **별표에 대한 개정문을 작성하여 넣습니다.**

화면 크기가 작기 때문에 작업창 배열(별지, 별표개정문을 한화면으로 보기 가능)을 이용하여 다양한 뷰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05 법령안 작성 - 일부개정 관리 이어짐

일부개정 관리 작성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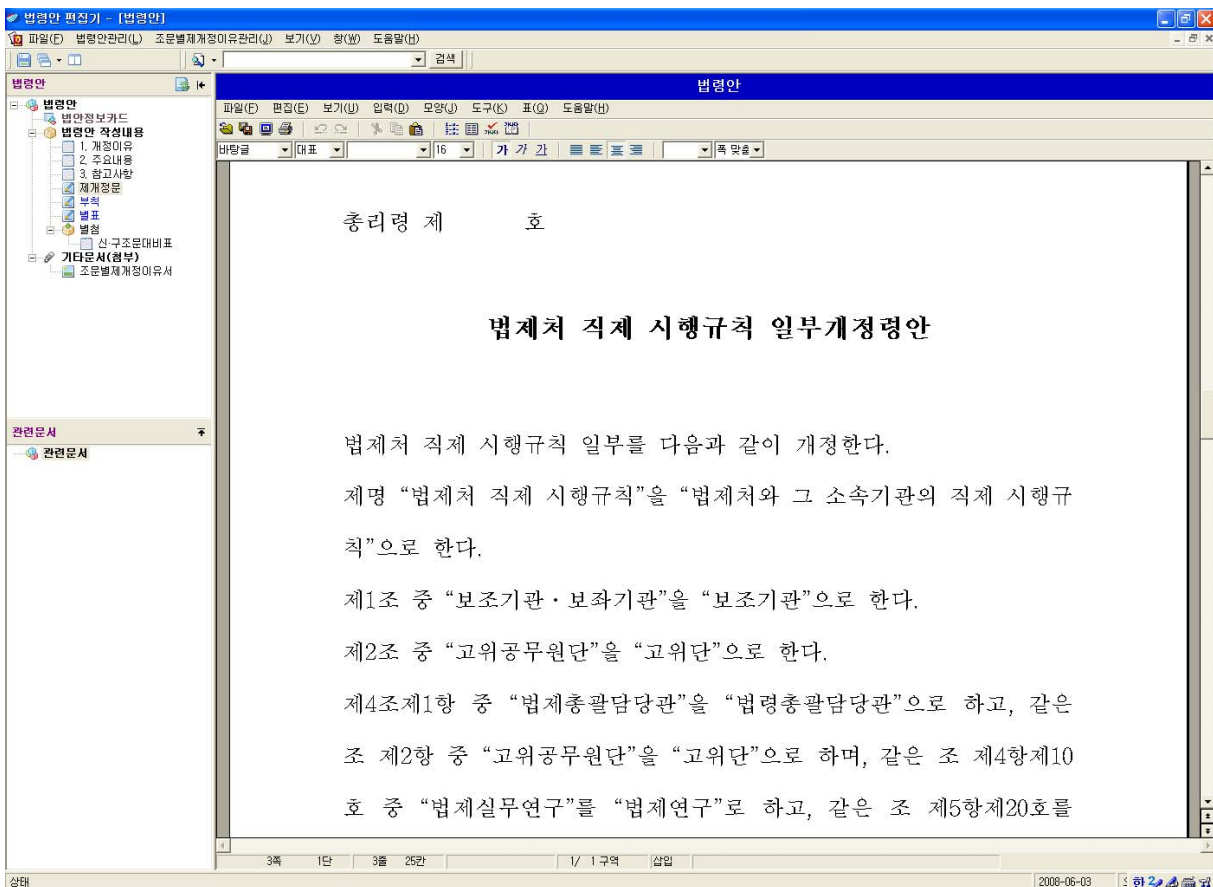
작업이 끝나면 관리 도구의 상위 툴바의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 하여 작업을 종료합니다



자동화 도구 창이 닫히면서 각 일부개정관리 탭에서 작성한 개정문내용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제개정문 부칙, 별표 탭으로 나뉘어져 삽입이 진행됩니다

재작업을 원하시면 일부개정 자동화 도구를 다시 실행시키시면 최종적으로 수정한 내용이 계속 보전되어 이어서 개정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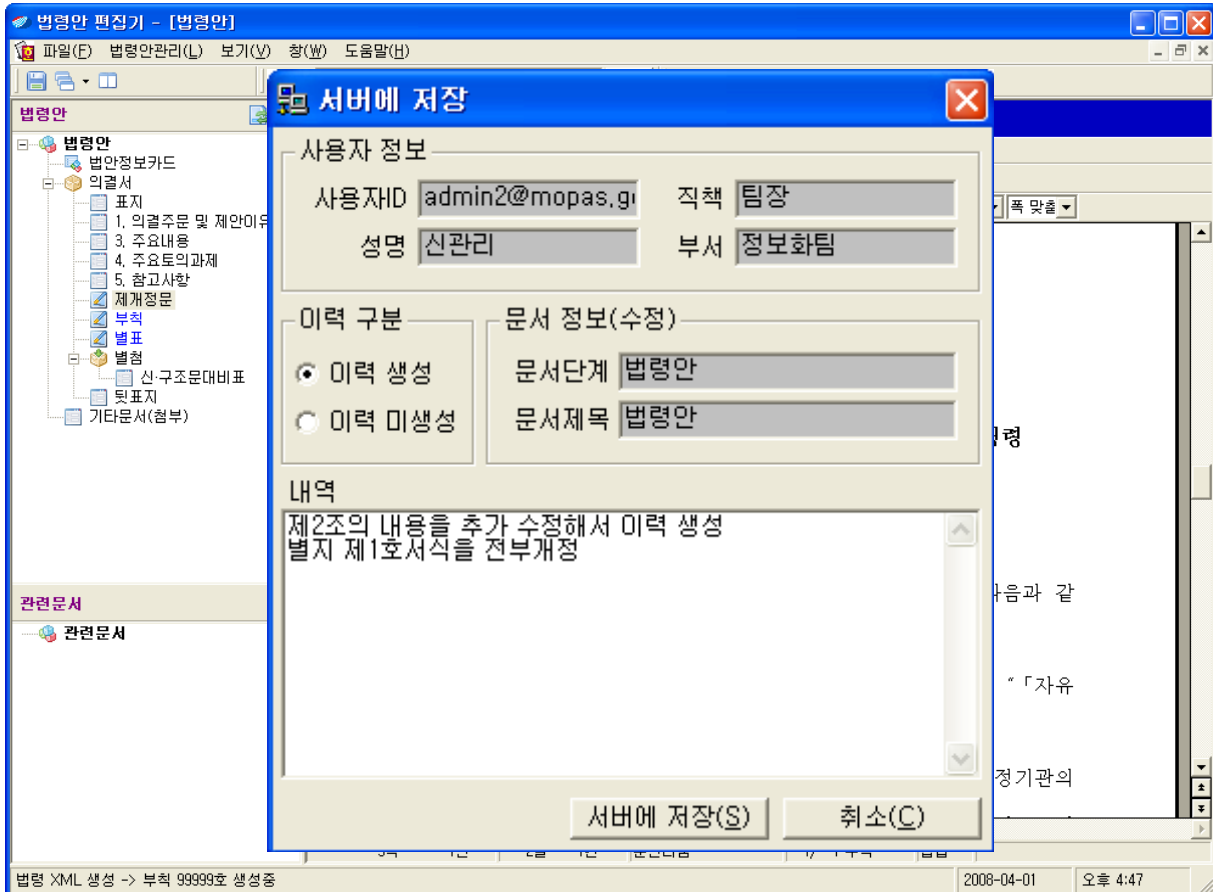
일부개정 관리에서 작업한 내용은 법령안을 서버에 저장하고 다시 불러온 경우에도 이어서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서버에 저장하기

편집이 끝난 법령안은 최종적으로 서버에 저장합니다

메인창의 상위 메뉴에서 서버에 저장하기를 클릭하거나 툴바의 저장버튼을 클릭 합니다



이력구분을 선택하고 서버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서버에 저장하고 편집기를 종료합니다

06 부처협의 요청 및 의견 수렴

입안시스템을 이용하여 부처협의 요청 및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부처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안정보카드 등록 후 법령안 작성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부처협의 정보저장 및 부처협의 요청

- 1) 법령안 목록조회에서 해당 법령을 선택 후 부처협의 탭을 선택합니다

- 2) 부처협의 등록 화면에서 부처협의 기간 정보를 등록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날짜부터 10일 후의 날짜가 입력됩니다.
- 3) 관계부처 항목에서 [관계부처선택] 버튼을 선택하면 관계부처선택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 3) 관계부처선택 팝업에서 관계부처를 선택 후 [저장] 버튼을 선택하면 부처협의 화면에 선택한 관계부처들이 추가 됩니다.
- 4) 필요한 부처협의 첨부문서가 있으면 파일을 첨부합니다
- 5) [저장] 버튼을 선택하면 해당 부처협의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 6) 부처협의 시행을 위해 [협의안보내기] 버튼을 선택하면 관계부처로 등록된 부처에 부처협의 내용이 공개 됩니다.

06 부처협의 요청 및 의견수렴 이어짐

관계부처 의견 등록

부처협의 정보를 저장하면 선택한 관계부처 사용자들이 입안시스템 메인화면에서 부처협의요청법령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의 법제부서 담당자들은 법령안 파일을 조회 후 의견이 있을 경우의견등록 버튼을 선택하여 의견 및 첨부파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부처협의요청 상세조회

부처협의목록 | 협의요청목록

● 부처협의 정보

법령명	수산업협동조합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국제협력팀	담당자	김행정
담당자 이메일	cns1@mopas.go.kr	담당자 연락처	02-2100-1234
법령안	법령안.hwp(13.0KB)	부처협의 기간	2008.04.28 ~ 2008.05.06
관계부처	감사원, 교육과학기술부,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 등 총 66개 중앙행정기관 [전체보기]		
첨부파일	부처협의관련문서: 관계부처협의공문.hwp(6.5KB)		

● 관계부처의견 목록

전체게시물 : 2 (1/1)

번호	등록자	의견	첨부
1	입안관리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2	입안관리	제 1조 관련 이견 있음, 아래 사항 확인 바랍니다.	

[의견등록](#) | [목록](#)

06 부처협의 요청 및 의견수렴 이어짐

관계부처 의견 확인

부처협의정보 저장 후 등록된 관계부처 의견은 부처협의 상세조회 화면에서 “부처협의결과보기” 버튼을 선택하여 나타나는 부처협의의견 목록조회 팝업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기관명	담당자	내용
1	행정안전부	입안관리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2	행정안전부	입안관리	제 1조 관련 이견 있음. 아래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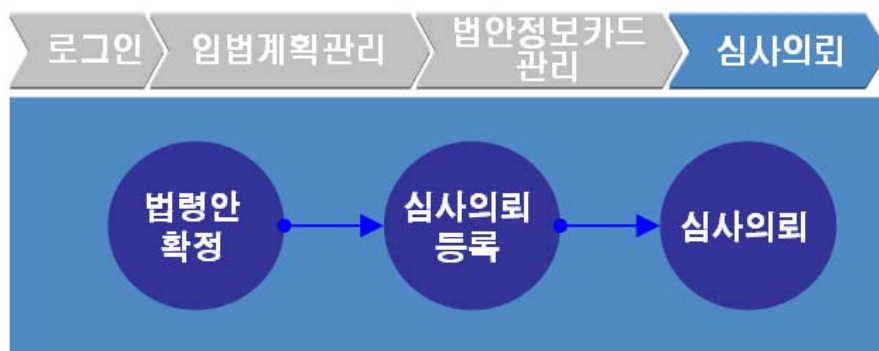
관계부처를 삭제하려면 관계부처선택 버튼을 선택 후 관계부처 팝업에서 삭제하려는 기관을 선택하지 않고 “저장” 버튼을 선택 하면 관계부처 항목에서 선택하지 않은 기관이 삭제됩니다.
단, 부처협의시행 이후에는 관계부처를 삭제할 수 없습니다.

07 | 심사의뢰 및 수정·철회

입안시스템을 통하여 법령안을 법제처에 심사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확인수정, 철회 요청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개요

법령안의 작성이 완료되면 심사의뢰하기 이전에 입안시스템에서 법령안의 초안을 확정을 합니다. 초안 확정 후 법제처로 심사의뢰 이후에는 수정요청서나 철회요청서를 작성하여 법제처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법령안 확정

입안편집기를 이용하여 법령안을 작성이 완료되면 법령안 작성제출 화면에서 [법령안확정] 버튼을 선택하여 "법령안확정상태"로 변경되고, [심사의뢰등록] 버튼이 나타납니다.

→ 법령안 작성/제출

법안정보카드 | **법령안 작성/제출** | 부처협의 | 입법예고 | 규제심사 등

● 법령안상세

법령명	법제처 직	5KB) > 파일다운로드
담당자	장학기	
법령안처리상태	법령안작성	
법령안편집	> 법령안편집	
첨부문서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15.5KB)	> 파일다운로드

Microsoft Internet Explorer

법령안 처리상태를 법령안확정 상태로 변경 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 문서관리카드 > 온라인 보고 > **법령안확정** > 이력보기 > 목록으로

07 심사의뢰 및 수정·철회 이어짐

심사의뢰안 등록

1) 법령안초안확정을 한 경우 법령안 작성제출 화면에서 [심사의뢰등록] 버튼을 선택하면 심사의뢰 등록 화면이 바로 나타납니다.

→ 법령안 작성/제출

법령정보카드
법령안
작성/제출
부처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 법령안상세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담당자	장학기	법령안보기	법령안.hwp(17.5KB) ▶ 파일다운로드
법령안처리상태	법령안확정 ▶ 취소	법령안작성일자	2008.05.23
법령안편집	▶ 법령안편집기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문서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15.5KB) ▶ 파일다운로드		

▶ 심사의뢰등록
▶ 문서관리카드
▶ 온라인 보고
▶ 이력보기
▶ 목록으로

또는 메뉴에서 “법령입안 > 법령안심사의뢰”로 이동 후 등록버튼을 선택하면 법령안확정 상태인 법령안 목록이 나타나고, 심사의뢰할 대상 법령명을 선택하면 심사의뢰 등록화면이 나타납니다

07 심사의뢰 및 수정·철회 이어짐

2) 심사의뢰 등록 화면에서 입안단계별작성문서 첨부여부 선택 및 첨부파일을 첨부한 후[저장] 버튼을 선택하면 심사의뢰 등록 상태로 저장이 됩니다

→ 심사의뢰 등록

● 심사의뢰 주요정보

법령명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형식	일부개정	법종구분	법률
담당자	관리자	소관부서	법제처 법제정보과
처리상태	심사의뢰등록	처리일자	2008.06.24

● 입안 단계별 작성문서

	문서구분	작성문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령안 :법령안	법령안.hwp(17.5KB)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령안 :조문별제개정이유서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15.5KB)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부처협의:부처협의관련문서	부처협의결과.hwp(6.5KB)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입법예고:입법예고관련문서	입법예고결과.hwp(6.5KB)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규제심사 등:규제심사	규제심사결과.hwp(6.5KB)

● 심사의뢰 첨부문서

파일첨부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2px;"> 비용추계서미제출사유서 찾아보기... </div>
첨부목록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height: 100px; width: 100%;"></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5px;"> 파일삭제 파일다운로드 </div>

저장
취소
목록
맨위로

심사의뢰등록 상태는 법제처에 심사의뢰 하기 전 준비단계로 심사의뢰요청 전까지 입안단계별작성문서 및 첨부파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3)심사의뢰등록은 법제처로 심사의뢰요청을 하기 전 준비단계이며 법제처로 심사의뢰가 전송되지 않습니다. 심사의뢰요청전까지 첨부파일 삭제/첨부 및 법령안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TIP

법제처로 심사의뢰요청 후 법령안을 수정해야할 경우 법제처에서 반력을 받은 후 수정하여 다시 심사의뢰를 하는 방법과 수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수정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07 심사의뢰 및 수정·철회 이어짐

심사의뢰

문서관리카드를 통한 내부 결재 및 심사의뢰 준비가 모두 완료되면[심사의뢰] 버튼을 선택하여 법제처로 심사의뢰를 요청합니다

→ 심사의뢰 상세조회

● 심사의뢰 주요정보

법령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입법형식	일부개정	법종구분	법률
담당자	장학기	소관부서	법제처 법제정보과
처리상태	심사의뢰등록	처리일자	2008.05.28

● 입안 단계별 작성문서

번호	문서구분	작성문서
1	법령안	법령안.hwp(14.0KB)
2	조문별제개정이유서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15.5KB)

● 심사의뢰 첨부문서

번호	문서구분	작성문서
첨부자료가 없습니다.		

[▶ 심사의뢰](#)
[▶ 법령안수정](#)
[▶ 문서관리카드](#)
[▶ 온라인 보고](#)
[▶ 수정](#)
[▶ 이력보기](#)
[▶ 목록](#)
[▶ 맨위로](#)

심사의뢰 진행상태는 [이력보기] 버튼을 선택하면 나타나는 심사의뢰 이력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의뢰이력조회

● 심사의뢰 상세내용

법령명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입법형식	전부개정	법종구분	법률
담당자	김행정	소관부서	행정안전부 국제협력팀
처리상태	심사의뢰수정요청 : 2008.04.15 / 김행정 심사의뢰접수 : 2008.04.15 / 정경아 (ju27@moleg.go.kr 02-724-1488) 심사의뢰요청 : 2008.04.15 / 김행정 심사의뢰등록 : 2008.04.15 / 김행정		
입안단계별 작성문서	법령안 : 법령안.hwp(13.5KB) 법령안 : 법령안.hwp(13.5KB) 조문별제개정이유서 :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8.0KB) 부패영향평가결과서 : 부패영향평가결과서.hwp(20.5KB) 수정요청서 : 수정요청서.hwp(9.0KB)		
심사의뢰 첨부문서	재정소요추계서미제출사유서 : 재정소요추계서미제출사유서.hwp(14.5KB) 관계부처협의공문 : 관계부처협의공문.hwp(14.5KB) 규제심사결과서 : 규제심사결과서.hwp(14.5KB)		

● 심사의뢰 이력목록

번호	법령안버전	처리상태	처리일자	변동사유	만료일자
1	v4.0	심사의뢰수정요청	2008.04.15		

[▶ 닫기](#)

07 심사의뢰 및 수정·철회 이어짐

수정·철회 요청 방법

심사의뢰 수정·철회 요청은 심사의뢰접수 이후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심사의뢰 상세조회 화면에서 [수정요청서작성] 혹은 [철회요청서작성] 버튼을 선택하여 편집기를 이용해 해당 문서를 작성 하고 편집 완료를 한 후 화면이 갱신되면 하단에 [수정요청] 혹은 [철회요청] 버튼이 나타 납니다.

[수정요청] 버튼을 선택하면 법제처로 수정요청서가 전송이 됩니다(철회요청은 법제처로 철회요청서가 전 송 됩니다.)

➔ **심사의뢰 상세조회**

● **심사의뢰 주요정보**

법령명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입법형식	일부개정	법종구분	부령
담당자	이병도	소관부서	법제처 법제정보과
처리상태	심사의뢰접수	처리일자	2008.04.15
심사수정요청서	수정요청서.hwp(20.0KB) 	▶ 수정요청서작성	
심사철회요청서	철회요청서.hwp(17.0KB) 	▶ 철회요청서작성	

● **입안 단계별 작성문서**

번호	문서구분	작성문서
1	법령안	법령안.hwp(12.5KB) 
2	조문별제개정이유서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15.5KB) 

● **심사의뢰 첨부문서**

번호	문서구분	작성문서
첨부자료가 없습니다.		

▶ 수정요청
▶ 철회요청
▶ 법령안수정
▶ 문서관리카드
▶ 온라인 보고
▶ 이력보기
▶ 목록
▶ 맨위로

07 심사의뢰 및 수정·철회 이어짐

심사완료

심사의뢰를 등록하고 심사가 진행 중인 법안은 “법령입안 > 법령안심사의뢰” 메뉴의 목록에서 확인하고 심사가 완료되거나 철회된 법안은 “법제처 심사후 관리 > 심사완료법안” 메뉴를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심사완료법안 목록조회' (Completed Case Search) page in the Law Making System. The search filters are set to '제안관서' (Proposal Agency) as '법제처'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소관부서' (Responsible Agency) as '전체' (All), and '법종구분' (Law Type) as '전체' (All). The search year is '2008' and the search type is '입법형식' (Legislation Type) as '전체' (All). The search results table shows 4 items.

번호	법령명	법종구분	소관부서	진행상태	처리일자
1	[일부개정]물류인력의 양성에 관한 규칙	부령	법제정보과	심사완료	2008.05.28
2	[일부개정]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	대통령훈령	법제정보과	심사완료	2008.05.23
3	[전부개정]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법제정보과	심사완료	2008.05.23
4	[일부개정]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정보과	심사완료	2008.05.23

TIP

수정요청서는 법령안의 수정 대상만을 작성하는 문서이며 법제처에서 심사안 작성 시 참고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법령안 전체를 다시 작성해서 보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법제처에서 반려 후 심사 재등록을 하거나 철회요청 후 법안정보카드를 다시 생성하고 법령안을 새로 작성 하여야 합니다. 재등록 절차는 “법령입안 > 법령안 심사의뢰” 메뉴에서 반려받은 법안을 상세조회하면 [재등록] 버튼을 선택하여 재등록 및 심사의뢰합니다.

08 | 문서관리카드 작성 및 결재의 반영

입안시스템에서 작성된 법령안 및 문서를 온나라시스템의 문서관리카드에 전송하고 결재 중 변경된 파일을 입안시스템에 반영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문서관리카드작성

문서관리카드 작성 및 온라인보고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아이디가 온나라시스템에 존재함을 인증하는 과정과 각 부처의 온나라시스템이 행정안전부 전자문서유통센터와 방화벽포터허용신청이 선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 1) 부서입법계획, 법령안 작성/제출, 부처협의, 입법예고, 심사의뢰, 국회제출수정철회, 국회통과법률확인, 부령관보정정 화면에 있는 [문서관리카드] 버튼을 선택하면 문서관리카드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법령명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시행령		
담당자	장학기	법령안보기	법령안.hwp(15.0KB) > 파일다운로드
법령안처리상태	법령안작성	법령안작성일자	2008.05.23
법령안편집	> 법령안편집기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문서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15.5KB) > 파일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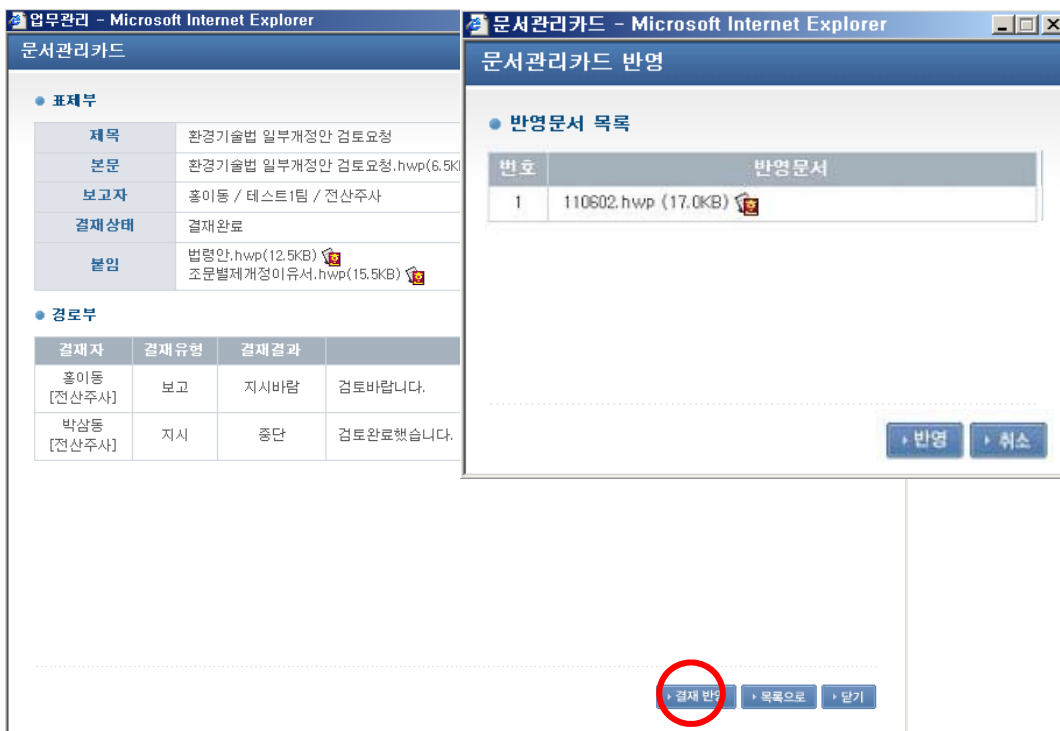
- 2) 문서관리카드 팝업창에서 [등록] 버튼을 선택하여 문서관리카드 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3) 제목을 입력하고 첨부문서를 선택 후 [저장] 버튼을 선택하여 저장하면 자료는 입안시스템에 저장되고 온나라시스템으로 문서관리카드가 자동 전송 됩니다

08 문서관리카드 작성 및 결재의 반영 이어짐

- 4) 문서관리카드 팝업창을 종료한 후 [온라인보고]버튼을 선택하면 온나라시스템이 팝업 화면으로 보입니다.
- 5) 온나라시스템의 “문서관리카드 > 행정정보연계 문서” 에서 입안시스템에서 전송된 문서관리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안시스템에서 전송된 문서관리카드를 선택하여 온나라시스템 사용법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결재가 진행되면 결과는 자동으로 입안시스템으로 전송됩니다

결재결과 반영

- 1) [문서관리카드] 버튼을 선택하여 문서관리카드 팝업 화면이 나타나게 합니다
 - 2) 결재 완료된 항목을 선택하여 상세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3) [결재반영] 버튼을 선택하면 문서관리카드 반영 팝업이 나타납니다
- 결재 중 변경된 파일이 있다면 [반영] 버튼을 선택하여 입안시스템 파일을 반영된 파일로 변경합니다



TIP

문서관리카드 작성 후 온나라시스템으로 문서관리카드 전송에 시간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결재 진행 중 문서관리카드에 등록된 파일을 변경할 경우 결재 완료 후 변경된 파일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온나라시스템과의 연계는 부처에서 온나라시스템 연계허용을 하고, 사용자 정보에서 온나라 인증을 확인한 사용자에게만 연계됩니다.(폐쇄망을 사용하는 기관은 연계되지 않습니다)
 전자문서유통센터와의 방화벽포트허용 관련 문의는 해당 부처의 정보화담당 부서에 우선 문의하십시오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11-1541000-000253-10

법제실무편람

편 집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Tel. 500-1650

발 행 농림수산식품부

인 쇄 (주)경성 Tel. 02)503-3223

<비매품>